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6. 11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6. 11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심층평가 협약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우석진(명지대학교 부교수)

빈기범(명지대학교 부교수)

박재성(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I.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논리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건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과 같은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121조에 근거를 두고 2006년 노란우산공제 도입
 - 2007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조특법 제86조 제3항)

- 본 평가에서는 1) 노란우산공제 집계자료, 2) 노란우산공제 임의 추출 미시자료, 3) 국세청 미시자료, 4) 설문조사를 이용함

I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과 소득공제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121조
 - 2007년 6월 1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86조의3)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가입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대표자, 가입 제한 대상 사업체 대표자는 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단, 선택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가능)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50인 미만에 해당 • 가입 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됨 •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 가능
가입 제한 업종 및 기타 가입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계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납입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 월납 및 분기납 	
납입기간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공제사유: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60세, 10년 이상 납부)
공제부금과 공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 공제부금은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 수급권 보호(공제금 수급권은 타인에 의한 또는 타인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기타 복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금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운영 • 단체상해보험 무료 지원(가입 후 2년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구조로서 기본적으로 3층 구조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2층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무원 등	민간근로자	자영업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이며,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자로 퇴직연금제도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2조 ②항 3에 따라 자영업자도 경과규정을 거쳐 2017년부터 IRP에 가입 가능

□ 현재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폐업 및 실업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면서 운영 중

우리나라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구분	노란우산공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연금저축)
			DB	DC	IRP	
근거법령	조특법 제86조의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퇴법 제13조	근퇴법 제19조	근퇴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운용주체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적립방식	사외적립	사내적립	사외적립 (최소 70%이상)	전액 사외적립		-
가입자(근로자) 부담금 납입		납입불가	납입불가	납입가능	납입가능	납입가능
가입자 납입한도			-	통합연간 1,8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1,200만원)		
소득(세액)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근로자 부담금의 12% (연간 400만원 한도)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수령요건	해지사유 발생시	퇴직시	연금수령 개시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지급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요건			

- 우리나라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부금의 납입 단계(납입 단계), 납부된 기부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원금 및 수익에 대한 과세 단계(운용수익 발생 단계),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는 수령 단계(수령 단계)로 구분하여 인식해야 하며, 퇴직금/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저축에 대한 과세 원리와 동일
 - 정규 수익률에 과세하지 않는 소비세는 소비 시점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비 시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통상적인 소득세는 시점의 측면 혹은 자산의 선택에 있어서 중립성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함
 - EET와 RRA(rate-of-return allowance)는 정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 누진세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변동이 큰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세부담을 부과하게 됨(Jensen's inequality)

- 유도된 저축제도가 사람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존재(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s))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면세-면세-과세형인 EET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

-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적립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 수급시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 1월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도 완전한 EET구조는 아니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세법상 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납입액과 통합하여 각 연간 400만원,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특별세액 공제 제공
 - 세액공제율은 보험료 공제와 마찬가지로 12%를 적용하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공제율 15%를 적용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 퇴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과세되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됨

Ⅲ. 노란우산공제 현황

1.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 및 해지

- 노란우산공제 재산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부금 수입으로 2015년 말 약 3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연기금 중 공무원연금의 2014년 말 현재 잔여 재산은 4.2조원, 사학연금은 2014년 말 현재 약 12.1조원임을 감안하면, 노란우산공제는 약 9년 만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셈임
 - 강제 가입을 시키는 공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빠르게 노란우산공제 재산이 증가한 것은 그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믿음과 공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공제 계약의 조건을 가입자가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해지유형으로는 “폐업”에 따른 해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 가입자 의사에 따른 “임의해지”와 “사망”, “퇴임”의 순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미시자료 분석

-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전체 가입자(공제계약사유나 일반계약으로 계약된 가입자 포함)에서 무작위 추출한 총 46,790건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
- 관찰된 가입기간을 중도절단 고려하지 않고 단순 분석: 관찰된 가입기간의 단순 평균은 ‘2.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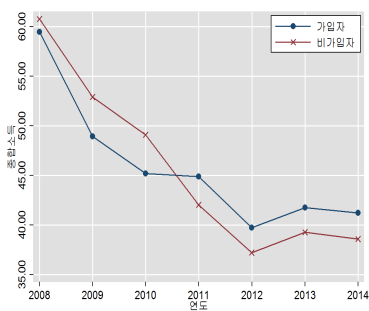
- 납부금 분포 분석 결과는 실제 가입자의 공제 납부금 납입에 있어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가입자의 가입 동기에 있어 소득공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짐
- 중도절단을 고려한 실제 가입기간의 평균에 대한 추정 결과는 약 '7.4년'으로 앞서 2.79년과 큰 차이가 있음

3. 국세청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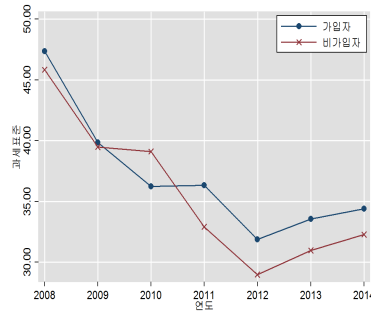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00명의 종합소득신고자를 대상으로 임의추출한 자료를 분석함
- 2011년을 기점으로 하여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높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가지고 있음
 - 가입자의 유효세율은 전반적으로 9%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가입자의 유효세율보다는 다소 높은 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에 따른 중위 종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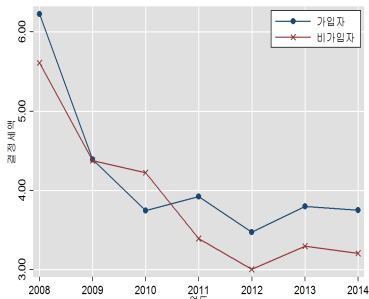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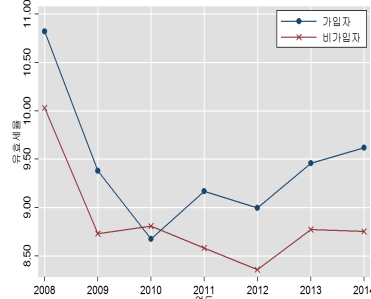
(a) 종합소득



(b) 과세표준



(c) 결정세액



(d) 유효세율

- 노란우산공제 신청액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중위값으로 보았을 때 300만원을 신청하고 있었으며, 전체 소득공제액 중에서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0% 초반에서 2014년 37.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제신청액과 과세표준, 해당 연도의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구한 공제의 혜택은 대체로 45~51만원임

IV. 타당성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필요성

- 정부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납부 보험료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이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납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subsidy)
- 노란우산공제가 연금보험은 아니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언젠가는 확률 1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 유의
 - 노란우산공제는 연금보험, 손해보험, 종신보험(사망보험) 등의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는 종합적 보험 패키지 - 폐업 위험, 장수 위험, 사망 위험 등을 모두 포괄
 - 민간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매우 높을 것임
- 폐업, 퇴임, 노령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나아가 노령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의 불완비성(incompleteness)을 보완하는 수단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위험에 대한 보호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도된 저축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게 하는 것은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관점에서도 필요함

2. 소득공제의 수단 적절성

- 노란우산공제 공제가입을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중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이 좀 더 적절한 수단이며, 다른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여부를 고려해보았을 때,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에 준하는 사건에 대비한 저축 혹은 보험을 지원하는 재정지출 사업이나 조세특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복성 문제는 거의 없음

- 하지만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공됨으로써 일반적인 보험·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성을 가진 상품이 되었음
 - 예컨대, 적절한 가정하에(년 300만원 공제부금, 15% 한계세율, 만기 5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IRR(내부수익률)이 5.9% 정도가 되지만, 동일한 금액을 정기 예적금에 예치했을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이 2%를 하회

-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은 세제를 통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지원 수준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 시산
 - 노란우산공제를 하나의 저축·투자 대상으로 보고 내부수익률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 이하 시산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 2011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5년간 영업을 하고 2015년에 폐업
 -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 및 폐업시 이율은 각 연도 노란우산공제 실제 이율을 사용함
 - 연 납부금은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으로 가정
 - 소득공제율은 15%, 24%, 35% 등으로 변경하여 시산함
 -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채투자 가정
 - 아울러, 1년 만기 후 이자소득세 납부 후 이자를 받으며, 그해 다시 돌려받는 소득공제분을 합하여 다시 만기 1년 정기예금에 채투자
 - 이자소득세는 14% 가정

- 다음 표는 동일한 금액을 정기에금에 예치했을 경우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의 내부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음

시나리오별 정기에금과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

(단위: %)

시나리오	내부수익률		
	정기에금(A)	노란우산공제(B)	배수(B/A)
Panel A. 만기 5년			
소득공제율 15%	1.16	5.90	5.09
소득공제율 35%	1.16	11.44	9.86
Panel B. 만기 8년			
소득공제율 15%	1.24	4.30	3.47
소득공제율 35%	1.24	7.70	6.21
Panel C. 만기 10년			
소득공제율 15%	1.39	3.84	2.76
소득공제율 35%	1.39	6.64	4.78

- 노란우산공제 관련 조세지출의 형평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소득공제의 실질적 수혜계층이 어디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과세부담이 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유지 비율이 높다면,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이 고소득 구간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1) 노란우산공제 집계변수를 이용한 분석과 2)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관련 조세지출 혜택의 귀착을 분석
- 노란우산공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업종별 전문직의 가입률은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과 비교하여 더 높은 반면, 전문직의 해지율은 전문직 외 사업자 해지율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 조세지출의 수혜가 전문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1분위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혜택은 연 9만원인 데 반해, 10분위 소득자의 가입 혜택은 105만원으로 11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으며, 지니계수로 측정한 가입자간 지원 혜택의 불평등도 역시 2008년 0.352에서 2014년 0.436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중임

- 업종별로 연도별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률을 집계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전문직 가입률은 전문직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가입률보다 높은 수준임
 - 보건업의 경우, 종합 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가입률은 2010~2012년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서비스업 전체로는 2014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의 가입률이 5.1%로,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 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 전기의 재직 가입자 수 대비 당기의 해지 사업자 수 비율인 해지율에서는 업종별로 전문직에 비하여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의 해지율이 높은 편임
 -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설계 미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등의 해지율은 여타 사업자의 해지율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수준
 - 보건업의 경우 초기에는 전문직 해지율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전문직 외 해지율이 전문직 해지율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 서비스업 전체로는 2014년 기준 전문직 해지율이 3.2%에 불과하나, 전문직 외 사업자의 해지율은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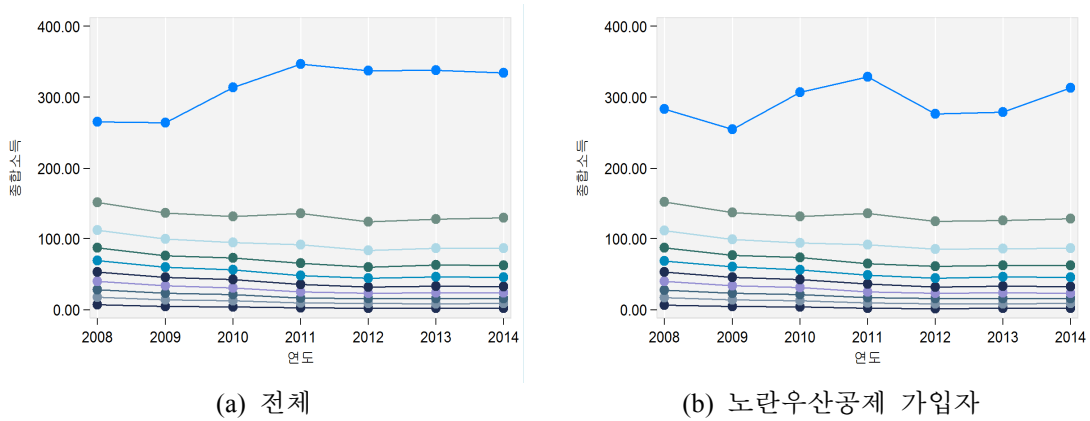
- 업종별 전문직의 가입률은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과 비교하여 더 높은 반면, 전문직의 해지율은 전문직 외 사업자 해지율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 조세지출의 수혜가 전문직에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됨
 - 전문직의 신규 가입률이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해지율의 현격한 차이는 전문직 중심의 수혜 고착화를 의미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위험 및 퇴직소득 보장이라는 노란우산공제의 본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한편, 전문직과 비전문직 구분하에 조세지출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함

- 국세청 자료를 종합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연도별 10분위로 구분하여 중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한바, 대부분의 소득분위가 과거 2008~2014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감소하였지만, 10분위만 유일하게 2008년 대비 증가하였음

소득분위별 종합소득의 변화

(단위: 백만원)



□ 소득분위별 노란우산 공제금액과 공제혜택의 시계열 분석

- 1분위의 2008년 노란우산 공제금액은 약 170만원 정도였으나 2014년 152만원으로 감소
-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1분위와 마찬가지로 노란우산 공제금액이 감소
- 6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노란우산 공제금액이 소폭 증가
 - 10분위는 평균 노란우산 공제금액이 2008년 252만원에서 2014년 277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구한 공제혜택 규모의 소득분위별 시계열 분석

- 소득 1분위의 경우 2008년 약 14만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노란우산 공제금액의 감소로 2014년에는 9만원으로 감소했음
- 소득 2분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2008년 20만원에서 2014년 10만원으로 50% 정도 감소
- 소득 3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다른 소득분위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혜택은 감소
- 소득 9분위와 10분위만 개선, 소득 10분위는 2008년 88만원 혜택에서 2014년 105만원으로 17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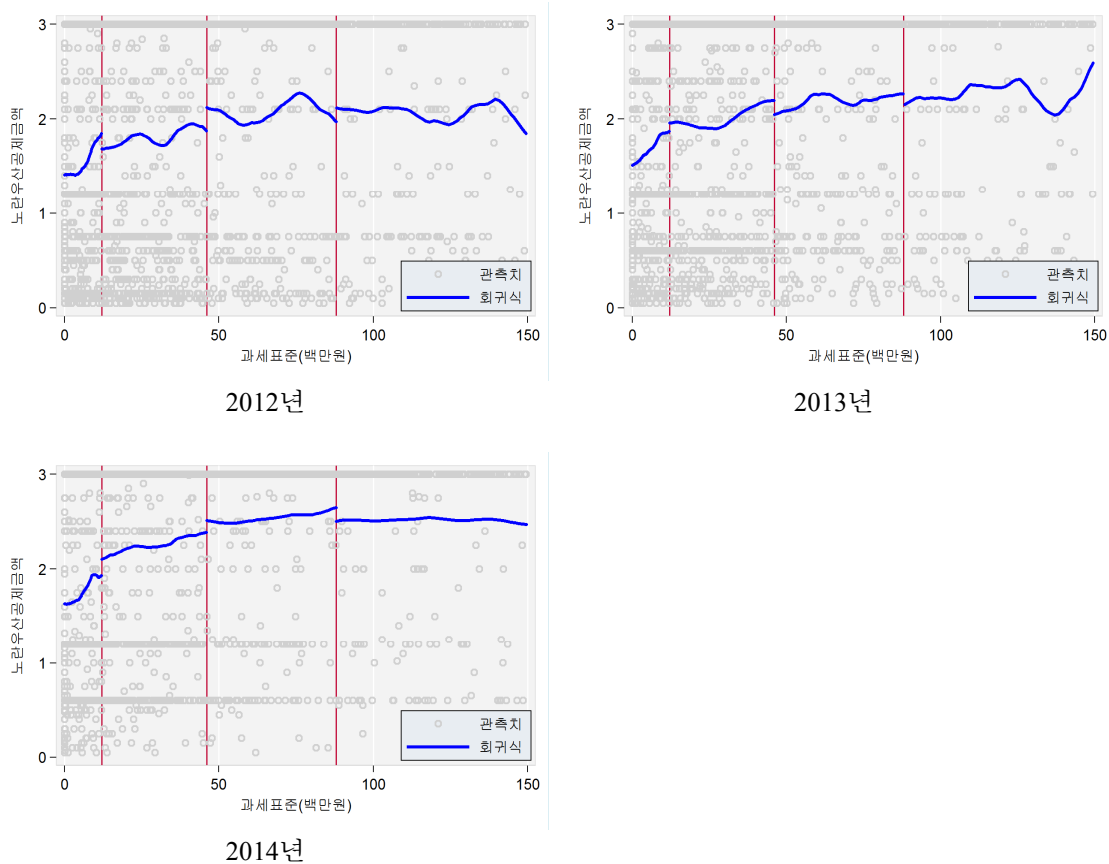
- 이상의 결과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반면에 하위 분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함

V.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1. 소득공제제도가 공제 가입에 미치는 효과

-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을 넘는 경계에서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여, 1만원 공제로 인한 혜택 역시 불연속적으로 증가
 - 아래의 그림에서 경계구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이 불연속적으로 노란우산 공제금액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인 자영업자들이 조세 유인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임
 - 아래 그림에서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과세표준 소득세 구간의 경계선에서 노란우산공제금액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2012~2014년도만 제시하며, 나머지 연도는 본문에서 확인)

연도별 과세표준과 노란우산공제금액



-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함
 - 1단계: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 2단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에서 혜택이 클수록 노란우산 공제액수가 증가하는가?
 - 위의 가설 중 1단계는 이른바 외적 한계(extensive margin)에 관한 것이고, 2단계는 내적 한계(intensive margin)에 관한 것임

- 1단계 검증: 종속변수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로 하고 결정요인으로 로그-종합소득과 로그-총공제액을 포함하여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추정
 -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높을수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공제금액이 늘어날수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공제금액이 많다는 것은 추가적인 공제로부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2단계 검증: 종속변수는 로그 변환된 노란우산공제 신청 금액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로그 변환된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로그 변환된 종합소득을 사용하였음
 - 추정결과는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많을수록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 하지만 상기 회귀분석 결과는 1) 외적한계와 내적한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2) 노란우산 공제부금이 연간 300만원이 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제도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토빗모형(tobit model)을 추정
 - 종속변수의 하한은 0, 상한은 300만원으로 하는 토빗모형을 최우추정법으로 추정
 -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크기가 노란우산 공제 가입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크게 추정되었음

- 남은 문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저축이 감소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분석 결과는 종합소득이 동일한 사람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이 10만원 늘 때, 총공제금액은 11만 3천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추정결과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저축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금저축과 투자조합출자금 정도임 → 투자조합출자금의 공제규모가 작고 변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관련한 공제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증가할 때 연금저축에 대한 저축도 상호 작용하며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계속 가입”, “해지 후 재가입”, “해지 후 미가입”, “계속 미가입” 등 4개 그룹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노란우산 공제의 가입에 미친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입자의 경우 상당수가 소득공제가 효과를 미쳤다고 응답한 반면, 미가입자의 경우 일부만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나 알게 될 경우,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등 세 경우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미가입자는 소득공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득공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 같은 결과는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부족보다는 당장 공제금을 납입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미가입의 가장 큰 요인임을 시사함
 - 당장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공제에 가입할 만큼 재무적 상황이 호전될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

-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가입자에게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했을지를 질문한 경우, 소득공제를 몰랐

던 경우 등 세 경우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입자는 소득공제 때문에 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2. 공제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2007년 최초로 시행되어 아직 10년이 되지 못해 공제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직접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임
 - 평균 가입기간은 7.4년 정도(우측절단 고려)이고
 - 30% 정도는 비교적 일찍 가입해지를 하고, 70%는 계약을 지속하고 있어
 - 제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지 사유 중 노령의 조건을 만족시킬 가입자가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판단됨

- “과거 가입하여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와 “과거 가입하여 해지 후 재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폐업” 및 “노령”, “퇴임”에 대한 대비라고 응답한 비중이 큼

3. 효율성 평가

-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1) 조세지출이 기간별 얼마나 소비 결정을 왜곡하는지에 대한 정도(시점)와 2)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좀 더 작은 비용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규모)에 근거하여 판단해볼 수 있음

- 먼저,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EET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정규 이자(normal interest)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출세 구조는 아니므로, 본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방식은 시점 중립적 세제가 아니고, 개인이 언제 얼마나 소비 및 저축을 하고, 얼마나 노동공급을 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소지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퇴직)소득세는 누진제이므로 EET 방식은 생애주기 소득은 동일하나 소득의 변동성이 근로소득자보다 큰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

- 하지만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생애주기의 효용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교육수준 혹은 금융 문해력이 높은 편이 아니거나, 차입제약에 처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생애주기 효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자각이 생겨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1) 아주 잘 알고 있었고(99%), 2) 소득공제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84%) 답변
 - 반면 미가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45%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자의 72%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답변하였고, 67% 정도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를 늘리면 공제부금 납부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없었어도 가입했을 사람들이 조세지출을 통해 횡재를 하는 이른바 횡재효과(windfall effect)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자
 - 소득공제에 대한 인지도는 월 납부금 규모와 무관하게 100%
 - 월 납부금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가입 동기가 되었다고 약 83%가 답변
 -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문항에 약 70-72%가 그렇다고 답변
 -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 공제부금을 늘리겠냐는 문항에 대해서 월 25만원 초과 납부하는 집단은 약 73%가 그렇다고 답변, 월 25만원 이하 납부하는 집단은 약 63%가 그렇다고 답변 → 어느 집단이나 그러한 의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됨

-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 축소에 대해서 공제부금을 줄이겠냐는 문항에 대해서 월 25만원 초과 납부하는 집단은 약 44%, 월 25만원 이하 납부하는 집단은 약 39%가 그렇다고 답변함(역시 확대-축소에 대한 반응은 대칭적이지 않음)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가입자

- 소득공제를 알고 있는 비율은 공제부금 대소 여부에 무관하게 거의 100%에 가까움 → 소득공제가 중요한 가입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됨
-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공제부금 확대 의사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월 25만원 이하로 납부하는 집단이 월 25만원 초과하여 납부하는 집단에 비해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확연히 높음: 91% vs. 73%

VI. 결론 및 정책 제안

-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집계 및 미시자료, 국세청 미시자료,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입수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이 가입자의 행태 및 의식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 실증분석 결과

- (1) 자영업자의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조세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했으며,
- (2) 이러한 조세지출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제도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은 인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 (1) 조세지출의 혜택이 과도하게 크고,
- (2) 이러한 혜택이 전문직,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고,
- (3) 가입자 간 혜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은 다소 낮은 상태로 보임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동 조세지출제도는 자영업자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서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보험·금융상품을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보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존속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조세지출이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본 조세지출을 통한 혜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부금이 많은 경우 연금저축 등을 포함한 다른 공제금 역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노후소득 보장정책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도, 우측절단을 고려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진 2.8년이 아니라 7.4년으로 장기간 유지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
 - 설문조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84%),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변한 가입자도 대다수였음(72%)

-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가 과도할 수 있고 지원 혜택도 전문직,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고의 적절한 가정하의 예시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을 정기에금에 5년간 납부했을 경우의 내부수익률은 1.16%이지만, 동일한 금액을 노란우산공제에 넣고 소득공제율을 15% 가정했을 경우 내부수익률은 5.9%에 달해 정기에금의 5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며,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은 11.4%로 동일 조건의 정기에금에 비해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음
 -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2014년 기준 소득분위 1분위의 해당 조세지출의 혜택이 평균 9만원인 데 반해, 10분위의 혜택은 105만원으로 10배를 상회함
 -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평등도에서도 2008년 0.352에서 2014년 0.436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조세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어하면서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가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안 1:**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차등 소득공제해주는 방안
 - 하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 중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금액 유지, 상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방식(예: 과표 ~4,800만원 이하 500만원, 4,800~8,800만원 300만원, 8,800만원 이상 200만원)
 - 본 안의 장점은 최근 세법개정을 거쳐 확정된 세법(이자소득세 → 퇴직소득세로 개정)의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연 500만원 공제부금 납부를 유도하면서, 상위 계층에 돌아가는 조세지출 규모는 축소(세율 35%의 경우 105만원 → 70만원)
 - 단점으로는 해당 조항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들 수 있음

- **제안 2:**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세제 혜택이 있었을 경우 공제에 좀 더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17년 이후부터 자영업자 IRP와 합산하여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허용
 - 2014년도 기준 중위 공제혜택은 약 45만원 정도이고, 최대 소득공제 가능 금액인 300만원의 15% 수준임
 - 따라서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최소한 조세지출의 규모를 현 규모 혹은 작게 유지할 수 있음
 - 소득 상위 부분은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경우 12%로 경감률(reduced rate)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목 차

I. 서 론	29
I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과 소득공제제도	35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37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법률적 근거 및 제도 개요	37
나.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내용	40
다. 노란우산공제의 사업 성과 추이	45
라. 노란우산공제사업 및 제도의 주요 변화	47
2. 노란우산공제 관련 세제 혜택	49
가. 배경 및 연혁	49
나. 현행 규정	51
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	51
3. 퇴직소득 과세체계	53
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3
나. 폐업과 관련된 자영업자 보호체계	57
다. 우리나라 퇴직금/퇴직연금의 과세체계	58
III. 노란우산공제 현황	77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집계수준 분석	79
가. 가입과 지급의 횡단면 정보	79
나. 노란우산공제 가입	82
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88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미시자료 분석	96
가. 일반 현황	96
나.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에 대한 단순 분석	106

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분석	107
라. 생존분석에 의한 노란우산공제 해약 분석	111
3.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	112
IV. 타당성 평가	119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필요성	121
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폐업 및 노령에 대한 위험 노출	121
나. 보험에 대한 이해	122
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수성	124
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의 적절성	128
2. 소득공제의 수단 적절성	128
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공제 계약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129
3. 지원의 형평성	142
가. 노란우산공제 집계변수를 이용한 형평성 분석	143
나.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한 형평성 분석	148
V.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157
1. 소득공제제도가 공제 가입에 미치는 효과	159
가. 국세청 자료로부터의 증거	159
나. 설문자료로부터의 증거	166
2. 공제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171
3. 효율성 평가	173
가. 논리적 평가	173
나. 설문을 이용한 평가	174
VI. 결론 및 정책 제안	179
참고문헌	184

부 록 I. 각종 공제제도의 현황	187
부 록 II. 설문조사 개요	190
1. 설문조사 개요	190
2. 설문조사 분석	198

표 목 차

<표 II-1>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연혁	39
<표 II-2>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사유	40
<표 II-3>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내용	42
<표 II-4> 노란우산공제 이율의 추이	43
<표 II-5>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및 공제금 소득에 관한 인식 방식	44
<표 II-6> 노란우산공제 업종별 가입 현황	45
<표 II-7>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재산 포트폴리오 현황	46
<표 II-8> 노란우산공제 2015년 대차대조표	46
<표 II-9> 기타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례	52
<표 II-10>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52
<표 II-11> 우리나라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56
<표 II-1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액	57
<표 II-13>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58
<표 II-1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70
<표 II-15>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율	70
<표 II-16> 2011-2015년 퇴직소득의 과세체계의 변화	71
<표 II-17> 연금소득공제	74
<표 III-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업종 및 사업체 규모 현황	80
<표 III-2>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건의 업종 및 사업체 규모 현황	81
<표 III-3>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82
<표 III-4>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부금 수입 및 지출 현황	84
<표 III-5>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최근 수익률 및 잔고	84
<표 III-6>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 규모	85
<표 III-7> 재적 가입자 수 비율	86
<표 III-8> 본고의 업종 재분류	87

<표 III-9> 업종별 재직 가입자 수 비율	88
<표 III-10> 가입자 해지 현황	89
<표 III-11> 유형별 해지율	90
<표 III-12> 업종별 유형별 해지율	91
<표 III-13> 연도별 업종별 재적률 및 해지율	94
<표 III-14> 연도별 누적가입건수 및 평균 가입기간	95
<표 III-15> 무작위 추출 표본의 가입 연도별 크기 및 전체 표본크기	96
<표 III-16> 노란우산공제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가입연도별 공제 해약사유	98
<표 III-17> 노란우산공제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해약연도별 공제 해약사유	102
<표 III-18>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실제 납부 현황	105
<표 III-19>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관찰된 가입기간의 빈도 ..	106
<표 III-20> 노란우산공제 관찰된 가입기간의 요약	107
<표 III-21> 월 납부금 25만원 초과 비중	109
<표 III-22> 연 납부금 300만원 초과 비중	110
<표 III-23> 중도절단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입기간 평균	112
<표 III-24> 국세청 자료 현황(중위수)	117
<표 IV-1> 노란우산공제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 현황	127
<표 IV-2> 다중 현금흐름이 내재되는 투자안이나 금융계약의 예시	130
<표 IV-3> 시나리오별 정기에금과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	135
<표 IV-4> 시산 1: 5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15% 가정	136
<표 IV-5> 시산 2: 5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35% 가정	137
<표 IV-6> 시산 3: 8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15% 가정	138
<표 IV-7> 시산 4: 8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35% 가정	139
<표 IV-8> 시산 5: 10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15% 가정	140
<표 IV-9> 시산 6: 10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35% 가정	141
<표 IV-10> 업종별 전문직 신규 가입률	145
<표 IV-11> 업종별 전문직 해지율	147
<표 IV-12> 분위별 종합소득의 변화	150
<표 IV-13> 분위별 노란우상공제 금액/혜택의 변화	153
<표 IV-14>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지니계수	155

<표 V-1> 노란우산공제 가입 결정요인(프로빗 모형)	162
<표 V-2> 회귀분석 결과	163
<표 V-3> 토빗모형 추정결과	164
<표 V-4> 회귀분석 추정결과	165
<표 V-5>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가입유지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166
<표 V-6> 미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168
<표 V-7> 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170
<표 V-8>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목적	172
<부표 I-1> 정부가 지원하고 법에 근거한 주요 각종 공제사업 주요 현황	188
<부표 II-1> 설문 조사의 개요	190
<부표 II-2> 업종별·사업장소재지별 계약 현황(2015년 12월)	192
<부표 II-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의 계약 현황 (2015년 12월)	192
<부표 II-4> 가입자 구분	198
<부표 II-5> 모집단에서 지역별 빈도, 표본에서 지역별 빈도 및 표본에 대한 지역별 가중치	200
<부표 II-6>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의 요약	201

그 립 목 차

[그림 II-1] 노란우산공제 로고	39
[그림 II-2]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은행 정기적금 금리의 추이	43
[그림 II-3] 주요 단기금융상품 및 채권 금리 추이	47
[그림 II-4]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53
[그림 II-5] 현재와 미래소비에 대한 예산제약	66
[그림 II-6] 효용 극대화를 위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선택	67
[그림 II-7] 유도된 저축에 의한 민간저축 구축	68
[그림 II-8]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69
[그림 II-9]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율	70
[그림 II-10] 연금소득공제	74
[그림 III-1]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추이	82
[그림 III-2]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부금 수입 및 지출 추이	83
[그림 III-3]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규모	85
[그림 III-4] 재적 가입자 수 비율	86
[그림 III-5] 업종별 재적 가입자 수 비율	87
[그림 III-6] 가입자 해지 현황	88
[그림 III-7] 유형별 해지율	89
[그림 III-8] 업종별 유형별 해지율	90
[그림 III-9] 연도별 업종별 재적률 및 해지율	93
[그림 III-10] 연도별 누적가입건수 및 평균 가입기간	95
[그림 III-11]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실제 납부 추이	105
[그림 III-1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관찰된 가입기간의 분포	107
[그림 III-13]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약정 월 납부금의 분포	108
[그림 III-14]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가입연도별 약정 월 납부금의 분포	109

[그림 III-15]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연도별 실제 연 납부액의 분포	110
[그림 III-16] 다양한 공제 해약사유에 의한 노란우산공제 해약 생존함수	111
[그림 III-17] 2014년 종합소득의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113
[그림 III-18] 중위 종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	114
[그림 III-19]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에 따른 중위 종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 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	115
[그림 III-20] 중위 노란우산공제 공제액/공제혜택의 연도별 변화	116
[그림 IV-1] 위험인수서비스(보험)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124
[그림 IV-2] 사건 발생 인식 방식의 차이	126
[그림 IV-3] 생보사와 손보사의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126
[그림 IV-4] 업종별 전문직 신규 가입률	144
[그림 IV-5] 업종별 전문직 해지율	146
[그림 IV-6] 소득분위별 종합소득의 변화	149
[그림 IV-7] 분위별 노란우산공제 금액/혜택의 변화	152
[그림 IV-8]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지니계수	154
[그림 V-1] 연도별 과세표준과 노란우산공제금액	160
[그림 V-2]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가입유지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167
[그림 V-3] 미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169
[그림 V-4] 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171
[그림 V-5]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목적	173
[그림 V-6]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가입 의향을 묻는 주요 문항에 대한 답변 (미가입자)	175
[그림 V-7]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가입 의향을 묻는 주요 문항에 대한 답변 (가입자)	176
[그림 V-8] 가입자의 소득공제에 따른 가입 의사에 대한 분석 - 소상공인	177
[그림 V-9] 가입자의 소득공제에 따른 가입 의사에 대한 분석 - 소기업	178
[부도 II-1] 표본 내 가입 이력별 빈도	199

I. 서론



I. 서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과 같은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06년 노란우산공제가 도입되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07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조세법 제86조 제3항) 조세지출을 통해 가입에 대한 간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하나임

-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연간 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있음
 - 도입 당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됨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07년 4,014명에서 출발하여 2015년 685,388명으로 연간 약 90% 정도 성장하였음

- 조세지출예산서(2016)에 따르면, 해당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2010년 140억원에서, 2014년 832억원에 이르렀음
 - 추정치로서 2015년에는 1,138억원, 1,20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통해 본 조세지출조세법(제86조 제3항)에 대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건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임

- 심층평가를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평가의 실증적, 분석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였음

- 본 평가에서 사용한 자료는 크게 보면 1) 노란우산공제 집계자료, 2) 노란우산공제 임의 추출 미시자료, 3) 국세청 미시자료, 4)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음
 - 노란우산공제 집계자료는 노란우산공제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가입자 현황, 공제부금 규모, 신규 계약 및 해지 패턴 등을 살펴볼 때 유용한 자료임
 - 하지만 어떤 특성을 가진 개인이 어떤 패턴으로 진입 혹은 탈퇴하고 있는지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46,790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였음
 -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자료만을 이용해서는 개인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졌고, 이러한 혜택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공제부금의 규모, 다른 저축 수단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5,000명(노란우산 가입자 2,500명 + 미가입자 2,500명)의 미시자료를 제공받아 비교적 정확한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소득공제의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태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국세청 자료가 결정적인 정보를 주긴 하지만 납세자에 대한 특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입자의 특성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 여기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 및 법인 500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 자영업자의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조세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했으며, 2) 이러한 조세지출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은 인정됨

- 하지만 1) 조세지출의 혜택이 과도하게 크고, 2) 이러한 혜택이 전문직,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고, 3) 가입자가 혜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은 다소 낮은 상태라고 판단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및 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 소개하였음
- 제III장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현황과 가입, 탈퇴, 가입기간, 소득공제 규모의 크기, 유효세율, 소득공제의 혜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제IV장에서는 해당 조세지출이 타당한지 여부를 소득공제의 필요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제V장에서는 조세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 마지막 제VI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과 소득공제제도



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과 소득공제제도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법률적 근거 및 제도 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과 같은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임
 -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121조 - 동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관리·감독하는 공적인 공제제도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시(2007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서 개인연금저축(제86조)¹⁾, 연금저축(제86조의2)²⁾ 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 명칭: 소기업·소상공人公제(브랜드명: “노란우산공제”) →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로 칭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 1)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작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함. 1994년부터 동 저축 및 해당 세제혜택이 시작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로 폐지. 현재 조세법 제86조 1, 2항은 삭제되었음
- 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음. 2001년부터 동 저축 및 해당 세제혜택이 시작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로 폐지. 현재 조세법 제86조의2는 삭제되었음

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117조(자금의 조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18조의2(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 II -1] 노란우산공제 로고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2006년에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공제부금 총납입액이 4조원에 이르고 있어, 여타 공적 연기금의 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 아님(<표 II-1> 참조)

<표 II -1>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2006. 9.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9.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9.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출범
2009. 12.	가입제한 요건(1년 이상 사업영위) 폐지
2010. 1.	공제부금 소득공제 일몰 폐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0. 7.	누적가입자 5만명
2010. 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7.	누적가입자 10만명
2012. 10.	누적가입자 20만명,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3. 7~10.	우정사업본부·외환·기업·우리·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3. 12.	부금 납입한도 상향조정(분기 210만원 → 분기 300만원)
2014. 4.	누적가입자 40만명, 누적 부금납입액 2조원 달성
2014. 12.	세법개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시 소득세(이자소득 → 퇴직소득), 소득공제 한도 (종합소득 → 사업소득)
2015. 1.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 부금납입액 3조원
2015. 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5. 9.	누적가입자 60만명, 누적 부금납입액 4조원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 자료

나.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내용

- 가입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가입 제한 대상 사업체 대표자는 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단, 선택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가능)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50인 미만에 해당
 - 가입 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됨
 -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 가능

- 가입 제한 업종 및 기타 가입 제한 사유가 있음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 부금 연체 또는 부정 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납입부금은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혹은 분기납할 수 있음

- 납입기간은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할 수 있음(<표 II-2> 참조)
 -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법인대표자퇴임, 노령(60세, 10년 이상 납부)

<표 II -2>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법인사업자 폐업이나 해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공제부금(공제 납부금)과 공제금(공제 사유 발생시 수취하는 금액)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II-3> 참조)
 -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함(분할지급 가능)
 - 공제부금은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공제금 수급권 보호(공제금 수급권은 타인에 의한 또는 타인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 금지)됨
 -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함

- 노란우산공제는 기타 복지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 부금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운영
 - 단체상해보험 무료 지원(가입 후 2년간)

〈표 II -3〉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가입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대표자, 가입 제한 대상 사업체 대표자는 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단, 선택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가능)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50인 미만에 해당 • 가입 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됨 •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 가능
가입 제한 업종 및 기타 가입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납입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100만원 (1만원 단위) • 월납 및 분기납 	
납입기간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공제사유: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60세, 10년 이상 납부)
공제부금과 공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 공제부금은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 수급권 보호 (공제금 수급권은 타인에 의한 또는 타인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기타 복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금내 대출 (공제계약대출) 운영 • 단체상해보험 무료 지원(가입 후 2년간) 	

-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015년 말 2.1%이고, 폐업이나 사망시 기준 이율보다 0.3% 포인트 추가한 이율로 지급함(<표 II-4> 참조)
- 정기적금과 비교했을 때, 노란우산공제 이율이 낮은 편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그림 II-2] 참조)

<표 II -4> 노란우산공제 이율의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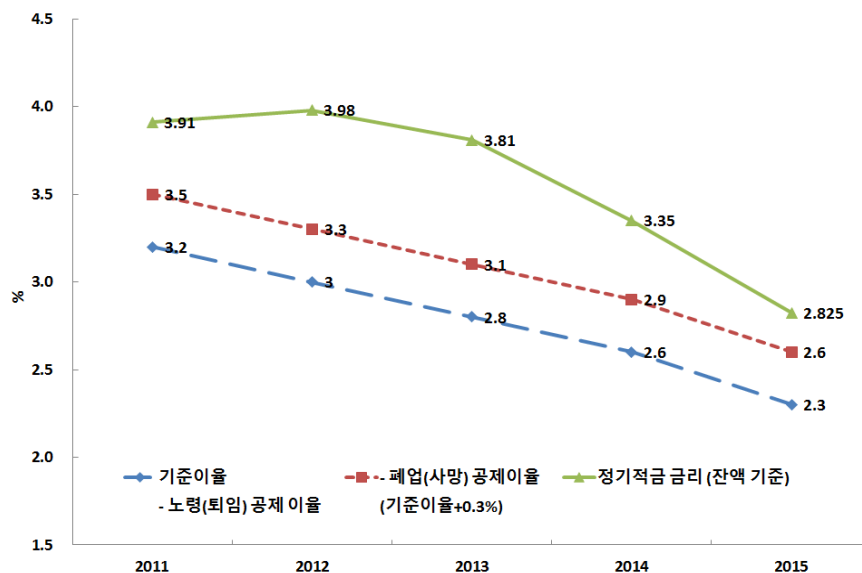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기준이율				2.6	2.6	2.6	2.6	2.6
- 노령(퇴임) 공제 이율	3.2	3.0	2.8	2.6	2.6	2.6	2.6	2.6
- 폐업(사망) 공제 이율 (기준이율+0.3%)	3.5	3.3	3.1	2.9	2.9	2.9	2.9	2.9

	2015				
	연간	1/4	2/4	3/4	4/4
기준이율					
- 노령(퇴임) 공제 이율	2.3	2.3	2.1	2.1	2.1
- 폐업(사망) 공제 이율 (기준이율+0.3%)	2.6	2.6	2.4	2.4	2.4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그림 II -2]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은행 정기적금 금리의 추이

(단위: %)



주: <표 II-4>와 동일한 정보를 나타내며, 정기적금 금리를 추가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한국은행 ECOS

□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음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
- 2015년도 연간 기준 이율은 2.3%(<표 II-4> 참조)

□ 2015년 기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표 II-5> 참조)

- 2007년 해당 조항 제정시에는 공제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실효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표 II -5>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및 공제금 소득에 관한 인식 방식

연도	공제소득	이자	폐업 등으로 중단 시	그 외의 사유로 중단 시 (5년 이후)	5년 이내 해지 시
2007	종합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2% 가산세 + 기타소득
2016	사업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¹⁾	기타소득 ²⁾	2% 가산세 ³⁾ + 기타소득

주: 1) 퇴직소득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의 누계액을 제한 금액임(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퇴직소득 산출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근속공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80조3에 따라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로 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함

2) 기타소득의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공제부금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음(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3) 가산세의 베이스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제계약자는 노란우산공제로부터 대출이 가능함

- 대출자격: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부금 납부 연체가 없어야 함
- 대출한도: 계약자의 납부금액 합계액과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4가지 경우를 규정: i)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 ii)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ii)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iv)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대출조건

- 대출기간: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 대출이자: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함

다. 노란우산공제의 사업 성과 추이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가입자가 약 6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 신규 가입자 평균은 76,154명임
- <표 II-6>은 소기업/소상공인을 구분하고, 각 업종별 가입자 및 여전히 가입되어 있는 재적자 수를 나타냄
 - 가입과 재적 공히, 소기업보다 소상공인이 많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표 II -6> 노란우산공제 업종별 가입 현황

(단위: 건, %)

업종	가입 기준				재적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합계	구성비	소기업	소상공인	합계	구성비
건설업	2,646	17,520	20,166	3.3	2,315	15,134	17,449	3.3
광업	59	459	518	0.1	52	393	445	0.1
농어업·임업	131	1,771	1,902	0.3	118	1,563	1,681	0.3
도·소매업	10,684	181,164	191,848	31.0	9,375	154,553	163,928	30.6
서비스업	21,954	172,548	194,502	31.5	19,540	153,158	172,698	32.3
숙박·음식업	3,136	90,705	93,841	15.2	2,640	73,773	76,413	14.3
운수업	578	15,599	16,177	2.6	495	13,623	14,118	2.6
전기·수도업	287	1,190	1,477	0.2	239	1,067	1,306	0.2
제조업	17,010	80,803	97,813	15.8	14,856	72,214	87,070	16.3
합계	56,485	561,759	618,244	100.0	49,630	485,478	535,108	100.0
구성비	9.1	90.9	100.0		9.3	90.7	100.0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 노란우산공제는 자산운용에 있어 단기자금은 주로 정기예금으로, 중장기 자금은 주로 회사채로 운용하고 있음
 - 국채 및 회사채 금리는 2012년까지 3%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2%에 약간 못 미치고 있음

- <표 II-7>에서 보듯, 노란우산공제의 ELS, 펀드(수익증권), 구조화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적지 않은 편

<표 II -7>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재산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 기 자 금	현금성	15	129	67	79	129	390	710	538	
	유 동 성	정기예금			50	160	450	500	500	1,050
		CD	3		340	300			50	350
		CP			369	170	232	500	195	
		RP	132							
		기업금전신탁					550	650	800	698
소계		150	129	826	709	1,361	2,040	2,255	2,636	
중 장 기 투 자 금	채 권	국공채		100		28	32	432	335	324
		금융채	228	249	352	644	1,570	1,850	1,750	1,200
		회사채		621	1,321	3,771	5,271	8,614	13,314	16,586
		구조화채권				100	1,000	2,400	3,400	6,400
		ABS				400	400	100	500	700
		수익증권		118	390	48	44			
	주 식 관 련	ELS				80	400	1,350	3,200	7,150
		공모주							128	80
		수익증권 등						25	1,000	2,000
	대체투자(부동산 등)						129	129	341	1,228
소계		228	1,088	2,063	5,071	8,846	14,900	23,968	35,668	
합계		378	1,217	2,889	5,780	10,207	16,940	26,223	38,304	
수익률(누적)		4.73	5.29	5.63	4.81	4.73	4.21	4.21	3.92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표 II -8> 노란우산공제 2015년 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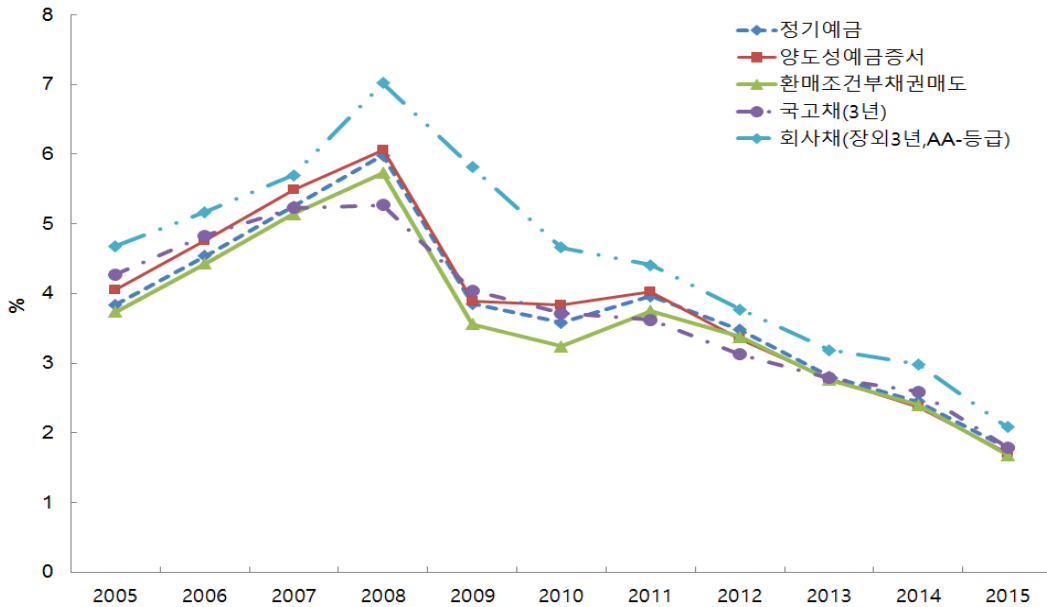
(단위: 원)

내역		2015년
자 산	I. 유동자산	512,022,799,954
	II. 비유동자산	3,568,842,968,073
	1. 투자자산	3,541,105,466,013
	2. 유형자산	25,716,409,499
	3. 무형자산	1,380,492,561
	4. 임차보증금	640,600,000
자산총계		4,080,865,768,027
부 채	I. 준비금	4,036,374,003,771
	II. 유동부채	4,370,888,597
	III. 비유동부채	20,074,625,231
부채총계		4,060,819,517,599
자 본	I. 출연금	2,000,000,000
	II. 이익잉여금	18,046,250,428
자본총계		20,046,250,428

출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그림 II -3] 주요 단기금융상품 및 채권 금리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은행 ECOS

라. 노란우산공제사업 및 제도의 주요 변화

- 2014년 2월 부금 납입한도를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2016년 1월 1일부터 공제금을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간주함
 - 공제금을 폐업·노후에 대비한 퇴직소득으로 간주(조특법 개정, 2014년 12월)

- ▶ 공제금 수취시: 공제금에 이자소득세 적용 → (변경) 퇴직소득세 적용
- ▶ 공제부금 납부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 (변경)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 금융위원회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은행 켜기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금융위는 2013년 10월 은행의 공제 등 판매대행에 대해 켜기규제 완화(2013년 10월)
 -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여신실행일 1월 전후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켜기로 규제기로 합의하였음

□ 기타 다음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음

- 2014년 12월, 공제위험준비금, 결손준비금 적립 규정 신설
- 2015년 1월, 해약환급률 상향조정(30% → 77.5% 등)
- 2015년 1월, 청약철회기간 연장(15일 → 30일)
- 2015년 4월, 공제계약대출원리금 수시상환제 도입
- 2016년 상반기,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매칭장려금 지원 제도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영세소상공인(연간 3만여명)
 - 지원기간: 2016년 ~ 2018년(지원효과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결정)
 - 지원규모: '16년 20억원(서울시 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15.12.21)
 - 지원방안: '16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장려금 지급 -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월 소정의 장려금 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증가를 위한 가입유치 MOU를 통해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전국 지점망(점포망)을 가입채널로 활용

- 농협은행('15.8), 신한·우리·기업·외환은행('13.10), 우체국('13.7), 국민은행('12.9), 하나은행('11.6), 광주은행('10.9), 대구·부산은행('10.8)
- 금융위원회 은행감독규정 개정(2012)을 통해 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의2②항)에 공제의 판매대행을 추가, 금융기관과 MOU 체결의 법적근거 마련
- 기존 은행(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3개) 446,070건 가입(2015.11)
 - 국민(150,732건), 하나(73,419건), 신한(59,324건), 농협(21,703), 기업·우리·외환·대구·우체국(112,770건) 등
- 메인비즈, 미용사회중앙회 등 15개 소상공인단체 신규 가입창구로 확대

□ 기타 복지사업으로서 단체상해보험 및 휴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단체상해보험(2년간), 휴양시설(알펜시아, 대명, 한화 등) 지원 등
- 고객참여 재능기부·소통조직 '해피비즈라이프지원단' 운영('13.1 출범)

2. 노란우산공제 관련 세제 혜택

가. 배경 및 연혁

-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및 노후 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과 같이 폐업 후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있었음

- 2007년 6월 1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조특법 제86조의3)
 -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010년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 지급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이자소득세 과세(이자만 과세)
 - 공제계약 해지 시 기타소득세 과세(소득공제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 5년내 공제 계약 해지시 해지가산세(소득공제액의 2%)를 추가하여 부과
 - 2010년 1월 1일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이 폐지됨(조특법 개정)
 - 2014년 2월 21일 부금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2014년 12월 23일 폐업 등 공제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금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공제 원천을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나. 현행 규정

- 공제부금 납입에 있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공제대상은 사업소득 및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의 소기업 대표의 근로소득

- 다양한 해지 원인과 시점이 있어 공제금 수령시 소득 인식 및 과세는 아래와 같음
 -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과세(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 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 5년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소득공제액의 2%) 부과
 - 2016.1.1. 이후 가입부터 적용,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스스로의 자력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상호부조임을 감안, 안정적 운영단계까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기재부는 공제의 조기정착(15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 정부 재정지원 실적: ('08) 10억원, ('09) 56억원, ('10~'14) 매년 30억원, 총 216억원
 - 일본의 경우, '소규모 기업공제' 제도를 196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비 등 2012년까지 총 2,118억엔 지원
 - 공제가입 비교: 한국('13년말 기준) 346,289건, 일본('14.3월말 기준) 1,575,716건

- 2015년 정부는 12.5억원을 보조함
 - 지원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및 제135조(중앙회 일반보조조항)
 - 보조내역: 언론매체 홍보 등(10억원), 콜센터 운영(2.5억원)

<표 II -9> 기타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례

구 분	근거 법률	지원 시기	지원금	용 도
소프트웨어공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9조	1997~2003년 (7년간)	380억원 출연	융자사업재원 (자본금의 36%)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	2004~2005년, (2년간, 400억 출연) 2008년 (600억 출연)	1,000억원 출연 (이와 별도로 '09~'13년까지 기술료를 1,000억원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	운영수익으로 운영비 및 퇴직과학기술자 퇴직연금 추가급여 재원으로 사용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1984~1997년 (14년간)	1,400억원 출연	대출재원
수협공제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2009~2011년 (계속 지원 중)	27억원 보조	보험료 및 운영비 보조

□ 아울러, 2014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로 인해 약 832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II -10>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	2016년 추정	
조세 지출 규모	소득세	140	287	368	555	832	1,138	1,205
	법인세	-	-	-	-	-	-	-
	계	140	287	368	555	832	1,138	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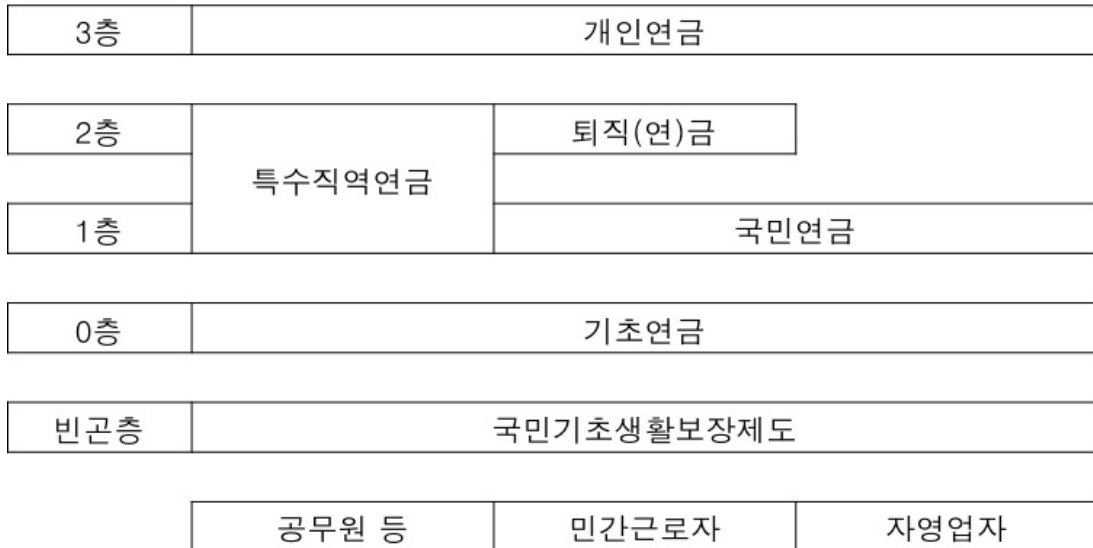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3. 퇴직소득 과세체계

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⁴⁾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구조로서 기본적으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빈곤층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0층에는 기초연금을, 1층에는 공무원 같은 특수직에게는 특수직역연금을, 다른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제공하고 있음
 - 2층의 경우 민간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인 2층 소득보장체계가 약함
 - 노란우산공제가 2층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3층은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이 제공되고 있음

[그림 II -4]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출처: 홍범교(2013)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임
 - 현재 국민연금 적용 범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음

4) 홍범교(『주요국의 연금세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의 내용을 요약, 정리 및 발전시켰음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용자가 각 4.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야 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함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임⁵⁾
- 하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기업 내부에 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퇴직급여의 우선변제권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는 못함⁶⁾
 - 퇴직금의 사내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적립보험(1977년부터 판매), 퇴직보험(1998년), 퇴직신탁(2000년) 등의 사회적립제도가 도입됨⁷⁾
-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확산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해진 것도 사실임
- 이러한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자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음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제도임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결정됨

5) 1953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음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7) 기존 사외적립제도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고 직장 이전시 퇴직금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월 1일자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 12월 21일자로 폐지되었음

- 사용자는 퇴직급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책임준비금⁸⁾의 일정부분 이상(예: 100분의 70)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임
- 개인형 퇴직금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임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로 이전하여야 함
 -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도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IRP로 이전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②항 3호에 따라 자영업자도 경과규정을 거쳐 2017년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⁹⁾

8) 기준책임준비금이란 다음 중 큰 금액을 말함. ①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9) 동법 부칙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표 II-11〉 우리나라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구분	노란우산공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연금저축)
			DB	DC	IRP	
근거법령	조특법 제86조의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퇴법 제13조	근퇴법 제19조	근퇴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의3
운용주체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적립방식	사외적립	사내적립	사외적립 (최소 70% 이상)	전액 사외적립	-	-
가입자(근로자) 부담금 납입	납입불가	납입불가	납입불가	납입가능	납입가능	납입가능
가입자 납입한도			-	통합연간 1,8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1,200만원)		
소득(세액)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근로자 부담금의 12% (연간 400만원 한도)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수령요건	해지사유 발생시	퇴직시	연금수령 개시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지급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요건			

나. 폐업과 관련된 자영업자 보호체계¹⁰⁾

- 현재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폐업 및 실업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운용 중임(2012년 1월 22일 시행)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함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지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¹¹⁾ 중에서 가입자의 선택이 가능함

<표 II -1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액

(단위: 원)

등급	월 보수액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6등급	2,500,000
7등급	2,690,000

출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10)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11) 기준보수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5단계, 2016년부터는 총 7등급으로 되어 있음

-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결정됨
 -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보험료율을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정도임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됨

-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게 됨¹²⁾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됨
 - 예컨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급여일수는 90일임

〈표 II -13〉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피보험기간	급여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출처: 「고용보험법」 제69조의 6의 별표 2

다. 우리나라 퇴직금/퇴직연금의 과세체계¹³⁾

- 우리나라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부금의 납입 단계(납입 단계), 납부된 기부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원금 및 수익에 대한 과세 단계(운용수익 발생 단계),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는 수령 단계(수령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음

12)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13) 국세청

(1) 저축에 대한 과세에 관한 원칙

- 퇴직금/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저축에 대한 과세 원리와 동일함
 - 저축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음
 - 먼저, 과세 기반(tax base)에 대한 문제로서 금융소득을 노동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가능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금융소득이 종합소득(comprehensive income tax)에 포함된다면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소득 중 저축으로부터의 수익(이자 혹은 배당 등)이 과세 이연되어, 소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해당 세제는 이른바 지출세제(expenditure tax) 혹은 소비세제(consumption tax)가 될 것임
 - 둘째, 저축으로부터의 소득을 언제 과세하느냐에 따라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동일한 생애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연간소득(annual income)은 다를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셋째, 저축에 대한 과세 문제는 개인에 대한 과세와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의 경계선에 있음
 - 저축에 대한 과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넷째, 국민경제에서 보았을 때 저축에 대한 과세체계에 따라서 저축 총액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과세체계에 따라 특정 자산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이 일어날 수 있음
 - 개인으로 보았을 때, 은퇴나 실업시 기준에 축적되어 온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이고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줌
 - 경제학에서 보았을 때, 저축이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대신 미래의 다른 시점에 소비를 하기 위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여러 시점에 걸쳐 유사한 수준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개인은 소득이 높고 지출 필요성이 적을 때는 저축을 많이 하고, 소득이 낮고 지출 필요성이 많을 때는 저축을 적게 하게 됨
 - 생애를 통해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음(일하는 도중이나 은퇴한 경우나)
 - 물론, 이러한 소비 평탄화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정부 정책은 개입을 통해 저축 결정의 왜곡과 미래의 안전망 확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임

- 보통 현실 세계에서는 저축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과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가계는 현재에 대한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할 수 있음
 - 예컨대, 저축으로부터의 정규 수익률(normal return)에 비과세할 수 있음
 - 정부가 정규 수익률에 과세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언제 소비를 할지, 언제 노동공급을 할지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왜곡)을 줄 수 있어, 저축에 대한 과세가 시점 중립적(timing-neutral)인 조세제도가 되지 못할 수 있음

- 정규 수익률에 과세하지 않는 소비세는 소비 시점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비 시점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전,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옴(세전>세후)
 - 수익률의 차이가 있으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격 차이를 가져오게 됨

- 중립적 세금 중에서도 서로 다른 시점에서 과세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먼저 과세하고(upfront),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방식
 - 저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찾아갈 때 과세하는 방식
 - 정규 수익률은 비과세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과세

- 이러한 과세방법은 소득세가 누진세인 경우에, 좀 더 낮은 한계세율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소비 시점을 변화시키게 됨

- 저축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 중립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음

- 첫째, 개인 혹은 가구가 언제 저축할 것인지에 미치는 효과(저축 시점)와 저축하는 시기에 얼마나 저축할지(저축 규모)에 대해서 중립인 세계
 - 둘째, 개인 혹은 가구가 저축을 할 때 저축 수단(혹은 자산)의 선택에 있어서 중립인 세계
- 정규 수익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의미에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정규 수익률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연하는 데에 따른 보상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미래에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벌칙(penalty)의 역할을 하게 됨¹⁴⁾
- 과세 형평성의 일반원칙은 동일한 생애주기 소득(lifetime income)을 창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임
- 생애주기 소득과 잠재 소비 역량(potential consumption)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생애주기 소득 혹은 잠재적 소비 능력은 과세당국이 관측할 수 없어 실제 과세와 연결하기는 불가능함
 - 과세당국은 대리변수로서 실제 소득이나 지출을 사용하게 되어, 개인이 소득을 덜 창출하게 되거나 소비를 덜 하게 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저축에 대한 과세를 일종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음
-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볼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부자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재분배를 의미할 수 있음
 - 하지만 반드시 저축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음
 - 예컨대, 동일한 생애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있다가 없는 사람은 저축을 하지만, 일정한 정도의 소득을 상시적으로 버는 경우는 저축이 없을 수 있음
- 과세의 경우 원천(소득)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소비(지출)에 할 수도 있음
- 정상수익률 이상을 과세하는 것은 소비 선호가 미래에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일 뿐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은 아님

14) Atkinson & Stiglitz(1976)는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해야 하는 것인가와 같은 논의 구조임

- 저축을 과세 기반에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낮춰 노동공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는 함
 - 표준적인 소비-여가 모형에 따르면 노동결정은 소비와 여가 사이의 상충관계에 따라 결정됨
 -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과세가 되어 결국 노동공급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정규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에 대한 과세는 위와는 다른 논리적인 기반이 필요함

- 경제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개인 혹은 경제주체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잘 이용하여 소비 평탄화를 하도록 기대되지만 실제 소비결정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사용할 뿐임
 - 차입제약(borrowing constraints)에 처한 경우 소비 평탄화는 달성하기 어려움
 - 또한 소비 평탄화는 교육 수준, 금융 문해력 등과도 관련이 있음(Parker & Fischhoff, 2005; Kirby, Winston, & Santiesteban, 2005; Bettinger & Slonim, 2006)
 -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별 은퇴자들이 은퇴 시점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음
 - 은퇴 시점에 소비절벽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Banks, Blundell, & Tanner, 1998)

- 저축에 대한 과세를 결정할 때는 사람들의 인내, 자기통제,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정부의 저축, 연금, 사회보험에 대한 정책 수립시 사람들의 합리성이 제약될 수 있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제일 극단적인 것은 노동자에게 과세하고, 세금과 상관없이 은퇴 후에 돌려줌 (pay-as-you-go)
 - 다른 극단에는 모든 미래의 혜택을 개인저축 혹은 개인보험을 통해서 나오도록 설계(fully-funded)

- 통상적인 소득세는 시점의 측면 혹은 자산의 선택에 있어서 중립성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함

- 첫째,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를 현재 소비보다 비싸게 만들기 때문에 저축을 저해함
 - 둘째,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고 있어 미래 소비의 현재가치가 현재 소비의 현재가치보다 낮아짐
 - 셋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정이 없어 명목이자 크기가 커져 좀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돼 자산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음
- 한편, 과세 이연의 경우 정부가 납세자에게 이자 없는 대출을 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전적 이득이 됨
 - 해당 자산에 대한 유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과세 이연이 있는 경우, 자본이득이 있는 자산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보다 선호하게 됨
- 일반적인 종합소득과세는 최소한 저축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과세체계가 되지 못함
-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과세 단계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 소득이 발생했을 때
 - 2단계: 수익이 발생했을 때(이자, 자본이득, 배당)
 - 3단계: 자금이 인출되었을 때
- 포괄적 소득세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에 과세하지만 3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TTE가 적용되고 있음
 - 통상적인 저축 금액에 대해서도 역시 소득의 일부로 과세가 되고, 저축으로 모든 수익이 정규 수익률을 포함하여 과세되지만, 인출할 때 따로 과세하지는 않음
 - 보통의 소득세는 TTE이고, 정규 수익을 포함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함
- (현금흐름, cash-flow) 지출세의 경우에는 앞의 2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인출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를 따르고 있음

- EET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소비를 위해 사용된 소득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저축을 위해 사용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과세하지 않음
 - 대부분의 연금이 이런 원리로 운영되고 있음
 - EET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교육비)에 대한 과세에 사용되고 있음
- 노동소득에 대한 세제(earnings tax(TEE))는 최초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저축을 통하여 발생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음
- 반면 지출세(EET)와 수익률 공제(TTE)는 초과 수익을 과세 베이스로 간주하는 과세 제도임
 - 미국의 401(k) 혹은 영국의 ISAs는 TEE의 예임
 - 영국의 자가거주주택(owner-occupied housing)도 같은 경우임
- EET와 RRA(rate-of-return allowance)는 정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임
- RRA는 저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감면을 하는 대신 미래로 이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누진소득세하에서 어떤 과세체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저축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EET는 세율이 높을 때는 저축을 권장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세율이 낮을 때는 소비를 하도록 하는 과세체계임
 - 누진세제하에서는 과세체계가 언제, 얼마나 저축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게 되어 EET는 비중립적이 됨
- 누진세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변동이 큰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세부담을 부과하게 됨(Jensen's inequality)
- EET에서는 높은 소득 그룹의 경우 미래로 소비를 이연함으로써 좀 더 낮은 세율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 줌

- EET는 변동성 있는 소비를 하는 개체에 별칙을 부과하게 됨
- TEE의 경우, 변동성 있는 소득에 별칙을 부과하는 셈임

(2) 조세를 통해 유도된 저축제도¹⁵⁾

- 유도된 저축제도가 사람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존재
 -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저축행위와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초점
- 유도된 저축제도와 저축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의 출발점은 저축에 대한 생애주기 저축결정이론(life-cycle theory of savings)¹⁶⁾
 - 이 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평생에 걸친 계획에 의해 결정됨
 - 근로활동기에 사람들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득이 없을 때의 소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게 됨
 - 체감하는 한계효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비를 기간별로 분산하여 평탄화하는 것을 선호
 - 저축은 소비를 근로가능기간에서 비근로가능기간으로 이연시킴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
- 강제 저축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생애 동안의 저축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저축행위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 효과의 결과로 나타남
- 먼저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s)¹⁷⁾가 있을 수 있음
 - 생애주기적 이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유도된 저축을 하면 폐업 후에 일정 금액을 수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자발적인 저축을 줄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도된 저축은 다른 저축을 구축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만 생길 수 있음

15) Rosen의 재정학(8th Editi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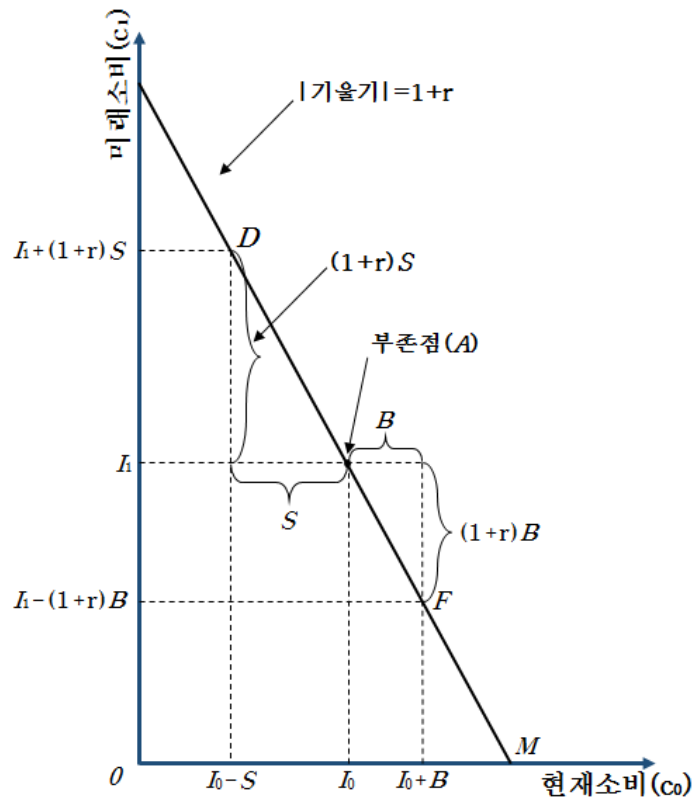
16) 특정 연도의 각 개인의 소비와 저축이 전 생애에 걸친 환경을 고려한 계획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론

17) 유도된 저축제도의 존재로 인해 민간저축이 구축되는 현상

○ 이러한 현상을 ‘자산대체효과’라고 정의함

□ [그림 II-5]는 생애주기모형의 틀에서 경제주체가 저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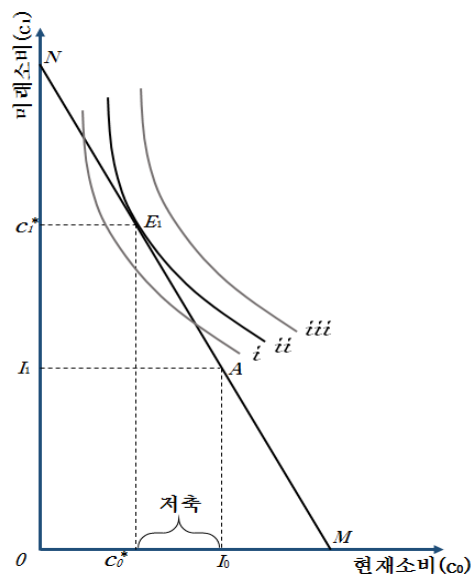
[그림 II -5] 현재와 미래소비에 대한 예산제약



-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조합인 예산제약이 주어짐
 - 예를 들어, 갑의 기간 0에서의 소득은 I_0 이고 기간 1의 소득은 I_1 이라고 정의
 - 예산제약 MN은 갑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냄
- 저축(혹은 차입)이 없다면 갑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모든 소득을 소비하며 이것은 현시점에서 I_0 만큼 소비하고, 미래에 I_1 만큼 소비하게 됨을 의미
 - 이 상황은 부존자원점 A에 속하며, 부존점에서 갑은 저축도, 차입도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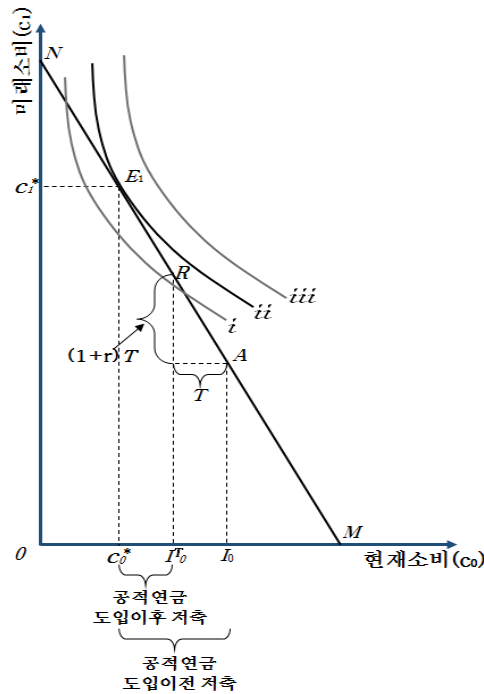
- 만일 값이 현시점에서 현재 소득보다 S 만큼 덜 소비하기로 결정한다면(S 저축, 이자율 r), 미래 소비를 $(1+r)S$ 만큼 증가시킬 수 있음(점 D)
- 만일 현재 소득보다 B 만큼 더 소비하고자 한다면, 미래 소득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시점에서 B 차입(점 F)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존점 A 를 지나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1+r)$ 인 예산선 MN 이 주어짐
 - 예산선의 기울기는 한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기회비용을 의미
 - 예산선 MN 은 기간간 소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므로 기간간 예산제약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이라고 지칭됨
-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대해서 특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예산선 MN 위에서 생애주기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소비조합을 선택함([그림 II-6] 참조)
 - 예산제약 MN 하에서 값의 효용극대점은 E_1 으로, 현재 소비는 c_0^* , 미래 소비는 c_1^* 이며, 값의 저축액은 $I_0 - c_0^*$ 가 됨

[그림 II -6] 효용 극대화를 위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선택



- 유도된 저축의 도입이 민간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음
- 유도된 저축의 암묵적 수익률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갑이 사회보장세를 T 달러 납부하면 은퇴 후 유도된 저축급여는 $(1+r)T$ 달러가 됨
 - 유도된 저축의 도입으로 인해 부존점은 점 A 로부터 왼쪽으로 T 만큼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소비를 위한 재원을 T 만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유도된 저축은 소비조합을 위로 이동시켜 미래소비를 위한 재원을 $(1+r)T$ 만큼 증가시킴
 - 결국, 유도된 저축의 도입은 부존점 A 를 예산제약 MN 위 점 R 로 이동시킴
 - 최적소비조합 E_1 을 달성하기 위해 갑은 유도된 저축제도 도입 이전의 저축수준보다 낮은 $I_0^T - c_0^*$ 만큼만 저축하면 됨
 - 이 금액은 유도된 저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보다 저축액이 작음
 - 따라서 유도된 저축은 민간저축을 구축하며, 이를 ‘자산대체효과’라 함

[그림 II -7] 유도된 저축에 의한 민간저축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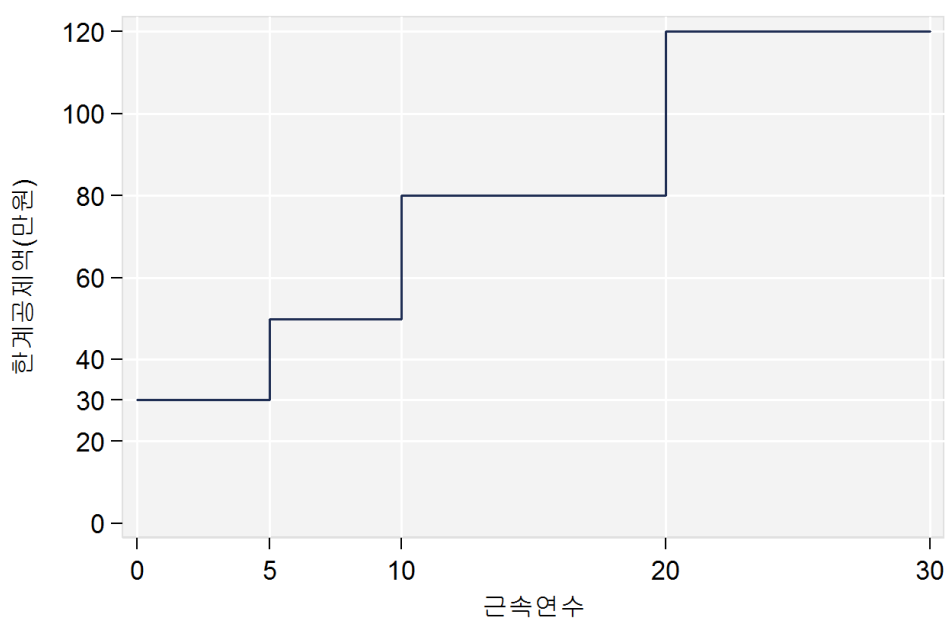
(3)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에 대한 과세제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면세-면세-과세형인 EET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 퇴직금은 적립단계와 운영단계에서는 과세가 없고 급여 단계에서 과세하게 됨
- 과세되지 않는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퇴직소득을 산출한 후,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별로 정해지는 금액을 공제(근속공제)함
 - 과세표준을 연분연승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함(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계산함(환산급여 산출시 12를 곱하고 후에 나누어 줌)

[그림 II -8]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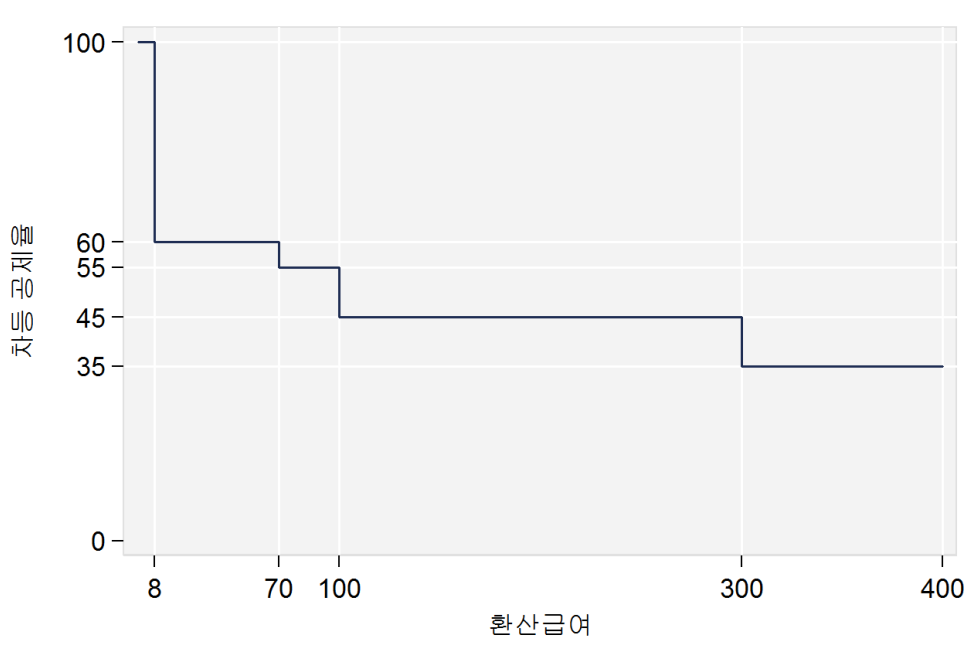


<표 II -1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한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

□ 다시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공제한 후 기본세율(6~38%)을 적용함

[그림 II -9]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율



<표 II -15>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율

환산급여	공제율
8백만원 이하	100%
8백만원 초과	60%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55%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4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35%

□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근속연수 만큼 다시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최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II -16> 2011~2015년 퇴직소득의 과세체계의 변화

	과세체계	비고
2011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 -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세율(기본세율)을 적용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6~35%) × 근속연수
2012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금액 (전년 동)	-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전년 동)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 -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세율(기본세율)을 적용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6~38%) × 근속연수
2013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전년 동)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 -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5배수를 하여 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을 적용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5) × 기본세율(6~38%) ÷ 5 × 근속연수 (2012.12.31.이전 근속연수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 (6~38%) × 근속연수)
2014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 변경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반환일시금 - (전년 동) $\text{일시금 수령액} \times \frac{\text{기준일 이후 납입월수}}{\text{납입월수}}$ <input type="checkbox"/> 위외의 일시금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 변경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소득금액의 계산식에서 재임용일,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	

	과세체계	비고												
2015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차등공제) × 기본세율(6~38%)													
		<table border="1"> <thead> <tr> <th>환산급여</th> <th>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8백만원 이하</td> <td>환산급여의 100%</td> </tr> <tr> <td>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td> <td>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td> </tr> <tr> <td>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td> </tr> <tr> <td>1억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td> </tr> </tbody> </table>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나)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¹⁸⁾

-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적립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 지급시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임¹⁹⁾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 1월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도 완전한 EET구조는 아님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세법상 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²⁰⁾

18)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2012), 김진수; 『주요국의 연금세제연구』(2013), 홍범교
 19) EET형 과세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과 일본은 운용단계에 부분적으로 과세(tax)가 더해져 ETT형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20) 부담금 적립단계에서 부담금의 일정부분만 소득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며,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며, 퇴직급여 수령단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기여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음²¹⁾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함²²⁾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특례형을 설정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²³⁾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납입액과 통합하여 각 연간 400만원,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특별세액 공제를 제공
 - 세액공제율은 보험료 공제와 마찬가지로 12%를 적용하되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공제율 15%를 적용함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 급여 수령시까지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과세되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됨
 -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연금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연금 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하게 됨(소득세법 제14조 9항)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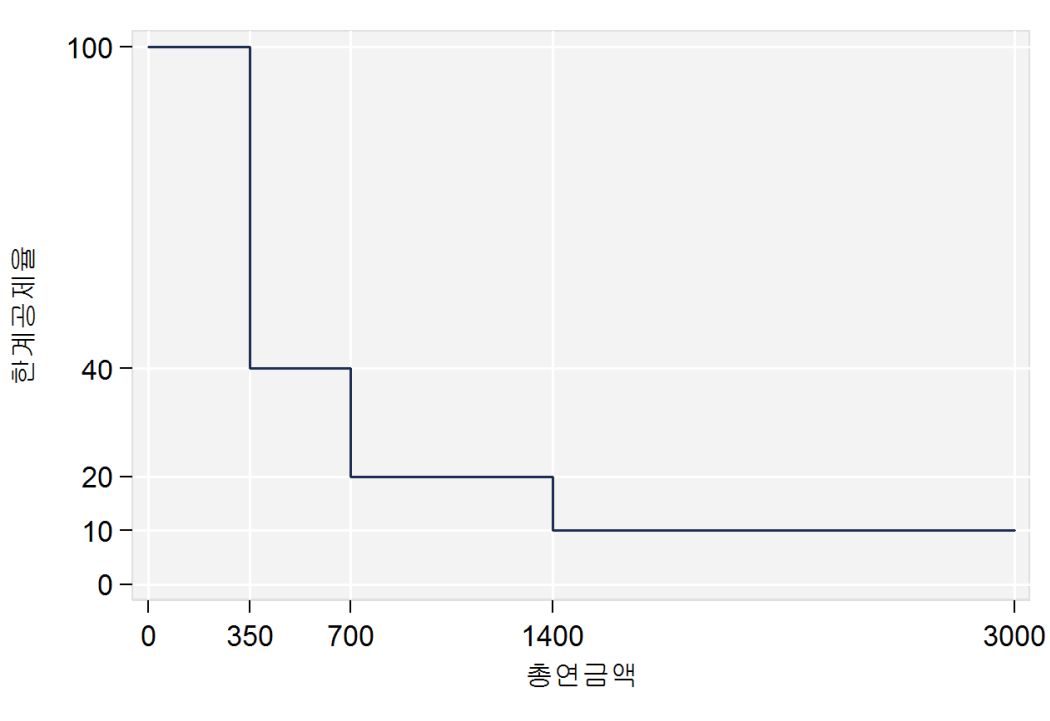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3항

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제3항

- 연금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함
 - 다음의 <표 II-17>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함²⁴⁾
 -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함

[그림 II -10] 연금소득공제



주: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원임

<표 II -17>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한계공제율
350만원 이하	100%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20%
1,400만원 초과	10%

주: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원임

24) 「소득세법」 제47조의 2

최근 퇴직금/퇴직연금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 2013년 개정세법²⁵⁾

□ 소득세법 (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내용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① 퇴직소득 구분 명확화

- 퇴직의 범위를 조정하여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간주퇴직으로 구분하여 정비
- 급여지급규정 유무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를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을 명확화하고 범위를 조정
- 불합리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

②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과세체계 정비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으로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면서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정비
-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 정비
- 중간정산 등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화
-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리 위임관계 명확화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1호) 2013.1.1.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공포

2. 2014년 개정세법²⁶⁾

□ 소득세법 (연금·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내용

-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이 용이하게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한편 의료비계좌를 지정하고 인출절차를 신설함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2%로 하여 분리과세하고, 부양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공적연금의 연금·퇴직소득 계산시 연금과세제도 시행일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수령액에 대한 계산방식을 명확히 함
-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연금계좌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히 함
- 연금수령 개시연도의 총납입액을 세액공제하여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신설함

- 세액공제 혜택 및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을 당해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 세액정산 집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을 합리화함
- 연금계좌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69호) : 2014. 1. 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193호) : 2014. 2. 15.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407호) : 2014.3.14. 공포

3. 2015년 개정세법²⁷⁾

□ 소득세법 (연금·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내용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함으로써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을 변경함
- 납세편의 제공 및 연금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를 실시함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소득수준별로 차등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확대
-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을 신설함
-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 재원의 축적을 유도함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206호) : 2015.3.1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067호) : 2015.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479호) : 2015.3.13. 공포

25) 국세청, 『2013년 개정세법 해설』

26) 국세청, 『2014년 개정세법 해설』

27) 국세청, 『2015년 개정세법 해설』

Ⅲ. 노란우산공제 현황



Ⅲ. 노란우산공제 현황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집계수준 분석

가. 가입과 지급의 횡단면 정보

- 이 절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전체 모집단을 묘사하는 각종 집계 변수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표 Ⅲ-1>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현재 해약자까지도 포함)의 업종 및 사업체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5인 미만의 소형 사업체에서 가입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5인 미만 소형 사업체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임
- <표 Ⅲ-2>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을 업종 및 사업체 규모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음
 - 5인 미만의 소형 사업체에 대한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우 큼
- 결국, 노란우산공제는 주로 소형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Ⅲ-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업종 및 사업체 규모 현황

	(단위: 건)					전체
	5인 미만	5 ~ 10인 미만	10 ~ 20인 미만	20 ~ 30인 미만	30 ~ 40인 미만	
도매 및 소매업	199,192	11,662				210,854
숙박 및 음식점업	102,889	3,393				106,2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913	760				72,673
제조업	70,419	17,289	3,912	1,685	1,084	105,9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432	8,342	2,041	318	254	42,0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828	1,806				31,63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018	3,551	716	207	108	23,655
운수업	16,886	821	392	122	86	18,361
건설업	16,552	3,075	1,975	550	234	22,522
교육 서비스업	16,423	897				17,3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797	205				10,002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7,662	1,219	603	247	110	9,9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885	665	386	169	98	6,287
농업, 임업 및 어업	2,186	175				2,361
금융 및 보험업	2,076	86				2,16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723	249				97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11	61				6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95	57				652
광업	467	67	45	16		605
기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	408	21				429
계	602,962	54,401	17,750	5,874	2,647	685,388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표 Ⅲ-2〉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건의 업종 및 사업체 규모 현황

(단위: 건)

	5인 미만	5 ~ 10인 미만	10 ~ 20인 미만	20 ~ 30인 미만	30 ~ 40인 미만	40 ~ 50인 미만	전체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46	3					49
건설업	1,524	153	80	28	8	5	1,79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8	22					220
광업	42	5	2	1			50
교육 서비스업	2,376	144					2,520
금융 및 보험업	187	7					194
농업, 임업 및 어업	155	4					159
도매 및 소매업	23,194	962					24,1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33	739	131	53	24	8	3,48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77	37					3,4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74	59	26	8	8	10	585
숙박 및 음식점업	16,807	470					17,2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93	17					1,710
운수업	1,466	97	41	5	1	1	1,611
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3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39	314	29	11	1	1	1,995
제조업	5,051	1,274	874	273	98	84	7,65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777	72	19	7	1	2	87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75	18					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3	183					3,356
계	64,804	4,582	1,203	386	141	111	7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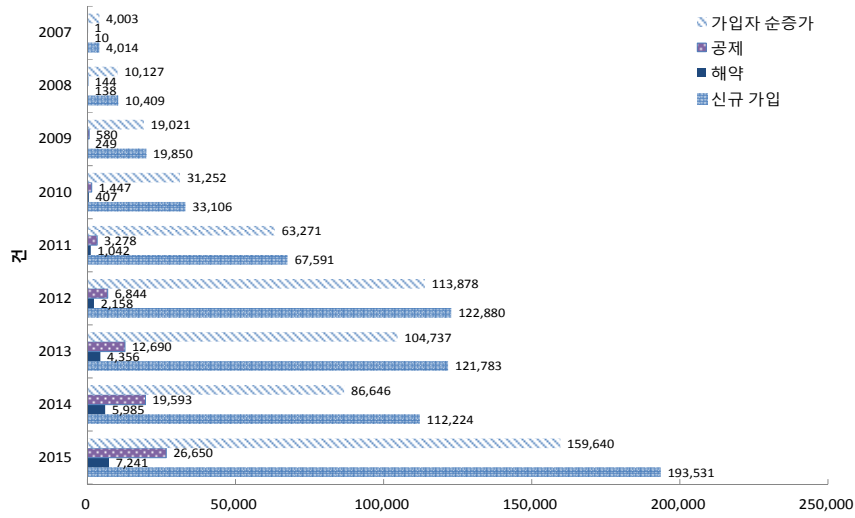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나. 노란우산공제 가입

□ [그림 Ⅲ-1]과 <표 Ⅲ-3>은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Ⅲ-1]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추이

(단위: 명)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표 Ⅲ-3>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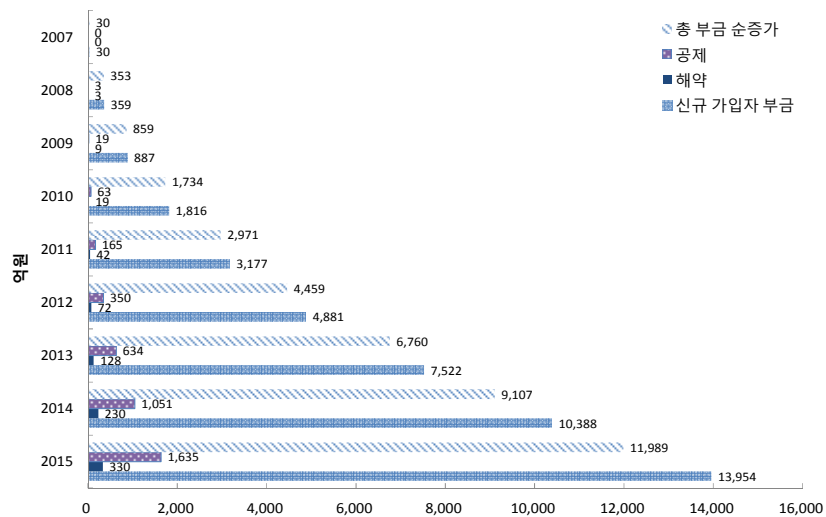
	신규 가입	해지		가입자 순증가	누적 가입자
		해약	공제		
2007년	4,014	10	1	4,003	4,003
2008년	10,409	138	144	10,127	14,130
2009년	19,850	249	580	19,021	33,151
2010년	33,106	407	1,447	31,252	64,403
2011년	67,591	1,042	3,278	63,271	127,674
2012년	122,880	2,158	6,844	113,878	241,552
2013년	121,783	4,356	12,690	104,737	346,289
2014년	112,224	5,985	19,593	86,646	432,935
2015년	193,531	7,241	26,650	159,640	592,575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 노란우산공제 재산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부금 수입으로 2015년 말 약 3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림 III-2]와 <표 III-4>는 이를 나타냄
 - 신규 부금 현황을 보면, 연도별 신규 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해약이나 공제 사유 발생으로 인한 공제 지급액도 늘어나지만, 신규 부금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임
 - 2015년말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재산 총액은 약 3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출범 9년 만에 달성된 누적 재산 규모로는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누적 가입액은 약 4조 3천억원이지만, 해약지급액이 약 800억원이고, 공제지급액이 약 3,900억원임
 - 연도별 누적 재산의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중임에도, 2015년도의 2014년 대비 누적 재산 증가율은 약 45%임
 - 향후 해마다 40%, 30%, 20%, 10%, 0%의 순서로 증가할 때, 2020년에는 노란우산공제 재산이 9조원대까지 이를 수 있음

[그림 III-2]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부금 수입 및 지출 추이

(단위: 억원)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표 III-4> 연도별 노란우산공제 부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신규 가입	해지		공제부금에 따른 순증가 (재적부금)	누적 순증가 (누적 재적부금)	누적 재적부금 증가율
		해약	공제			
2007년	30	0	0	30	30	-
2008년	359	3	3	353	383	1,176.67
2009년	887	9	19	859	1,242	224.28
2010년	1,816	19	63	1,734	2,976	139.61
2011년	3,177	42	165	2,971	5,947	99.83
2012년	4,881	72	350	4,459	10,406	74.98
2013년	7,522	128	634	6,760	17,166	64.96
2014년	10,388	230	1,051	9,107	26,273	53.05
2015년	13,954	330	1,635	11,989	38,262	45.63

주: 1. 실제 노란우산공제 재산 잔액은 운용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이 표의 각 연도 누적액과 다름
 2. 증가율 = (t년도 누적 재적 부금 - (t-1)년도 누적 재적 부금)/(t-1)년도 누적 재적 부금)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자료

- 주요 연기금 중 공무원연금의 2014년 말 현재 잔여 재산은 4.2조원, 사학연금이 2014년 말 현재 약 12.1조원임을 감안하면, 노란우산공제는 약 9년 만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셈임
 - 강제 가입을 시키는 공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빠르게 노란우산공제 재산이 증가한 것은 그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믿음과 공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공제 계약의 조건을 가입자가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2015년 현재 주요 연기금의 운용액을 보면, 국민연금 511조원, 사학연금 12.7조원, 공무원연금 4.5조원, 교직원공제회 20조원, 군인공제회 9조원, 행정공제회 7조원으로 나타남

<표 III-5>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최근 수익률 및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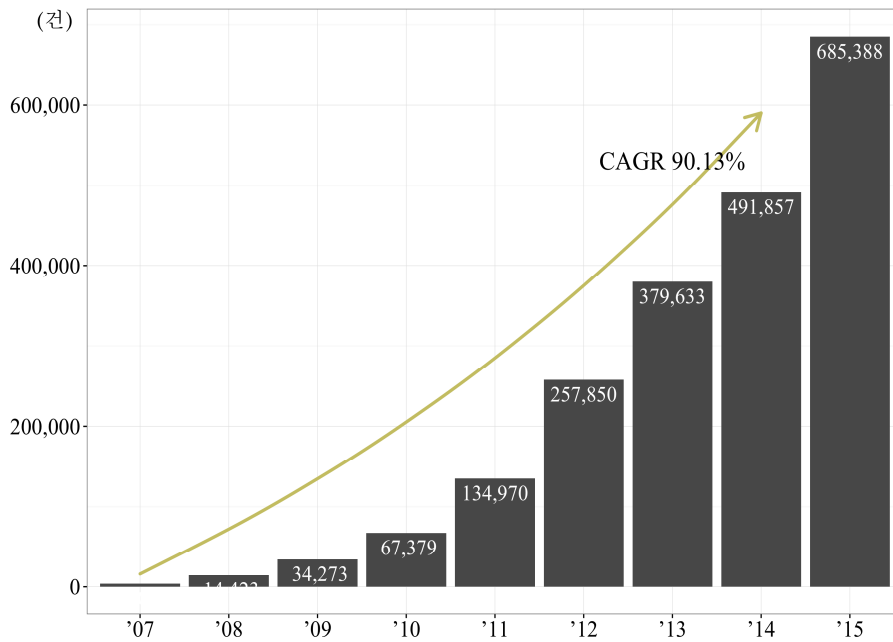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연기금	2014년 총수익률	2015년	
		총수익률	운용액
국민연금	5.25	4.75	511
사학연금	2.65	3.9	12.7
공무원연금	3.6	3.9	4.5
교직원공제회	5	5	20
군인공제회	5.1	1.4	9
행정공제회	4.4	4.3	7

자료: 각 연금 및 공제회

-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가입 규모(해약 및 공제금 지급 포함)는 2007년 4,014건에서 2015년 685,388건으로 매년 약 두 배 규모로 증가함(아래 [그림 III-3] 참조)
 - 연평균 증가율은 연평균 복리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기하평균) 기준 90.13%임

[그림 III-3]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규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표 III-6>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 규모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014	14,423	34,273	67,379	134,970	257,850	379,633	491,857	685,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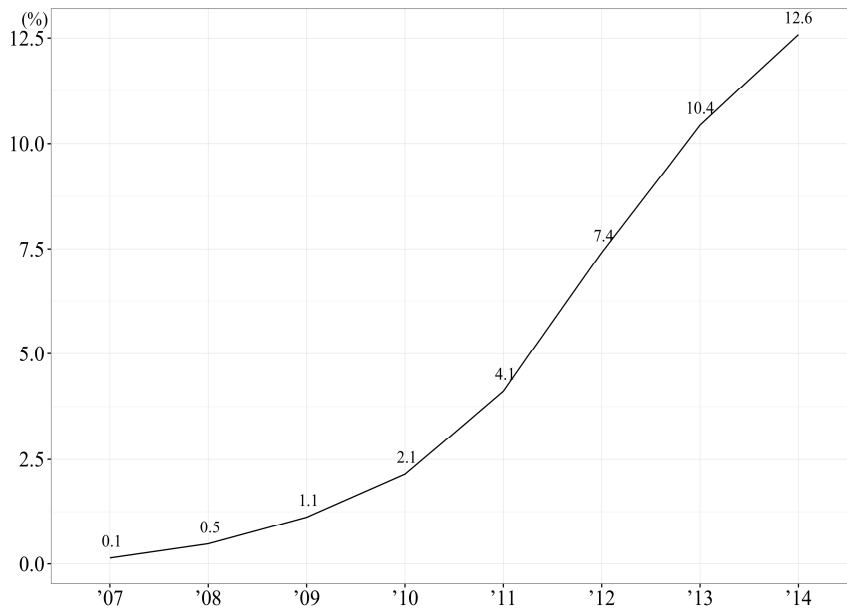
주: 해약 및 공제금 지급건을 제외하지 않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당해 연도 가입자의 순증(net inflow)²⁸⁾를 고려한 ‘재적 기준 가입자 수 비율’은 2014년 기준 총사업체 수 대비 12.6%임

28) 신규 가입자는 inflow, 해지나 공제금 지급은 outflow이며, 이로부터 순증(net inflow)가 나오게 됨. 순증은 당기의 신규 가입자 수에서 해지(임의해지 및 폐업, 사망, 퇴임 등의 사유에 따른 해지) 가입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됨. 하지만, 해지나 공제금 지급은 그 해 신규 가입자 중에서 발생한 것은 아님. 가입자 순증을 노란우산공제 내부 자료에는 “재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전체 중소기업 총사업체 중 약 12~14%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임
- 2012년 5%를 넘어선 뒤 가입자 수 비율은 급상승함
- ‘재적 기준 가입자 수 비율’은 “재적 가입자 수/소기업 및 소상공인 총사업체 수”로 산출하였으며, 이때 재적 가입자 수는 연도별 누계치임

[그림 III-4] 재적 가입자 수 비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표 III-7> 재적 가입자 수 비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14	0.48	1.12	2.15	4.11	7.41	10.44	12.58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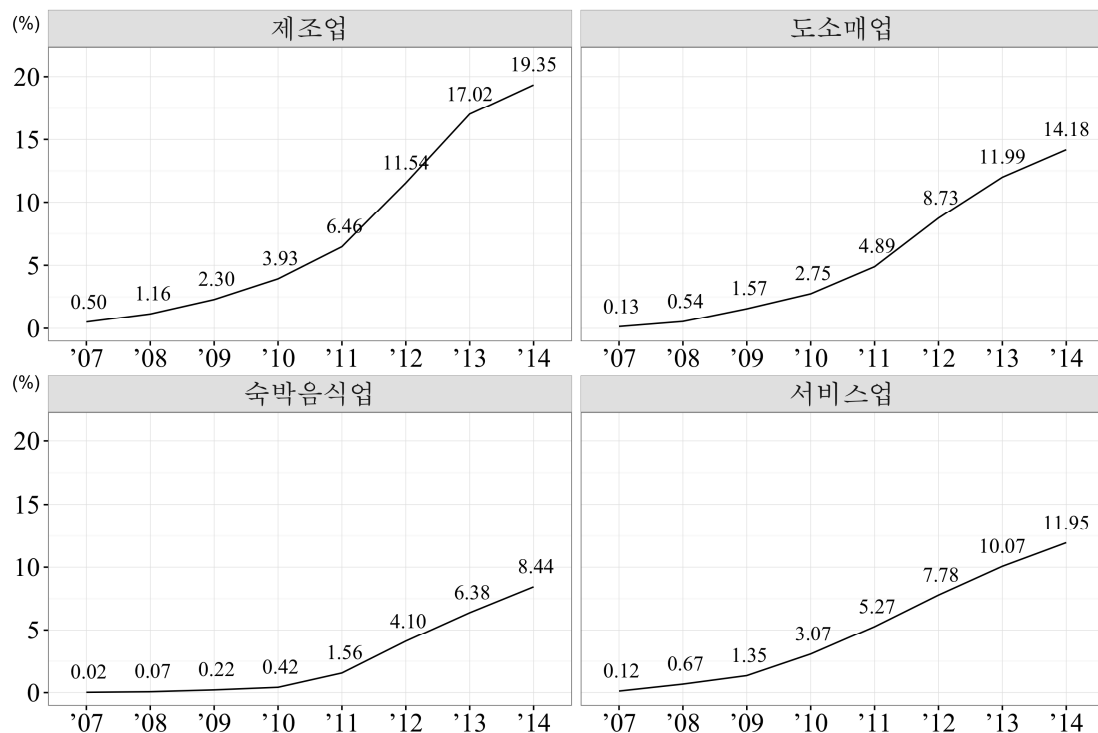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재적 가입자 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숙박음식업의 재적 가입자 수 비율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임
 - 2014년 제조업의 재적 가입자 수 비율은 19.35%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8.44%,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4.18%와 11.95%임
 - 숙박음식업의 경우 타 업종 대비 재적 가입자 수 비율이 낮은 편이나, 2011년 1.56%에서 2014년 8.44%로 급신장함

-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재적 가입자 수 비율은 2011~2014년 약 3배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2.3배 상승함
- 서비스업의 재적 가입자 수 비율 증가폭은 매년 일정한 편임

<표 III-8> 본고의 업종 재분류

제9차 한국표준사업대분류 기준	본고의 분류
제조업(C)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G)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I)	숙박음식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서비스업

[그림 III-5] 업종별 재적 가입자 수 비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표 III-9> 업종별 재직 가입자 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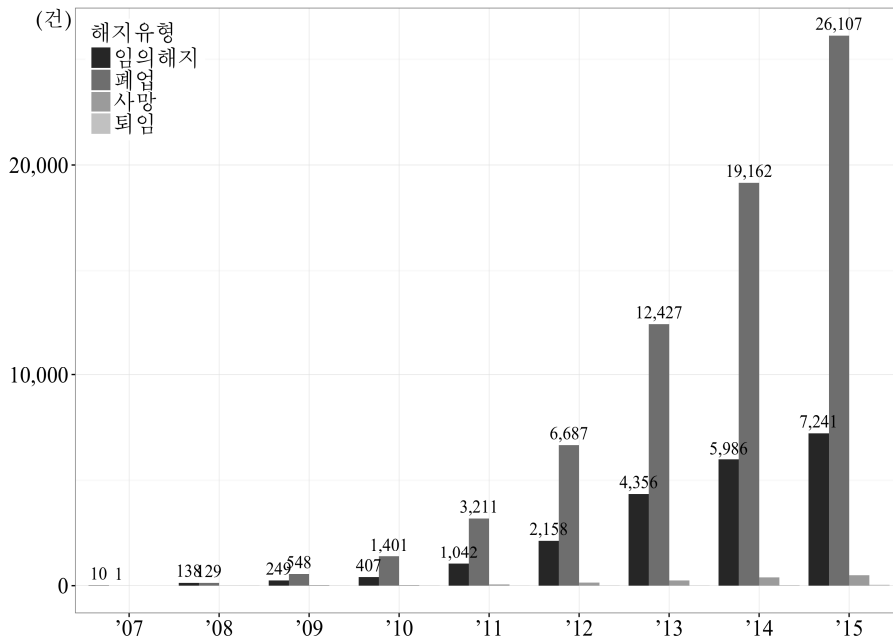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0.50	1.16	2.30	3.93	6.46	11.54	17.02	19.35
도소매업	0.13	0.54	1.57	2.75	4.89	8.73	11.99	14.18
숙박음식업	0.02	0.07	0.22	0.42	1.56	4.10	6.38	8.44
서비스업	0.12	0.67	1.35	3.07	5.27	7.78	10.07	11.95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 연도별 해지유형으로는 “폐업”에 따른 해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입자 의사에 따른 “임의해지”와 “사망”, “퇴임”의 순임
- 폐업에 따른 해지와 임의해지는 2011년 각각 3,211건과 1,042건에서 2015년 각각 26,107건과 7,241건으로 증가한 반면, 사망과 퇴임으로 인한 해지는 2015년 각각 497건과 46건으로 미미한 수준임

[그림 III-6] 가입자 해지 현황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표 III-10> 가입자 해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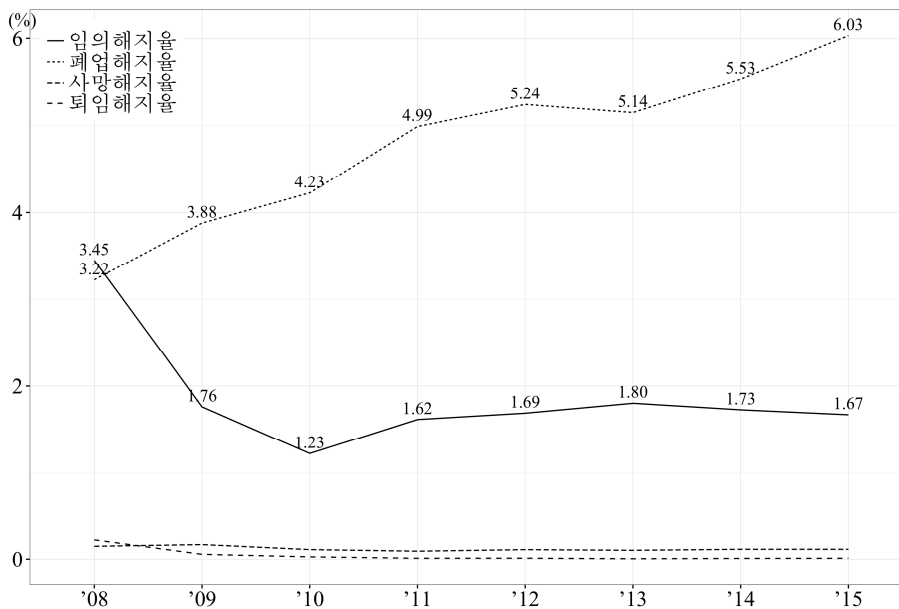
(단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의해지	10	138	249	407	1,042	2,158	4,356	5,986	7,241
폐업	1	129	548	1,401	3,211	6,687	12,427	19,162	26,107
사망	0	6	24	37	60	142	250	399	497
퇴임	0	9	8	9	7	15	13	32	46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가입자의 해지 유형별 해지액을 전년도 재적 기준 가입액으로 나눈 각 해지 유형별 해지비율은 “임의해지율”의 경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폐업해지율”의 경우 상승 추세임
 - 임의해지는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이며, 그 외 폐업, 사망, 퇴임 해지는 각각 상응하는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해지임.
 - 임의해지율의 경우 2013년 1.8%까지 상승한 뒤 2015년 1.67%로 하락함
 - 폐업해지율의 경우 2008년 3.22%에서 2015년 6.03%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그림 III-7] 유형별 해지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표 III-11>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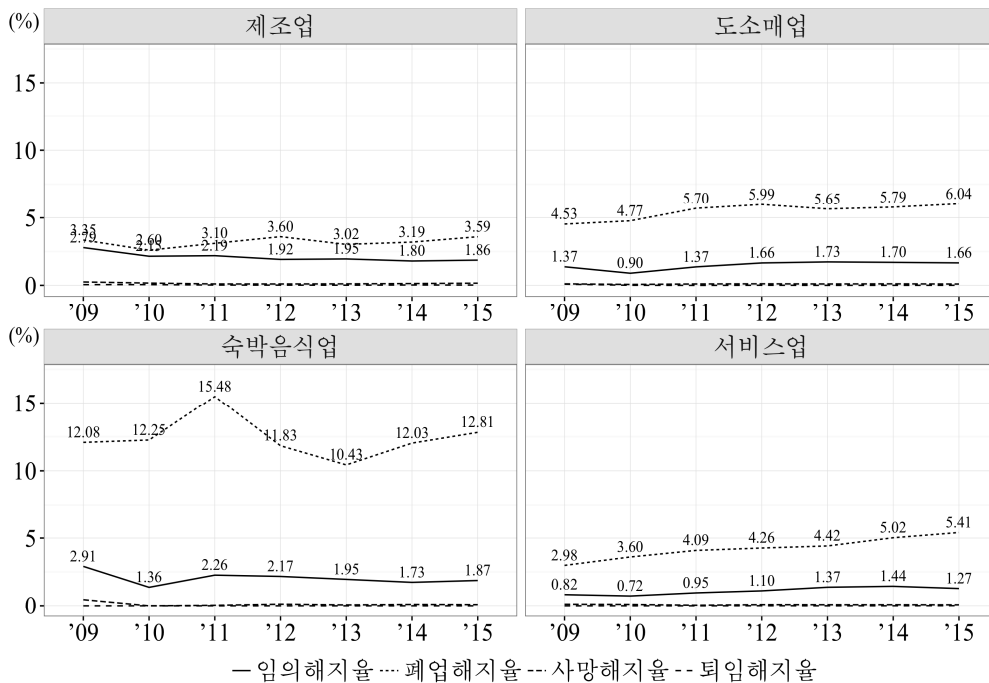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의해지율	3.45	1.76	1.23	1.62	1.69	1.80	1.73	1.67
폐업해지율	3.22	3.88	4.23	4.99	5.24	5.14	5.53	6.03
사망해지율	0.15	0.17	0.11	0.09	0.11	0.10	0.12	0.11
퇴임해지율	0.22	0.06	0.03	0.01	0.01	0.01	0.01	0.01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의 폐업해지율이 월등히 높으며, 다음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
 - 2009~2015년 숙박음식업의 폐업해지율은 연평균 12.42%인 반면, 동 기간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의 폐업해지율은 각각 연평균 5.50%, 4.26%, 3.21%임
 - 서비스업의 폐업해지율은 2009년 2.98%에서 2015년 5.41%로 지속적 상승
- 업종별 임의해지율은 격차가 크지 않으나,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III-8] 업종별 유형별 해지율



주: 서비스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개 업종 포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2009~2015년 제조업의 폐업해지율은 연평균 2.09%이며, 동 기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의 폐업해지율은 각각 1.48%, 2.03%, 1.09%임
-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의 임의해지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임의해지율은 다소 상승하는 경향임

<표 III-12> 업종별 유형별 해지율

Panel A: 제조업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의해지율	2.79	2.15	2.19	1.92	1.95	1.80	1.86
폐업해지율	3.35	2.60	3.10	3.60	3.02	3.19	3.59
사망해지율	0.25	0.17	0.10	0.10	0.11	0.13	0.16
퇴임해지율	0.06	0.06	0.02	0.02	0.01	0.03	0.02

Panel B: 도소매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의해지율	1.37	0.90	1.37	1.66	1.73	1.70	1.66
폐업해지율	4.53	4.77	5.70	5.99	5.65	5.79	6.04
사망해지율	0.11	0.07	0.10	0.12	0.10	0.11	0.10
퇴임해지율	0.09	0.01	0.00	0.01	0.00	0.00	0.01

Panel C: 숙박음식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의해지율	2.91	1.36	2.26	2.17	1.95	1.73	1.87
폐업해지율	12.08	12.25	15.48	11.83	10.43	12.03	12.81
사망해지율	0.45	0.00	0.04	0.12	0.07	0.10	0.09
퇴임해지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anel D: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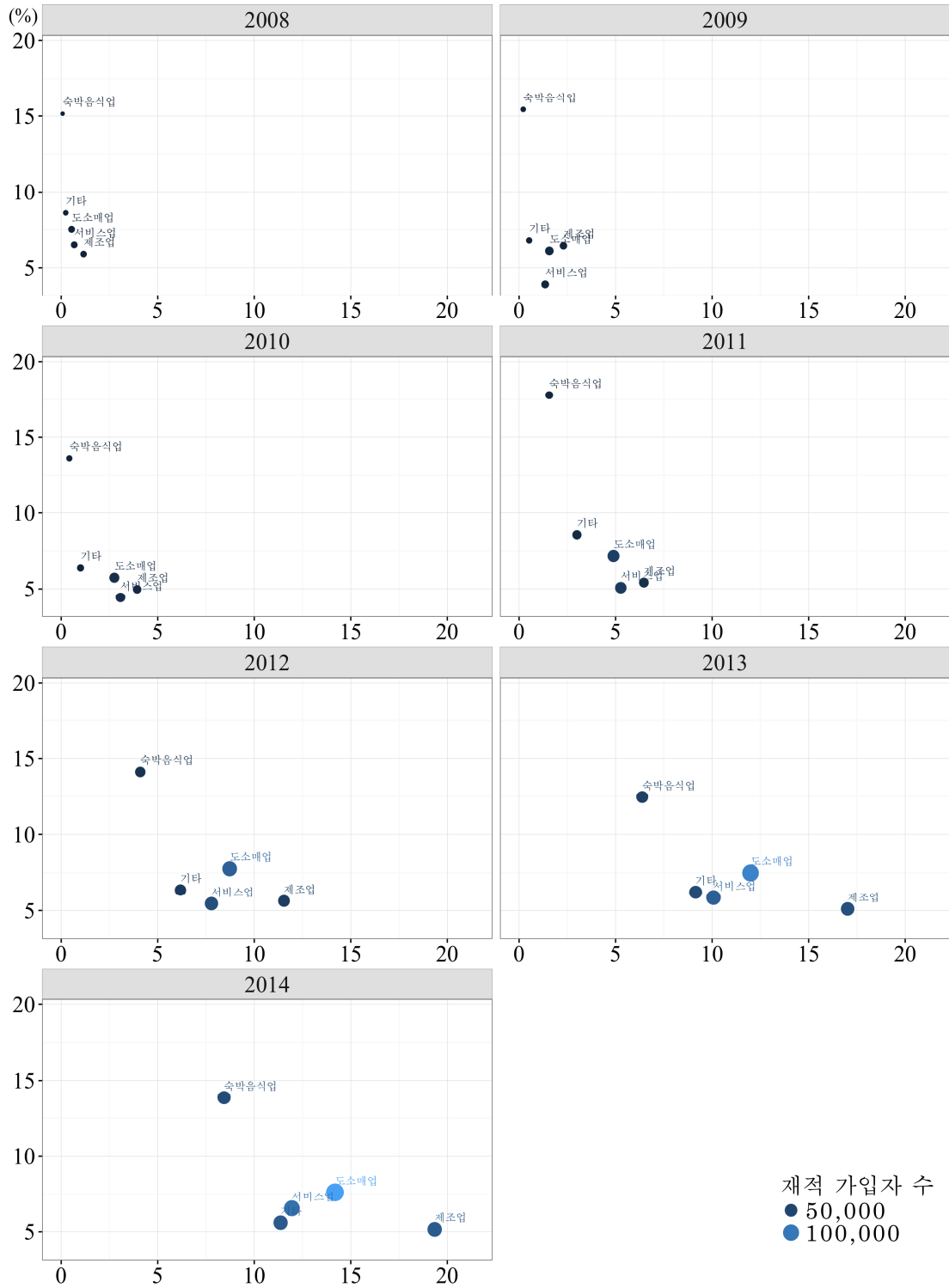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의해지율	0.82	0.72	0.95	1.10	1.37	1.44	1.27
폐업해지율	2.98	3.60	4.09	4.26	4.42	5.02	5.41
사망해지율	0.11	0.10	0.04	0.09	0.08	0.08	0.08
퇴임해지율	0.00	0.00	0.00	0.01	0.00	0.00	0.01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연도별-업종별 재적률과 해지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고 해지율도 낮은 편이나, 숙박음식업의 경우 해지율이 높은 수준임
 - 재적률: 해당 업종 총사업체 수 대비 누적 재적 기준 가입자 수 비율
 - 해지율: 전년도 재적 가입자 수 대비 당해년도 해지(임의해지, 폐업, 사망, 퇴임 포함) 가입자 수 비율

- 2012년 이후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가입자 수가 증가 추세임

[그림 III-9] 연도별 업종별 재적률 및 해지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표 III-13> 연도별 업종별 재적률 및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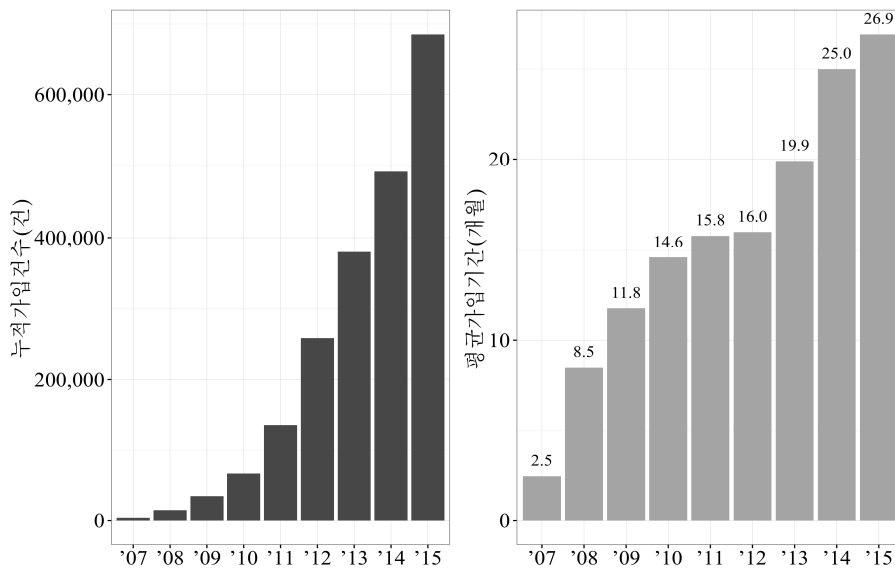
(단위: 명, %)

업종	재적 가입자 수	재적률	해지율
Panel A: 2008년			
제조업	3,584	1.16	5.90
도소매업	4,438	0.54	7.52
숙박음식업	447	0.07	15.15
서비스업	4,393	0.67	6.51
기타	1,266	0.23	8.60
Panel B: 2009년			
제조업	7,119	2.30	6.45
도소매업	12,952	1.57	6.11
숙박음식업	1,322	0.22	15.44
서비스업	8,909	1.35	3.92
기타	2,849	0.52	6.79
Panel C: 2010년			
제조업	12,411	3.93	4.97
도소매업	23,129	2.75	5.74
숙박음식업	2,609	0.42	13.62
서비스업	20,747	3.07	4.42
기타	5,507	1.00	6.39
Panel D: 2011년			
제조업	21,301	6.46	5.42
도소매업	42,401	4.89	7.17
숙박음식업	9,973	1.56	17.78
서비스업	36,969	5.27	5.08
기타	17,030	3.00	8.55
Panel E: 2012년			
제조업	40,178	11.54	5.63
도소매업	78,896	8.73	7.77
숙박음식업	26,935	4.10	14.12
서비스업	59,332	7.78	5.46
기타	36,211	6.18	6.37
Panel F: 2013년			
제조업	60,833	17.02	5.10
도소매업	110,133	11.99	7.49
숙박음식업	42,640	6.38	12.45
서비스업	77,610	10.07	5.87
기타	55,073	9.14	6.22
Panel G: 2014년			
제조업	74,016	19.35	5.16
도소매업	135,018	14.18	7.61
숙박음식업	57,727	8.44	13.86
서비스업	94,640	11.95	6.54
기타	71,533	11.36	5.59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누적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평균 가입기간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속도는 기간별로 상이함
 - 평균 가입기간은 공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의 비중에 따라 증가하므로 해지 가입자의 비중이 클 경우 가입기간 증가는 둔화됨
 - 평균 가입기간은 매 시점 재적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단순평균한 것으로서, 해지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
 - 아래 그림에서 2010~2012년, 2015년은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입자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 기간 해지 가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I-10] 연도별 누적가입건수 및 평균 가입기간



주: 가입기간의 우측절단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평균임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표 III-14> 연도별 누적가입건수 및 평균 가입기간

(단위: 천, 개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가입건수	4,014	14,423	34,273	67,379	134,970	257,850	379,633	491,857	685,388
평균 가입기간	2.5	8.5	11.8	14.6	15.8	16.0	19.9	25.0	26.9

주: 가입기간의 우측절단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평균임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미시자료 분석

- 이 소절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받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 해약 현황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가. 일반 현황

-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운영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전체 가입자 (공제 해약사유나 일반해약으로 해약된 가입자 포함)에서 무작위 추출한 총 46,790건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함

<표 III-15> 무작위 추출 표본의 가입 연도별 크기 및 전체 표본크기

(단위: 건)

연도	표본크기
2007	197
2008	794
2009	992
2010	2,865
2011	4,884
2012	7,803
2013	7,525
2014	7,286
2015	14,444
계	46,790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여, 각 표본이 가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가입연도별 분석’과 특정 사건(해약 관찰, 유지 관찰)이 발생한 ‘실제 연도별 분석’을 실시함
- <표 III-16>은 각 가입자의 가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연도별로 공제 해약 사유를 분석한 것임

- 공제 해약사유는 소상공인, 소기업 공히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질병, 부상)’,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및 ‘일반해약’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해약사유를 가입연도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III-16>에 제시됨
 - 예를 들어, 2008년 소상공인 가입자 중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해약된 건수는 총 5건이며, 2008년도 가입자 중 상기 다양한 해약사유로 해약한 총 건수는 173건임
 - <표 III-16>에서 패널 A는 소상공인, B는 소기업, C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합산한 결과임
- <표 III-16>의 결과는 노란우산공제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총 46,790건의 표본 내에서 계산된 수치임에 유의
 - 이 중 28건은 연도별 납부액이 중간에서 끊어졌으나, 이후 연도에 납부액 기록이 이어지면서, 2015년까지 납부하였고, 해약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함
 - 한편, 17건은 연도별 납부액이 끊어지고 이후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해약 사유가 명기되지 않아, 이들 관찰치는 ‘사유 미파악’으로 분류하고 납부액이 마지막 기록된 연도에서 해약한 것으로 간주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 합하여, 총 해약건수는 46,790건 중 6,014건(12.85%)이며, 이 중 1,540건(3.29%)이 일반 해약임

〈표 Ⅲ-16〉 노란우산공제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기입연도별 공제 해약사유

Panel A. 소기업										(단위: 건)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 (질병, 부상의 사유)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사유 미파악	일반해약	계	
2007	1	6			5		5	6	23	
2008	2	20	1	1	7	1		10	42	
2009	1	17		1	2			4	25	
2010	1	44	2		5	1		13	66	
2011	1	46	1	1	8			31	88	
2012	3	51	1		7			46	108	
2013		32	2	1	2			27	64	
2014		14	1					2	17	
2015		2						5	7	
계	9	232	8	4	36	2	5	144	440	

Panel B. 소상공인

(단위: 건)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 (질병, 부상의 사유)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사유 미파악	일반해약	계
2007	1	20			1		12	19	53
2008	5	114	1	1	5			47	173
2009	5	175			2			45	227
2010	11	475			8			104	598
2011	13	781			14	1		257	1,066
2012	18	996	2		14			409	1,439
2013	4	769			5			275	1,053
2014	5	518		1	2			143	669
2015	1	198						97	296
계	63	4,046	3	2	51	1	12	1,396	5,574

Panel C. 소기업+소상공인

(단위: 건)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 (질병, 부상의 사유)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사유 미파악	일반해약	계
2007	2	26			6		17	25	76
2008	7	134	2	2	12	1		57	215
2009	6	192		1	4			49	252
2010	12	519	2		13	1		117	664
2011	14	827	1	1	22	1		288	1,154
2012	21	1,047	3		21			455	1,547
2013	4	801	2	1	7			302	1,117
2014	5	532	1	1	2			145	686
2015	1	200						102	303
계	72	4,278	11	6	87	3	17	1,540	6,014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 다음 <표 III-17>은 가입연도 기준이 아닌, 해약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제 사유 발생연도별 공제 해약사유 및 건수, 나아가 2015년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 역시 노란우산공제 전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46,790건의 무작위 추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
 - 마찬가지로 28건은 연도별 납부액이 중간에서 끊어졌으나, 이후 연도에 납부액 기록이 이어지면서, 2015년까지 납부하였고, 해약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함
 - 마찬가지로 17건은 연도별 납부액이 끊어지고 이후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해약사유가 명기되지 않아, 이들 관찰치는 ‘사유 미파악’으로 분류하고 납부액이 마지막 기록된 연도에서 해약한 것으로 간주함
 - 공제 해약사유는 앞서 <표 III-16>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함
 - 역시 패널 A는 소상공인, B는 소기업, C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합산한 결과임
 - 해약 계는 <표 III-15>와 동일할 수밖에 없음
 - 2015년까지 유지한 표본은 이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 있어, 우측 절단된 생존기간 자료(right-censoring duration data)로 간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

〈표 III-17〉 노란우산공제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해약연도별 공제 해약사유

Panel A. 소기업 (단위: 건)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 (질병, 부상의 사유)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사유 미파악	일반해약	해약 계	생존	총계
2007									-		
2008		1			1		2	2	6		
2009	1			1	2		1	4	9		
2010		7	1		3			3	14		
2011	1	17			6		1	15	40		
2012	2	31	1		5		1	16	56		
2013	1	51	1	1	7			38	99		
2014	2	57	1		7			41	108		
2015	2	68	4	2	5	2		25	108		
계	9	232	8	4	36	2	5	144	440	3,612	4,052

Panel B. 소상공인 (단위: 건)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 (질병, 부상의 사유)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사유 미파악	일반해약	계약 계	생존	총계
2007								1	1		
2008		3		1			3	10	17		
2009	3	33			2			24	62		
2010	2	83			3		2	30	120		
2011	4	215			2		2	106	329		
2012	11	396	1		9		1	188	606		
2013	14	759	1		12		3	273	1,062		
2014	12	1,060			7		1	364	1,444		
2015	17	1,497	1	1	16	1		400	1,933		
계	63	4,046	3	2	51	1	12	1,396	5,574	37,164	42,738

Panel C. 소기업+소상공인

(단위: 건)

	개인사업자의 사망	개인사업체의 개인사업체의 폐업	법인대표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퇴임 (질병, 부상의 사유)	법인사업체의 폐업	법인의 해산	사유 미파악	일반계약	계약 계	생존	총계
2007								1	1		
2008		4		1	1		5	12	23		
2009	4	33		1	4		1	28	71		
2010	2	90	1		6		2	33	134		
2011	5	232			8		3	121	369		
2012	13	427			14		2	204	662		
2013	15	810		1	19		3	311	1,161		
2014	14	1,117			14		1	405	1,552		
2015	19	1,565		3	21	3		425	2,041		
계	72	4,278	11	6	87	3	17	1,540	6,014	40,776	46,790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관우산공제 내부자료

□ <표 III-18>은 연도별 실제 납부 현황을 요약한 것임

- 연도별 납부금 합계, 실제 납부액 평균, 실제 납부건수
- 납부액 평균에 있어, 3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특별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음
- 납부 총액은 연도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납부액 평균은 오르내리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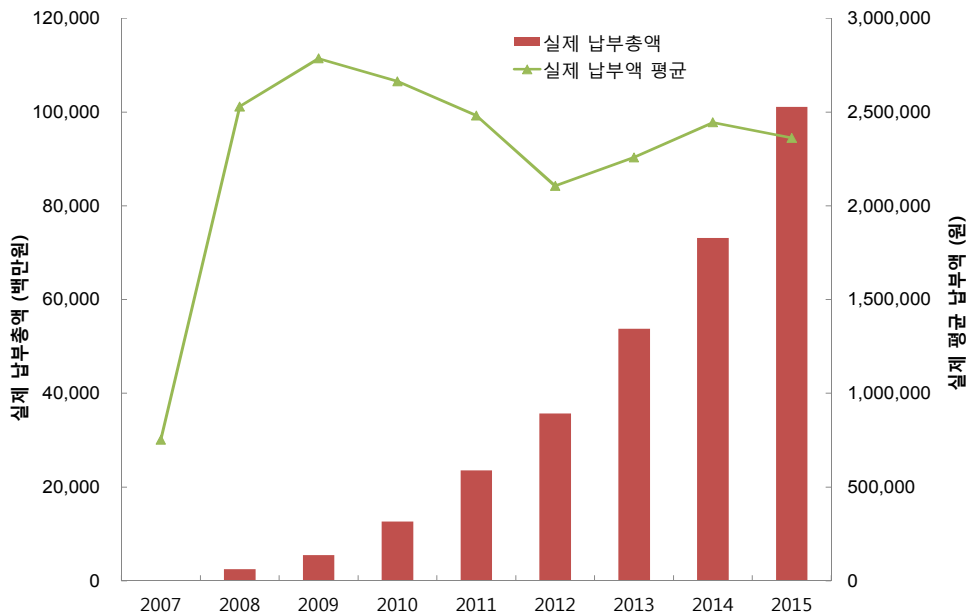
<표 III-18>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실제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원, 건)

	실제 납부총액	실제 납부액 평균	실제 납부 건수
2007	148	751,523	195
2008	2,504	2,529,374	988
2009	5,457	2,785,370	1,957
2010	12,661	2,663,711	4,752
2011	23,582	2,481,503	9,502
2012	35,658	2,105,342	16,936
2013	53,731	2,257,715	23,798
2014	73,143	2,444,214	29,924
2015	101,119	2,361,611	42,817
계	308,003	20,380,363	130,869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그림 III-11] 노란우산공제 연도별 실제 납부 추이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나.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에 대한 단순 분석

□ 관찰된 가입 기간을 중도절단 고려하지 않고 단순 분석함

- 중도 절단을 무시하므로 올바른 분석 방법은 아니나, 자료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표 Ⅲ-19>는 중도절단을 무시하고 관찰된 가입기간의 빈도와 상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다시피 1년짜리 관찰치가 가장 많음
 - 하지만, <표 Ⅲ-19>에 요약된 관찰된 가입기간 46,790건 중 40,776건이 우측 절단되었음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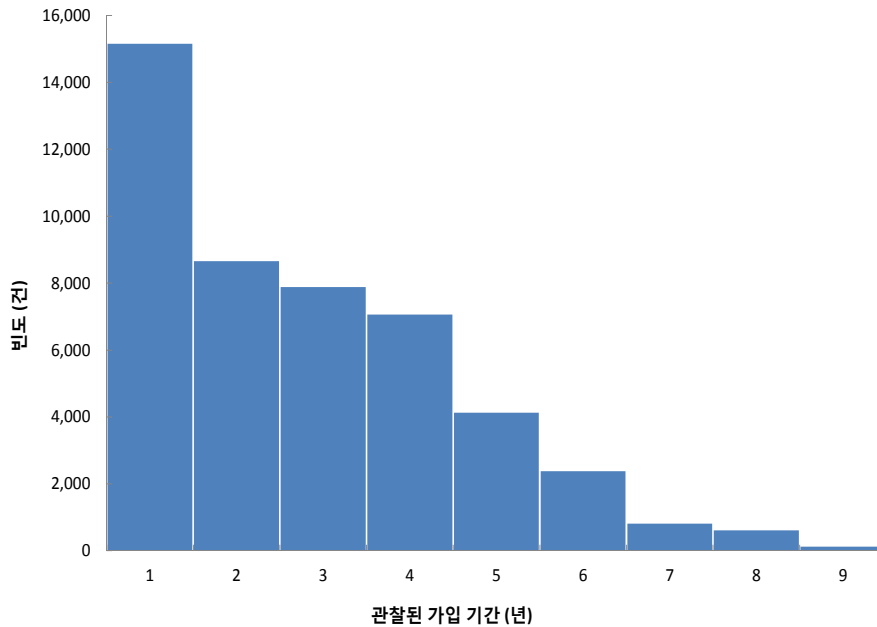
<표 Ⅲ-19>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관찰된 가입기간의 빈도

(단위: 건, %)

관찰된 가입 기간	빈도	상대빈도
1	15,152	32.38
2	8,654	18.5
3	7,881	16.84
4	7,058	15.08
5	4,124	8.81
6	2,379	5.08
7	809	1.73
8	608	1.3
9	125	0.27
계	46,790	99.99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그림 III-1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관찰된 가입기간의 분포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표 III-20> 노란우산공제 관찰된 가입기간의 요약

(단위: 건, 년)

N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	최소
46,790	2.7972	1.7601	2	9	1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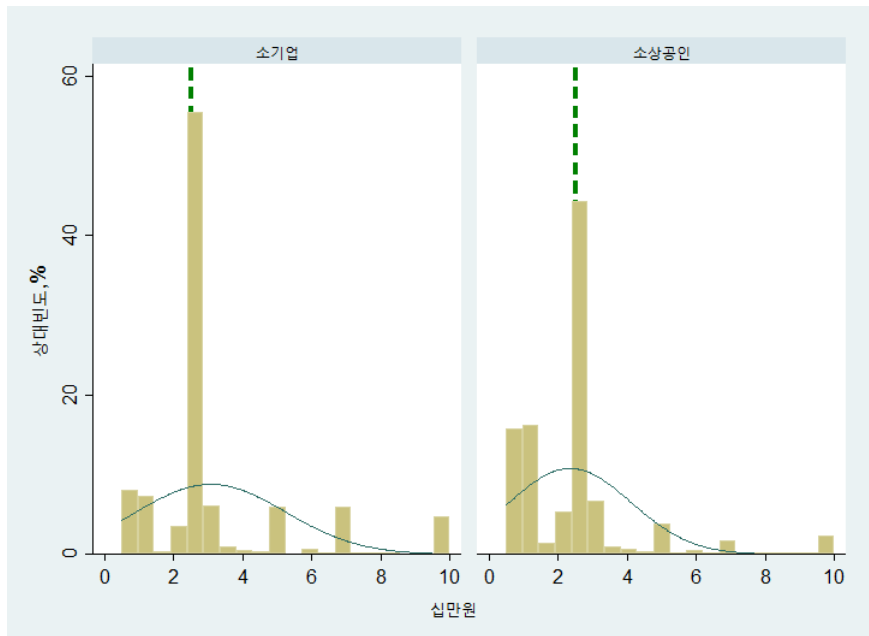
- 관찰된 가입기간의 단순 평균은 2.79년이지만 이는 중도절단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실제 가입기간 평균은 이보다 클 것임

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분석

- 이하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각 납부금을 분석하고자 하며, 납부금에는 각 가입자에 대해서 계약시 약정 월납부금에 대한 정보가 있고 실제 연도별 납부 총액에 대한 정보도 있음

- 이하 [그림 III-13]은 약정 월납부금의 분포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 예상할 수 있듯이, 연 300만원이 소득공제이므로 300만원을 12로 나눈 25만원 주변에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나타나며,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공히 마찬가지임

[그림 III-13]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약정 월 납부금의 분포



주: 점선은 연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12로 나눈 25만원을 나타냄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 다음 [그림 III-14]는 가입연도별로 약정 월 납부금의 분포를 상자그림(box plot)으로 나타냄
 - 소기업은 가입연도별로 분류하여 약정 월 납부금의 분포를 보았을 때, 2011~2013년을 제외하면, 월 25만원을 넘어서는 빈도가 적지 않음
 - 반면, 소상공인은 약정 월 납부금으로 월 25만원 이하의 분포가 적지 않고, 25만원이 대략 3사분위수가 되고 있음

[그림 III-14]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가입연도별
약정 월 납부금의 분포



주: 점선은 연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12로 나눈 25만 원을 나타냄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표 III-21> 월 납부금 25만원 초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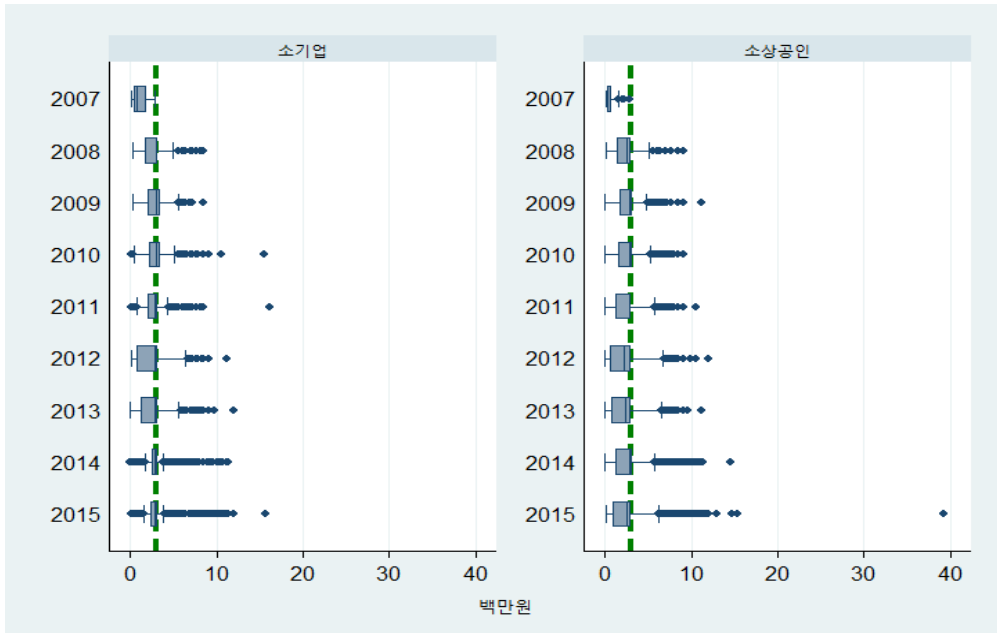
(단위: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기업	N	55	149	121	339	521	873	770	455	769
	비중	47.27%	30.87%	31.40%	32.45%	21.69%	16.27%	21.04%	25.71%	36.15%
소상공인	N	142	645	871	2,526	4,363	6,930	6,755	6,831	13,675
	비중	32.39%	22.64%	21.58%	20.70%	14.05%	10.68%	14.91%	17.86%	21.34%

□ [그림 III-15]는 납부연도별 실제 연간 납부액 분포의 상자그림

- 납부연도별로 파악해 보았을 때는 실제 납부액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이 모든 연도에서 일률적으로 중요한 임계치라 판단됨
- 소기업/소상공인 모두 300만원이 대략 2사분위수에 해당하여, 이보다 큰 실제 연간 납부금의 빈도가 적은 편임

[그림 III-15]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무작위 추출 표본에서 연도별 실제 연 납부액의 분포



주: 점선은 300만원을 나타냄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 [그림 III-15]로부터 실제 가입자의 공제 납부금 납입에 있어 연간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binding), 이는 가입자의 가입 동기에 있어 소득공제가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음

<표 III-22> 연 납부금 300만원 초과 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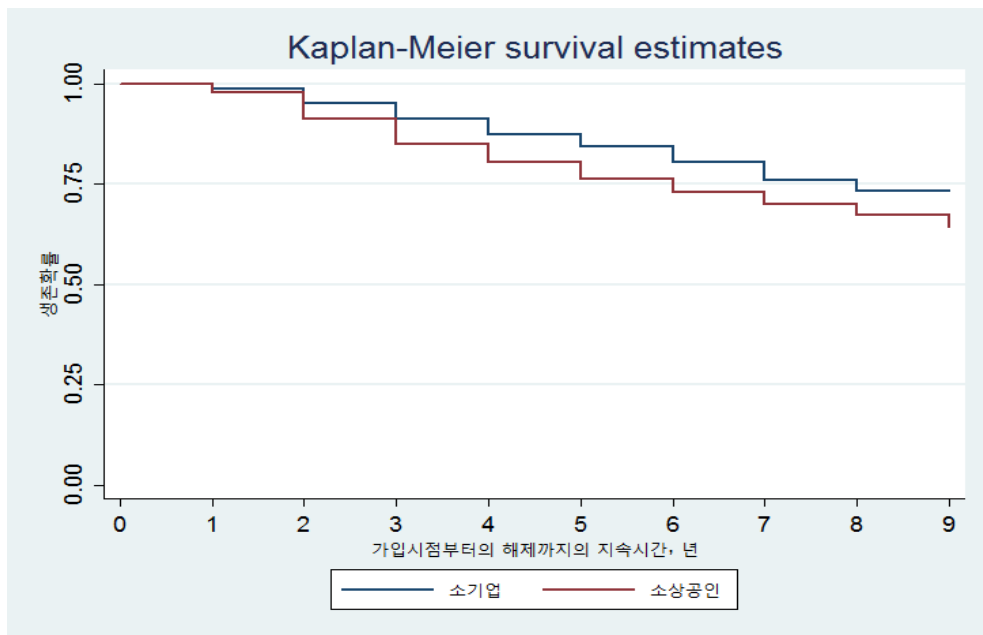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기업	N	402	1043	787	1,892	2,436	3,364	2,253	908	769
	비중	42.54%	30.39%	29.48%	31.55%	21.39%	14.66%	17.80%	23.35%	10.66%
소상공인	N	1,034	4,530	5,474	13,727	19,766	25,836	19,489	13,496	13,675
	비중	30.08%	20.86%	22.45%	19.25%	13.65%	9.10%	12.62%	14.21%	9.12%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라. 생존분석에 의한 노란우산공제 해약 분석

- [그림 III-16]은 생존분석에서 기본적인 비모수 기법인 Kaplan-Meier의 ‘누적곱극한 (product limit) 생존함수’를 소기업/소상공인에 따라 나타냄
 - 9년 시점에서 생존확률이 소기업/소상공인 공히 65% 이상임에 유의 → 해약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생존함수 값을 볼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예상대로 소상공인의 해약이 빠른 편으로 나타남
 - 즉,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유이든 간에 해약 ‘위험률’이 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이 높기 때문에 생존함수 값이 낮아지며 빠른 해약 가능성을 의미

[그림 III-16] 다양한 공제 해약사유에 의한 노란우산공제 해약 생존함수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 아래 <표 III-23>에는 중도절단을 고려하여, 실제 가입기간의 평균을 추정한 결과인데 가장 긴 가입기간인 9년에서 중도절단 자료가 많고([그림 III-16]에서 생존함수 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음), 이에 추정된 평균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음
 - 하지만, 앞서 중도절단 고려하지 않은 채 관찰 가입기간의 단순 평균인 2.7년과는 크게 차이가 남에 유의(앞서 단순분석 결과인 <표 III-20>과 비교·참조)

<표 III-23> 중도절단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입기간 평균

(단위: 년)

	N	평균	SE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소기업	4,052	7.8586	0.0529	[7.7549 ~ 7.9622]
소상공인	42,738	7.3980	0.0212	[7.3565 ~ 7.4396]
전체	46,790	7.4458	0.0197	[7.4072 ~ 7.4845]

주: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자체 계산함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3.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

- 여기에서 사용한 국세청 자료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00명의 종합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임의추출한 자료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신청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과대 추출(over-sampling)하여
 - 처리군과 비교군의 상대적 표본크기가 50:50이 되도록 표본을 구성하였음
 - 모집단에 대한 추론은 노란우산공제회에서 통계청의 사업체 전수조사를 기초로 산출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이용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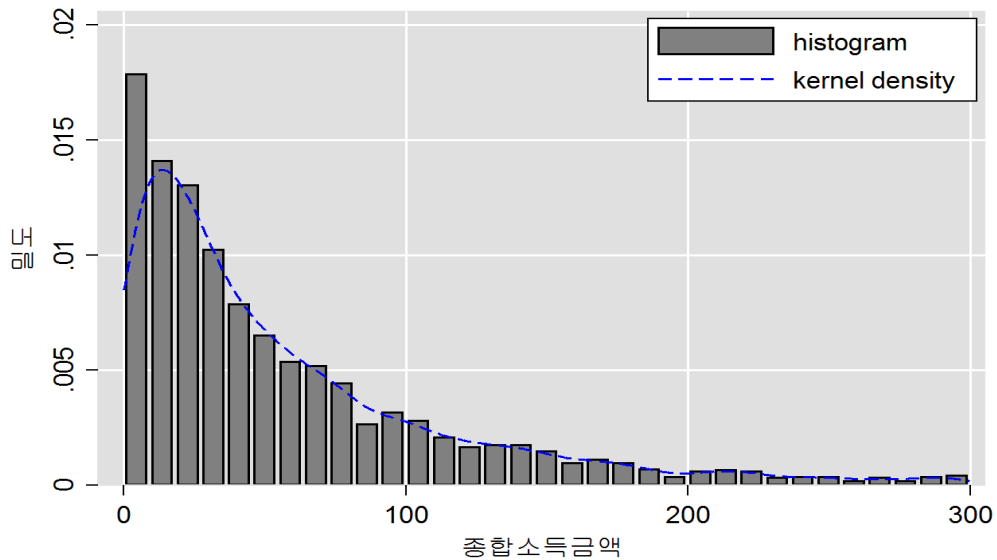
- 제한된 자료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비교적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분석이 될 것임

- 먼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에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 공제금액, 과세표준, 유효세율을 분석하였음
 -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표본과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전체 표본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층화추출 확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인 비가입자 혹은 비신청자의 경우 전체 표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 전체 표본과 노란우산공제 신청자의 경우만을 제시하였음

- 중심 측도로서는 전체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중위수를, 소득 분위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평균을 사용하였음([그림 III-17] 참조)
 - 종합소득의 경우 대체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경우 평균(mean)을 사용하면, 소득분포의 중앙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도 극단치(outliers)의 변화에 대해 평균값이 크게 변하게 됨
 - 중위수(median)은 평균에 비해 극단치에 대해 강건(robust)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10분위 소득구간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구간 내의 대푯값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치가 거의 없어 평균을 사용하였음

[그림 III-17] 2014년 종합소득의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단위: 백만원)



주: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분포
출처: 국세청 자료

- [그림 III-18]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먼저 종합소득(중위소득)의 경우 2008년 6,074만원에서 2014년 3,876만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그림 III-18]의 (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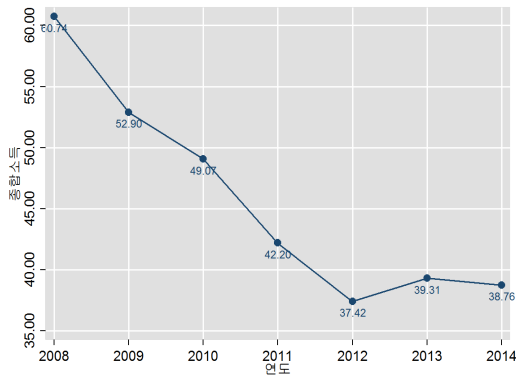
- 과세표준도 유사한 패턴으로 동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었음([그림 III-18]의 (b) 참조)
 - 전체의 경우 2008년 4,585만원에서 2014년 3,254만원으로 하락하였음

- 결정세액도 동 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였음([그림 III-18]의 (c) 참조)
 -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결정세액은 2008년 561만원에서 2014년 327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결정세액은 2008년 622만원에서 2014년 375만원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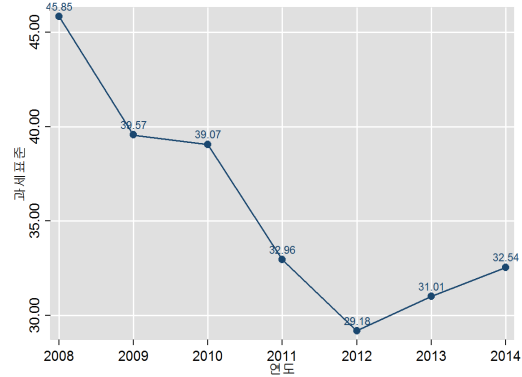
- 결정세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구한 유효세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었음([그림 III-18]의 (d) 참조)

[그림 III-18] 중위 종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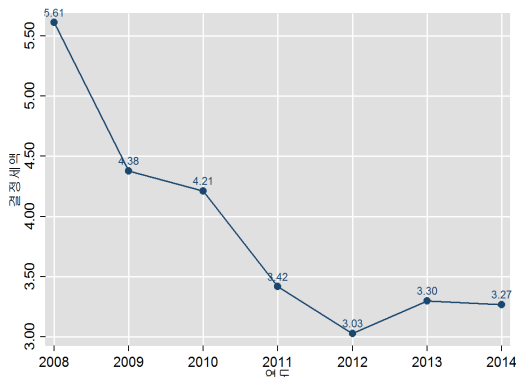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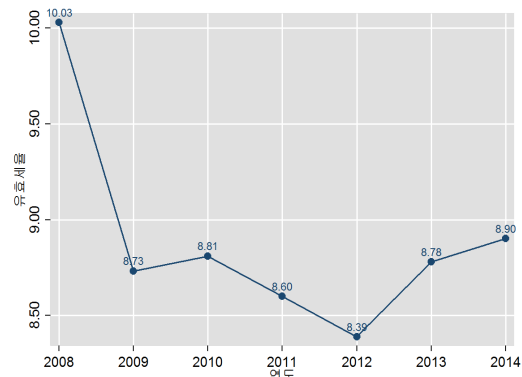
(a) 종합소득



(b) 과세표준



(c) 결정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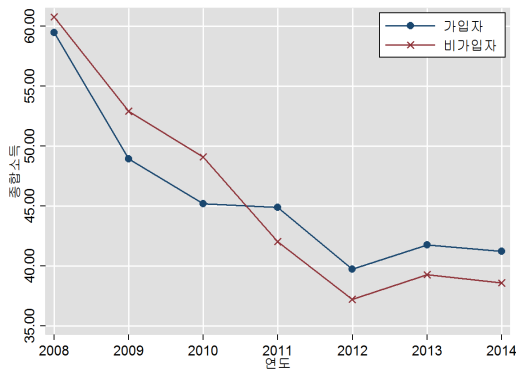
(d) 유효세율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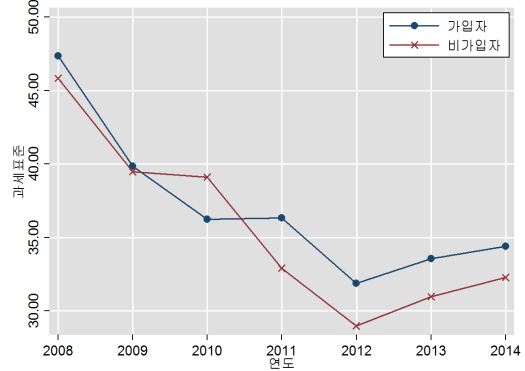
- 이러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유효세율의 변화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여 다시 산출한 결과는 [그림 III-19]에 제시되어 있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비가입자와 시계열적 변화는 유사함
 - 다만 2011년을 기점으로 하여 비가입자에 비해 높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가지고 있었고
 - 유효세율은 전반적으로 9%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가입자의 유효세율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음

[그림 III-19]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에 따른 중위 종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유효세율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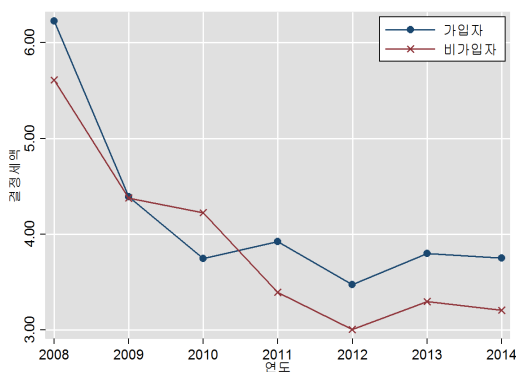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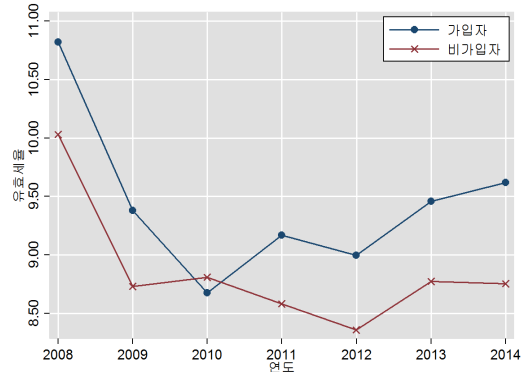
(a) 종합소득



(b) 과세표준



(c) 결정세액



(d) 유효세율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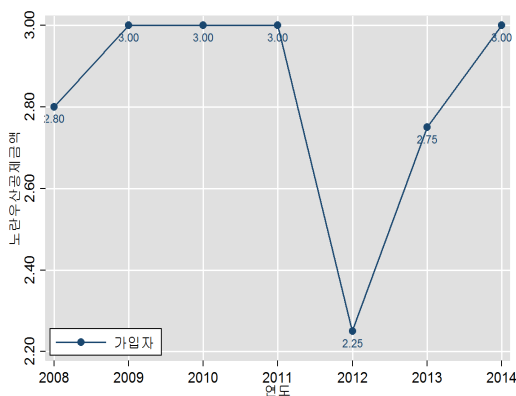
- 노란우산공제 신청액은 몇 해를 제외하고는 중위값으로 보았을 때 300만원을 신청하고 있었음
 - 공제 최고액수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300만원보다 클 수 있음(숫자 확인 필요)

- 전체 소득공제액 중에서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0% 초반에서 2014년 37.5%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증가추세는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총공제 금액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임
 -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연금저축과 같은 다른 공제 부분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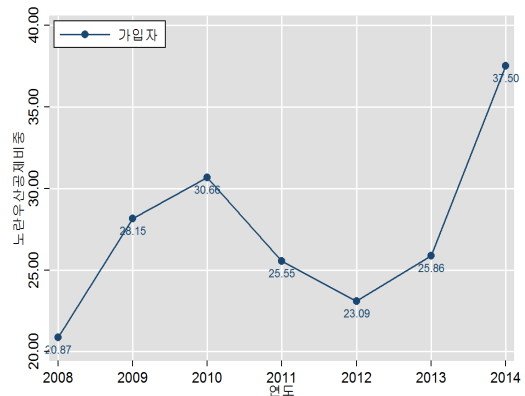
- 공제신청액과 과세표준, 해당 연도의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공제의 혜택을 구할 수 있고, 이 혜택의 규모는 대체로 45만원~51만원 사이 값을 가지고 있음
 - 2012년도가 종합소득도 낮고 공제 신청 금액도 예외적으로 낮기는 함

[그림 III -20] 중위 노란우산공제 공제액/공제혜택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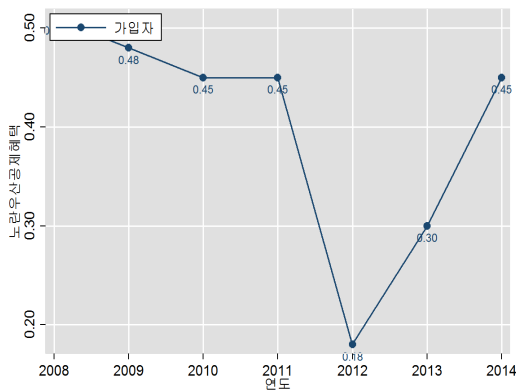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 노란우산공제 금액



(b) 노란우산공제 비중(%)



(c) 노란우산공제 혜택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1)

〈표 Ⅲ-24〉 국제청 지료 현황(중위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공제금액		결정세액		유효세율(%)		노란우산 공제금액	노란우산/ 총공제액 (%)	공제혜택
	전체	가입자	전체	가입자	전체	가입자	전체	가입자	전체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2008	60.74	59.45	45.85	47.35	13.1	10.26	5.61	6.22	10.03	10.82	2.8	20.87	0.51
2009	52.9	48.95	39.57	39.86	11.66	8.11	4.38	4.39	8.73	9.38	3	28.15	0.48
2010	49.07	45.2	39.07	36.25	9.1	8.1	4.21	3.75	8.81	8.68	3	30.66	0.45
2011	42.2	44.91	32.96	36.34	7.95	7.8	3.42	3.93	8.6	9.17	3	25.55	0.45
2012	37.42	39.73	29.18	31.87	7.53	7	3.03	3.48	8.39	9	2.25	23.09	0.18
2013	39.31	41.78	31.01	33.57	7.6	7.11	3.3	3.8	8.78	9.46	2.75	25.86	0.3
2014	38.76	41.24	32.54	34.4	5.5	5.5	3.27	3.75	8.9	9.62	3	37.5	0.45

출처: 국제청 자료(2008-2014년)

IV. 타당성 평가



IV. 타당성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필요성

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폐업 및 노령에 대한 위험 노출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한국 경제 전체 사업체의 97% 및 전체 종사자의 62%(’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사업활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부도·폐업 시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보험사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소기업·소상공인은 상시적으로 부도위험 및 유동성 위기나 부족에 노출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달리 노후를 위한 공적 또는 민간 퇴직금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²⁹⁾
 - 부도나 노동력 상실 시 사망시까지 생계보장 대책이 거의 전무
 - “부도”, “폐업” 관련 보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 보장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직종은 위험등급이 높아 가입에 제약(가입불가 또는 높은 보험료)
 - 상해보험은 상해등급을 1, 2,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 중 3등급의 직종은 보험사에서 “인수거절(인수제한)”로 처리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소득 중단 위험에 대한 보험 성격을 갖고 있어 소상공인·소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주요 위험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자 사회적 안전장치이기도 함
 - 정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소득공제 외에도 2014년까지 매년 3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음

29)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퇴직금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음

나. 보험에 대한 이해

- 보험이나 상호부조와 관련된 금융상품이나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별적 위험 노출(exposure, 익스포저)을 각자 개별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들 위험을 합쳐서 위험 인수 비용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함임
 - 경제주체 A와 B가 각각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 위험인수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보험 프리미엄, 보험료, 옵션 프리미엄 등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각각 PA 및 PB일 때, 이 위험을 합쳐서 인수하는 자가 있다면 A와 B는 각 보험료를 $PA - \epsilon A$ 및 $PB - \epsilon B$ 만큼 지급
 - 이러한 보험료(위험 인수 서비스에 대한 가격, 대가) 할인 효과는 위험 인수자의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administration cost)의 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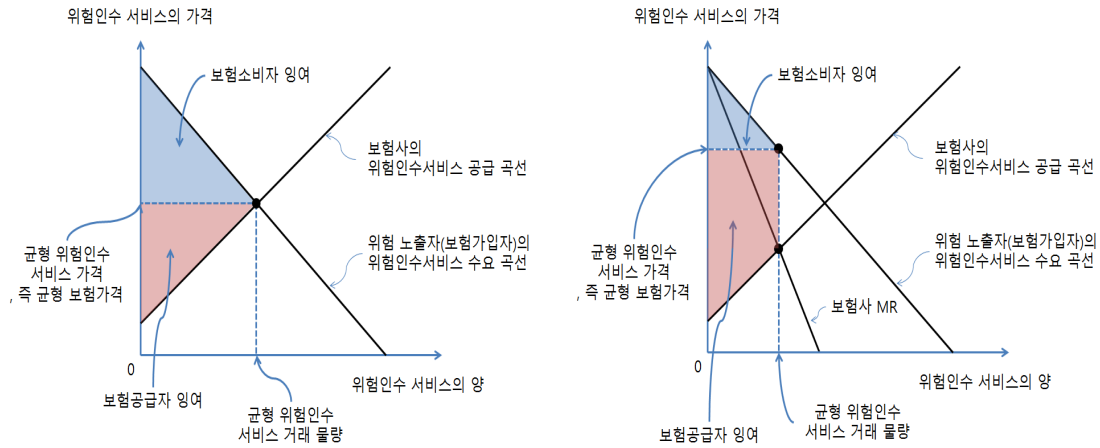
- ‘보험 이론적으로 공정한 보험가격(actuarially fair price)’은 위험의 양도자(보험 가입자)와 인수자(보험사)간 기대순이익(expected net profit)이 서로 0이 되는 가격으로 정의됨
 - 예시: 특정 위험 사건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이 q 이고, 그러한 사건 발생시 손실 M 이 발생할 때, 이를 100% 커버해주는 보험의 공정 보험료 p 는 $(M-p) \cdot q + (-p) \cdot (1-q) = 0$ 으로부터 $p = qM$ 으로 도출됨(따라서, p/M 은 사건 발생확률 q 와 동일)
 - 현실 경제에서 보험사는 회사 설립을 포함한 운영 등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기 이론적으로 공정한 가격 p 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며, 적정 비용을 얻은 가격을 $p' (> p)$ 라 할 때, 보험 규모가 커질수록(즉, 보험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p' 은 p 보다 높은 영역에서 낮아질 수 있음
 - 만일 관리비용이 없는 경제에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공정가격 p 를 부과한다면, 위험 양도자와 인수하는 보험사 모두에게 기대순이익이 0이 되어, 위험의 양수도 거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 위험 인수자인 보험기관이나 보험회사 존재의 편익은 없음

- 상기 보험학적으로 공정한 보험가격이란 여러 가지 가능한 경제 모형이나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하며, 보험가격에 대한 또 다른 경제학적 모형의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음
 - 상기 보험학적으로 공정한 보험가격은 기대치(expectation)에 의존하여 도출되므로, 위험중립적인 세계에서는 적절한 이론가일 수 있으나, 현실 세계는 위험 회피적 세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공정가격 산출에 있어 위험 프리미엄이 고려되지 않은 단점이 있음
 - 위험이란 goods가 아니고 bads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수요-공급의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보험사가 판매(공급)하는 것은 “위험인수 서비스”라는 goods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사는 공급자이고, 보험가입자는 수요자가 되어 위험인수 서비스의 거래에 따라 통상적인 수요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발생하여 사회 전체적 후생 수준을 높임
 - 이하 [그림 IV-1]의 (a)는 위험인수 서비스시장, 즉 보험시장이 경쟁적이라는 전제하에 소비자와 공급자 잉여를 나타낸 것이며, (b)는 보험사가 독점적인 경우임
 - 보험사가 독과점이라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최적의 위험인수 서비스 거래(즉, 최적의 물량과 가격)에 못 미치면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 후생은 발생하게 됨
 - [그림 IV-1]에서 “보험소비자=보험가입자=위험노출자”이며, “보험사=보험기관=보험공급자=보험생산자=위험인수자”임
 - 정부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납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이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납부해주는 것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subsidy)이므로, 기본적으로 [그림 IV-1]에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어떤 후생 변화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음
 - 보조금 여부와 무관하게 균형가격은 정해질 것이지만, 실제 소비자가 납부하는 가격은 보조금만큼 내려가게 됨
 - 따라서, 보조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사회 전체 후생은 서로 동일함
 - ‘(정부 보조금)×(균형 물량)’만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정부 후생이 감소하므로, 사회전체적 후생은 변화가 없음

[그림 IV-1] 위험인수서비스(보험)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a) 경쟁적 보험시장

(b) 독점 보험사의 시장



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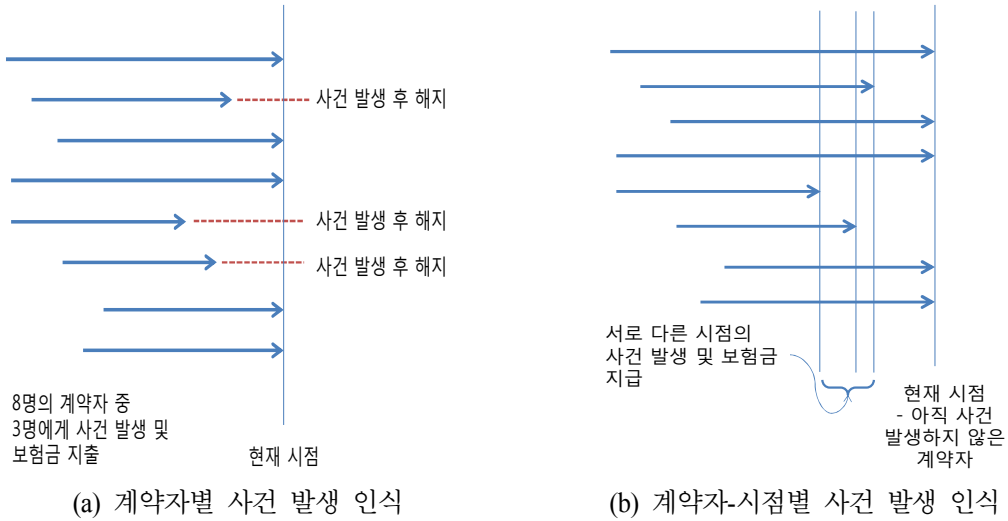
-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공적 보험은 보험기관이 이윤 극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보험 공급곡선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또는 운영 공적 기관)가 정한 특정 가격(경쟁적 균형가격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 평평한 공급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도 유의
 -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는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지불 금액을 더욱 낮추므로 소비자 후생만큼은 매우 크게 증가됨

- 앞서 보험제도에 관한 논의는 각 위험 노출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발생 여부가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들이지만, 보험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보험사가 인수하여 통합한 위험이 통째로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 개별 위험의 발생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
 - 그러한 독립성이 강할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위험을 인수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낮아지며, 보험이 사회 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큼
 - 기후에 따른 손실, 재난이나 대형 사고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보험은 사건 발생 여부의 상관관계가 강한 편이며, 실제 그러한 사건 발생시 해당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음³⁰⁾

- 노란우산공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의 경우 소상공인 폐업이 동일 또는 유사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가능하기에 이를 인수하고자 하는 주체는 민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감당하기 쉬운 위험은 아님
- 보험에서 위험의 발생을 ‘계약자별’로 인식할 수도 있고, ‘계약자-시점별’로 인식할 수도 있음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손해보험은 계약자별로 위험을 인식하여 어떤 계약자는 보험이 커버해줘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계약자는 발생하지 않음
 - 이 경우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전체 계약자 중 어느 정도 비중의 계약자에게 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사 지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며,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험사의 수입이 됨
 - 그러나, 손해보험 중 재해보험은 계약자 거의 전체가 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파산 가능성이 높음
 -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별로 사건을 인식하면 모든 개별 계약자에게 확률 1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지출하거나 이후 분산하여 분할하여 보험금을 지출하게 됨
 - 따라서, 연금보험을 계약자별로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 재해보험 이상으로 사건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
- 연금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계약자에게 언젠가는 확률 1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그 지급 시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위험 발생을 계약자-시점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물론 이 경우에도 동일 시점이나 유사 시점에서 한꺼번에 보험금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쉽게 파산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계약자의 연령,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을 최대한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30) 보험사는 이러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재보험(reinsurance) 계약을 하기도 함

[그림 IV-2] 사건 발생 인식 방식의 차이



- 노란우산공제가 연금보험은 아니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언젠가는 확률 1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폐업, 노령, 퇴업, 사망 또는 일반 해약 등임
- 노란우산공제는 연금보험, 손해보험, 종신보험(사망보험) 등의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는 종합적 보험 패키지 - 폐업 위험, 장수 위험, 사망 위험 등을 모두 포괄
- 노란우산공제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처럼 자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손해보험적인 성격으로 폐업률을 예측하여 일시적인 공제금 지출을 대비하여 적절한 준비금을 쌓아두어야 할 것임
- 민간 보험사는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매우 높을 것임

[그림 IV-3] 생보사와 손보사의 전형적인 대차대조표

(a) 생보사		(b) 손보사	
차변	대변	차변	대변
투자 90	책임 준비금 80	투자 90	보험계약 준비금 45
기타 자산 10	후순위 장기 채무 10	기타 자산 10	미경과보험료 15
	자기자본 10		후순위 장기 채무 10
			자기자본 30
총계 100	총계 100	총계 100	총계 100

주: 생보사와 손보사 공히 투자 자산은 주로 회사채와 국채임

〈표 IV-1〉 노란우산공제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수입			합계	지출				당기순이익	누적이익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이자적립/지급	사업비	관리비	사업외비용		
		투자자산 운용수입 등	국고보조금 및 잡수입, 목적사업준비금							
2007	16,044	3,085,402		3,101,446	79,320	2,298,655	709,548	0	13,922	13,922
2008	1,029,882	2,061,987		3,091,869	632,651	3,021,838	1,460,594	0	-2,023,213	-2,009,291
2009	3,516,800	6,135,459		9,652,259	2,953,384	6,075,166	1,689,057	0	-1,065,349	-3,074,640
2010	10,885,827	3,002,958		13,888,785	7,387,797	6,618,910	1,866,238	0	-1,984,160	-5,058,800
2011	24,139,745	3,001,168		27,140,913	13,308,336	9,468,400	3,214,218	0	1,149,959	-3,908,841
2012	41,151,976	3,012,415		44,164,390	23,966,381	13,940,010	4,176,657	0	2,081,342	-1,827,499
2013	65,912,250	3,013,858		68,926,107	37,159,078	16,904,110	4,689,639	6,327,562	3,845,718	2,018,219
2014	98,323,044	26,193,065		124,516,109	67,833,902	19,549,388	6,139,653	23,188,181	7,804,985	9,823,203
2015	133,392,872	109,864,895		243,257,768	75,991,019	28,388,075	9,020,097	121,635,530	8,223,047	18,046,250

출처: 노란우산공제 내부자료

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의 적절성

- 폐업, 퇴임, 노령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령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의 불완비성(incompleteness)을 보완하는 수단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위험에 대한 보호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유도된 저축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소득공제의 수단 적절성

- 노란우산공제 공제 가입을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중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이 좀 더 적절한 수단임
 - 조세지출 규모만큼 재정지출을 했을 때 대상자 파악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 자영업자를 조세체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다른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여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에 준하는 사건에 대비한 저축 혹은 보험을 지원하는 재정지출 사업이나 조세특례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중복성은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으로서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임

- 하지만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공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성을 가진 상품이 된 측면이 있음
 - 예컨대, 적절한 가정하에(연 300만원 공제부금, 15% 한계세율, 만기 5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IRR(내부수익률)이 5.9% 정도가 됨
 - 동일한 금액을 정기 예적금에 예치했을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이 2%를 하회함
-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은 세제를 통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지원 수준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형평성의 측면 역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
- 아래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공제 계약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1) IRR(내부수익률)에 대한 이해

- 특정 자산(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에 대한 투자에 있어, 투자 원금이 단 한 번 들어 가고(cash inflow) 해당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자산을 매각하여 단 한 번 현금으로 회수(cash outflow)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임
 -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자산을 매입하여 1년 후 1만 1천원에 매각했다면, 그 투자 수익률은 쉽게 10%임 - 여기서 계산된 10%는 내부수익률이며 가장 계산이 간단한 케이스임($10000 = \frac{11000}{1 + 0.1}$) [zero-coupon bond의 형태]
 - 국가적 SOC 투자, 기업의 투자까지도 포함하여, 대부분 투자(프로젝트, 금융자산 투자, 실물자산 투자 등)에 있어 투자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보유·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내야 하는) 투자를 위한 투입 비용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multiple cash inflow], 그러한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받는) 이자, 배당, 임대료 뿐만 아니라 만기 상환이나 투자 회수(exit, divestiture) 등에 따른 현금의 수취도 여러 차례 발생하는[multiple cash outflow]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multiple cashflow는 아래 예시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음

<표 IV-2> 다중 현금흐름이 내재되는 투자안이나 금융계약의 예시

투자안	현금흐름의 내용
연금보험	보험료를 만기까지 여러 차례 납부하고, 만기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연금 개시 시점에 한꺼번에 연금을 받거나 이후 분할하여 여러 차례 연금을 받게 됨
채권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 가격대로 현금을 한 번 지출하고 이후 이표(coupon)를 여러 차례 받다가 만기에 이표와 채권 원금을 수취함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가적 SOC 사업	대형의 설비투자의 경우, 몇 년간 여러 차례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적정 기간 이후 그 설비로부터 현금흐름이 창출됨
주식	주식을 매입할 때, 주가대로 현금을 한 번 지출하고 이후 배당을 현금으로 여러 차례 받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은행 대출	대출시 대출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이 들어오고, 이후 만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여러 차례 납부(차주와 은행은 서로 대칭적으로 다른 입장으로 차주는 대출채무로 인식, 은행은 대출채권으로 인식)

- 투자안과 투자자를 구분한 후, 투자안(투자프로젝트, 금융자산, 금융계약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투자안에 내는 현금(현금 유입, cash inflow)과 투자로부터 얻는 현금(현금 유출, 현금 인출, cash outflow)를 구분해야 함
 -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부수익률을 구할 수 있음
-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은 특정 시점에서 투자안에 투입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그 시점에서의 가치와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로 정의됨

Example

6년 전 시작했던 투자안이 있다. 이 투자를 구현하기 위해 그 때 당장 10억원이 들었고 1년말, 2년말에 각각 10억원이 투입되었고, 4년말에 3억원, 5년말에 2억원의 현금을 얻을 수 있었고, 6년말인 오늘 해당 투자안을 29억원에 시장에 매각하였다. 이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하라.

S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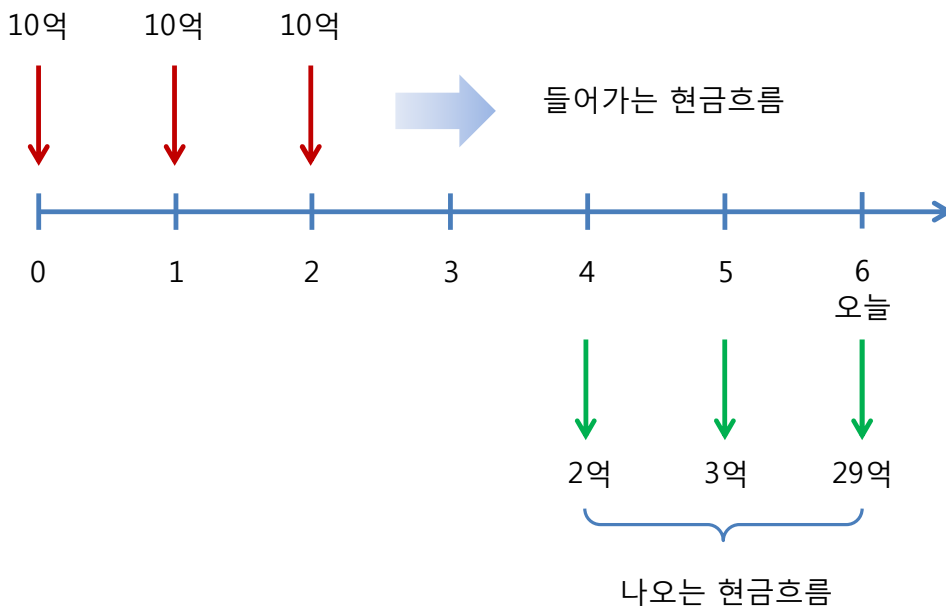
여러 기간에 걸친 투자였고, 현금흐름도 여러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잘못된 수익률 계산

동 투자안에 들어간 돈이 총 30억원이고, 나온 돈이 총 34억원이므로, 6년간 13.3333%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이를 연율화하면 연 2.1080% $(=(1+0.13333)^{1/6}-1)$
→ 잘못된 계산임

IRR에 입각한 바른 계산

현금흐름의 스케줄을 들어가는 현금흐름과 나오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그려 보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시점을 오늘 시점인 6기말로 택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현금흐름의 오늘 시점에서의 가치는 아래와 같다.

$$10(1+y)^6 + 10(1+y)^5 + 10(1+y)^4 \text{(억원)}$$

나오는 현금흐름의 오늘 시점에서의 가치는 아래와 같다.

$$2(1+y)^2 + 3(1+y) + 29 \text{(억원)}$$

따라서, IRR는 아래를 만족하는 y 가 된다.

$$10(1+y)^6 + 10(1+y)^5 + 10(1+y)^4 = 2(1+y)^2 + 3(1+y) + 29 \quad (1)$$

한편, 종종 많은 교과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식에서 y 를 풀라고 한다.

$$10 + \frac{10}{(1+y)} + \frac{10}{(1+y)^2} = \frac{2}{(1+y)^4} + \frac{3}{(1+y)^5} + \frac{29}{(1+y)^6} \quad (2)$$

그러나, 상기 식 (1)과 (2)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식 (1)의 양변을 $(1+y)^6$ 으로 나누면 식 (2)가 도출된다. 또는 식 (3)과 같이 시점 0에서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0 = -10 + \frac{-10}{(1+y)} + \frac{-10}{(1+y)^2} + \frac{2}{(1+y)^4} + \frac{3}{(1+y)^5} + \frac{29}{(1+y)^6} \quad (3)$$

어떻게 IRR을 계산하든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기 동일한 식 (1), (2), (3)을 만족시키는 y 는 $y^* = 2.64(\%)$ 이며, 이는 위의 잘못 계산된 2.1080%와 다르다.

(2)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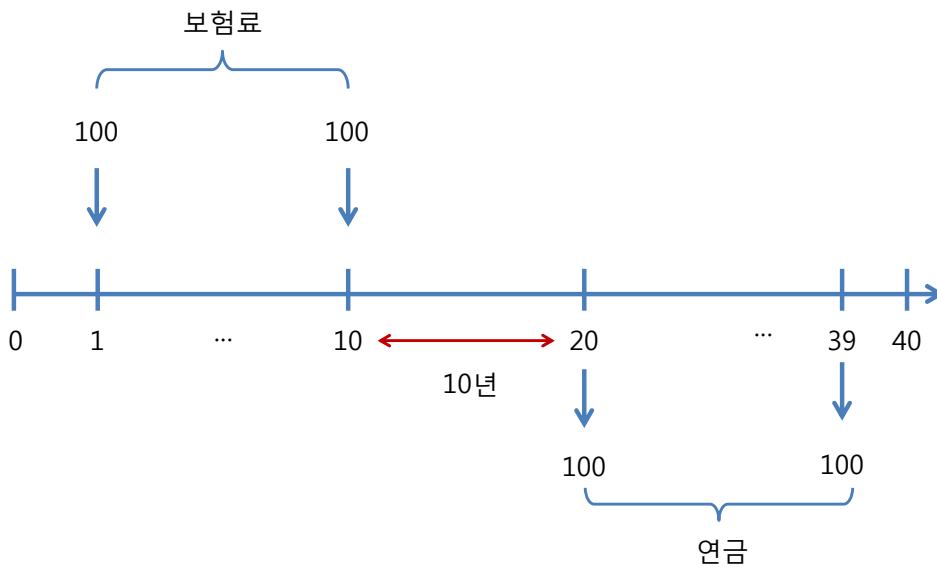
- 앞서 내부수익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고자 함
 - 이하 몇 가지 예시를 통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이익을 시산하고 이를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보았을 때,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자 함
- 이에 앞서, 보험 상품의 경우 내부수익률로서 투자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해 살펴봄

Example

오늘 계약하되 향후 1년후부터 1년마다 10년 후까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그로부터 다시 10년 후부터 20년간 총 20회 매년 말 10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 보험상품의 내부수익률을 구하라.

Sol)

현금흐름의 스케줄을 그리면 다음 그림과 같다.



따라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r 을 찾는다.

$$\frac{100}{1+r} + \frac{100}{(1+r)^2} + \dots + \frac{100}{(1+r)^{10}} = \frac{100}{(1+r)^{20}} + \frac{100}{(1+r)^{39}}$$

내부수익률 $r = 2.9762(\%)$ 가 된다.

-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보고 내부수익률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잘 고려해 주어야 함
- 이하 시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2011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5년간 영업을 하고 2015년에 폐업했음을 가정

-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 및 폐업 시 이율은 각 연도 노란우산공제 실제 이율을 사용함
- 연 납부금은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으로 가정
- 소득공제율은 15%, 24%, 35% 등으로 변경하여 시산함
-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금액은 재투자해야 할 것이고, 1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한다고 가정
 - 아울러, 1년 만기 후 이자소득세 납부 후 이자를 받으며, 그해 다시 돌려받는 소득공제분을 합하여 다시 만기 1년 정기예금에 재투자
 - 이자소득세는 14%를 가정함

□ 아래 시산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율이나 금리가 r 일 때 이는 순(net) 개념이며(net rate of return), $1+r$ 을 조금리(gross interest rate), 조수익률(gross rate of return), 조이율 등으로 부르며 누적수익률 계산시 중요함
- 연속한 2기간의 이율, 금리, 수익률 등이 r_1, r_2 일 때, 최초 원금 M 은 $M(1+r_1)(1+r_2)$ 가 되며, 여기서 $(1+r_1)(1+r_2)$ 가 누적조금리, 누적조수익률, 누적조이율임
-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므로, 100원을 예치하였을 때, 1년 후 세후 원리금은 $100(1+r) - 100 \cdot r \cdot \tau = 100(1+r(1-\tau))$ 가 됨에 유의(여기서 r 은 정기예금 금리, τ 는 이자소득세율) → 세후 조수익률은 $1+r(1-\tau)$ 가 됨

□ 아래 <표 IV-4>의 시산 1의 결과를 보면, 300만원씩 2011년부터 5년간 2015년까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고 2015년 말 폐업을 했을 때, 노란우산공제 세후(퇴직소득세) 공제금은 약 1,553만원이 되고, 매년 소득공제분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한 결과 세후 원리금이 약 235만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폐업 시점에서 총 1,788만원을 수취

- 이를 IRR로 계산하면, 연 5.9057%(아래 방정식의 해)이며 이는 어느 금융자산의 세후 투자수익률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300(1+r)^5 + 300(1+r)^4 + 300(1+r)^3 + 300(1+r)^2 + 300(1+r) = 1,788$$

- 한편, 소득공제 및 채투자분을 제외하고 IRR을 구하면, 1.1586%임
- 이후 각 시산 테이블에 상기 두 가지 IRR을 제시함

- <표 IV-3>은 동일한 금액을 정기에금에 예치했을 경우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의 내부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음
- 예컨대, 만기 5년을 납입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15% 한계세율 구간에 있을 경우 정기에금의 내부수익률은 1.16%인 데 반해
 -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은 5.9%로 5배 이상 높았음
 - 소득공제율이 35% 구간인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은 11.44%로 정기에금의 수익률에 비해 10배 가까이 내부수익률이 높음
 - 만기가 10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는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 어느 상품에 비해서 안전하면서(무위험) 동시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임은 확실함

<표 IV-3> 시나리오별 정기에금과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

시나리오	내부수익률(%)		
	정기에금(A)	노란우산공제(B)	배수(B/A)
Panel A. 만기 5년			
소득공제율 15%	1.16	5.90	5.09
소득공제율 35%	1.16	11.44	9.86
Panel B. 만기 8년			
소득공제율 15%	1.24	4.30	3.47
소득공제율 35%	1.24	7.80	6.29
Panel C. 만기 10년			
소득공제율 15%	1.39	3.84	2.76
소득공제율 35%	1.39	6.64	4.78

주: 노란우산공제의 수익률은 공시된 수익률을 사용하되, 장기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익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음.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다시 만기 1년 정기에금에 채투자하게 됨. 지방 소득세는 분석에서 제외

- 좀 더 자세한 산식과 분석결과는 <표 IV-4>~<표 IV-8>에 제시하고 있으니 참조하면 됨

〈표 IV-4〉 시산 1: 5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15% 가정

	기준이율	폐업이율	정기예금 (1년) 금리	이자소득 세율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원)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원)	폐업조이율 (1+이율)	폐업누적조 이율 (1+이율)의 누적합	연납부금의 누적 (원)	정기예금 세후조금리 (1+금리* (1-이자 소득세율))	정기예금 세후누적조 금리 (1+금리*(1-이 자소득세율))	소득공제액의 누적 (원)
2011	3.20%	3.50%	n.a.	14.00%	3,000,000	15%	450,000	103.50%	116.72%	3,501,478	-	-	493,822
2012	3.00%	3.30%	3.71%	14.00%	3,000,000	15%	450,000	103.30%	112.77%	3,383,070	103.19%	109.74%	478,554
2013	2.80%	3.10%	2.89%	14.00%	3,000,000	15%	450,000	103.10%	109.17%	3,274,995	102.49%	106.35%	466,948
2014	2.60%	2.90%	2.53%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5.88%	3,176,523	102.18%	103.77%	457,005
2015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2.90%	3,087,000	101.56%	101.56%	450,000

세전 수령공제금	16,423,066
-------------	------------

소득공제액 재투자 세후 원리금	2,346,329
------------------------	-----------

퇴직소득세	893,096
-------	---------

세후 수령공제금	15,529,970
-------------	------------

공제금과 소득공제 재투자 합산	17,876,299
------------------------	------------

IRR (소득공제 및 재투자 포함)	5.9057%
IRR (소득공제 및 재투자 제외)	1.1596%

주: 2011년 사업 시작, 5년 후인 2015년 폐업 가정, 소득공제율 15%, 각 연도 실제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정기예금(1년) 금리 사용

〈표 IV-5〉 시산 2: 5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35% 가정

	기준이율	폐업이율	정기예금 (1년) 금리	이자소득 세율	노란우산 공제 공제부금 (원)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원)	폐업조이율 (1+이율)	폐업누적 조이율 (1+이율)의 누적곱	연납부금의 누적 (원)	정기예금 세후조금리 (1+금리* (1-이자소득 세율))	정기예금 세후누적 조금리 (1+금리* (1-이자 소득세율))	소득공제 액의 누적 (원)
2011	3.20%	3.50%	n.a.	14.00%	3,000,000	35%	1,050,000	103.50%	116.72%	3,501,478	-	-	1,152,252
2012	3.00%	3.30%	3.71%	14.00%	3,000,000	35%	1,050,000	103.30%	112.77%	3,383,070	103.19%	109.74%	1,116,625
2013	2.80%	3.10%	2.89%	14.00%	3,000,000	35%	1,050,000	103.10%	109.17%	3,274,995	102.49%	106.35%	1,089,546
2014	2.60%	2.90%	2.53%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5.88%	3,176,523	102.18%	103.77%	1,066,344
2015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2.90%	3,087,000	101.56%	101.56%	1,050,000

세전 수령공제금	16,423,066
-------------	------------

소득공제액 재투자 세후 원리금	5,474,768
------------------------	-----------

퇴직소득세	893,096
-------	---------

세후 수령공제금	15,529,970
-------------	------------

공제금과 소득공제 재투자 합산	21,004,738
------------------------	------------

IRR (소득공제 및 재투자 포함)	11.4416%
IRR (소득공제 및 재투자 제외)	1.1596%

주: 2011년 사업 시작, 5년 후인 2015년 폐업 가정, 소득공제율 35%, 각 연도 실제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정기예금(1년) 금리 사용

〈표 IV-6〉 시산 3: 8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15% 가정

	기준이율	폐업이율	정기예금 (1년) 금리	이자소득 세율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원)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원)	폐업조이율 (1+이율)	폐업누적조 이율 (1+이율의 누적곱)	연납부금의 누적 (원)	정기예금 세후조금리 (1+금리* (1-이자소득 세율))	정기예금 세후누적조 금리 (1+금리*(1-이 자소득세율))	소득공제혜의 누적 (원)
2011	3.20%	3.50%	n.a.	14.00%	3,000,000	15%	450,000	103.50%	116.72%	3,501,478	-	-	493,822
2012	3.00%	3.30%	3.71%	14.00%	3,000,000	15%	450,000	103.30%	112.77%	3,383,070	103.19%	109.74%	478,354
2013	2.80%	3.10%	2.89%	14.00%	3,000,000	15%	450,000	103.10%	109.17%	3,274,995	102.49%	106.35%	466,948
2014	2.60%	2.90%	2.53%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5.88%	3,176,523	102.18%	103.77%	457,005
2015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2.90%	3,087,000	101.56%	101.56%	464,118
2016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5.88%	3,176,523	101.56%	103.14%	471,343
2017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8.95%	3,268,642	101.56%	104.74%	478,680
2018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12.11%	3,363,433	101.56%	106.37%	450,000

세전
수령공제금
26,231,664

소득공제 혜재투자 세후 원리금
3,760,470

퇴직소득세
856,801

세후
수령공제금
25,374,863

공제금과 소득공제 재투자 합산
29,135,333

IRR (소득공제 및 재투자 포함)	4.2955%
IRR (소득공제 및 재투자 제외)	1.2367%

주: 2011년 사업 시작, 8년 후인 2018년 폐업 가정, 소득공제율 15%, 2015년까지는 각 연도 실제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정기예금(1년) 금리, 이후로는 2015년 이율과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

〈표 IV-7〉 시산 4: 8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를 35% 가정

	기준이율	폐업이율	정기예금 (1년) 금리	이자소득 세율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원)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원)	폐업조이율 (1+이율)	폐업누적조 이율 (1+이율)의 누적곱	연납부금의 누적 (원)	정기예금 세후조금리 (1+금리* (1-이자소득 세율))	정기예금 세후누적조 금리 (1+금리* (1-이자소득 세율))	소득공제액의 누적 (원)
2011	3.20%	3.50%	n.a.	14.00%	3,000,000	35%	1,050,000	103.50%	116.72%	3,501,478			1,152,252
2012	3.00%	3.30%	3.71%	14.00%	3,000,000	35%	1,050,000	103.30%	112.77%	3,383,070	103.19%	109.74%	1,116,625
2013	2.80%	3.10%	2.89%	14.00%	3,000,000	35%	1,050,000	103.10%	109.17%	3,274,995	102.49%	106.35%	1,089,546
2014	2.60%	2.90%	2.53%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5.88%	3,176,523	102.18%	103.77%	1,066,344
2015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2.90%	3,087,000	101.56%	101.56%	1,082,943
2016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5.88%	3,176,523	101.56%	103.14%	1,099,800
2017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8.95%	3,268,642	101.56%	104.74%	1,116,920
2018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12.11%	3,363,433	101.56%	106.37%	1,050,000

세진
수령공제금
26,231,664

퇴직소득세
856,801

세후
수령공제금
25,374,863

공제금과
소득공제
채투자-합산
34,149,293

IRR (소득공제 및 채투자 포함)	7.7987%
IRR (소득공제 및 채투자 제외)	1.2367%

소득공제
액제투자
세후-원리금
8,774,431

주: 2011년 사업 시작, 8년 후인 2018년 폐업 가정, 소득공제율 35%, 2015년까지는 각 연도 실제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정기예금(1년) 금리, 이후로는 2015년 이율과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

〈표 IV-8〉 시산 5: 10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15% 가정

	기준이율	폐업이율	정기예금 (1년) 금리	이자소득 세율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원)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원)	폐업조 이율 (1+이율)	폐업누적조 이율 (1+이율)의 누적곱	연납부금의 누적 (원)	정기예금 세후조금리 (1+금리* (1-이자소득 세율))	정기예금 세후누적조 금리 (1+금리* (1-이자소득 세율))	소득공제액의 누적 (원)
2011	3.20%	3.50%	n.a.	14.00%	3,000,000	15%	450,000	103.50%	116.72%	3,501,478			493,822
2012	3.00%	3.30%	3.71%	14.00%	3,000,000	15%	450,000	103.30%	112.77%	3,383,070	103.19%	109.74%	478,554
2013	2.80%	3.10%	2.89%	14.00%	3,000,000	15%	450,000	103.10%	109.17%	3,274,995	102.49%	106.35%	466,948
2014	2.60%	2.90%	2.53%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5.88%	3,176,523	102.18%	103.77%	457,005
2015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2.90%	3,087,000	101.56%	101.56%	464,118
2016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5.88%	3,176,523	101.56%	103.14%	471,343
2017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08.95%	3,268,642	101.56%	104.74%	478,680
2018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12.11%	3,363,433	101.56%	106.37%	486,131
2019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15.37%	3,460,972	101.56%	108.03%	493,698
2020	2.60%	2.90%	1.81%	14.00%	3,000,000	15%	450,000	102.90%	118.71%	3,561,341	101.56%	109.71%	450,000

세진 수령공제금
33,253,977

소득공제액 채투자 세후 원리금
4,740,299

퇴직소득세
866,449

세후 수령공제금
32,387,528

공제금과 소득공제 채투자 합산
37,127,827

IRR (소득공제 및 채투자 포함)	3.8413%
IRR (소득공제 및 채투자 제외)	1.3876%

주: 2011년 사업 시작, 10년 후인 2020년 폐업 가정, 소득공제율 15%, 2015년까지는 각 연도 실제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정기예금(1년) 금리, 이후로는 2015년 이율과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

〈표 IV -9〉 시산 6: 10년 후 폐업 및 소득공제율 35% 가정

	기준이율	폐업이율	정기예금 (1년) 클리	이자소득 세율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원)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원)	폐업조이율 (1+이율)	폐업누적조 이율 (1+이율) 누적곱	연납부금의 누적 (원)	정기예금 세후조클리 (1+클리* (1-이자소득 세율))	정기예금 세후누적조 클리 (1+클리* (1-이자소득 세율))	소득공제액의 누적 (원)
2011	3.20%	3.50%	n.a.	14.00%	3,000,000	35%	1,050,000	103.50%	116.72%	3,501,478			1,152,252
2012	3.00%	3.30%	3.71%	14.00%	3,000,000	35%	1,050,000	103.30%	112.77%	3,383,070			1,116,625
2013	2.80%	3.10%	2.89%	14.00%	3,000,000	35%	1,050,000	103.10%	109.17%	3,274,995			1,089,546
2014	2.60%	2.90%	2.53%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5.88%	3,176,523			1,066,344
2015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2.90%	3,087,000			1,082,943
2016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5.88%	3,176,523			1,099,800
2017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08.95%	3,268,642			1,116,920
2018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12.11%	3,363,433			1,134,306
2019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15.37%	3,460,972			1,151,962
2020	2.60%	2.90%	1.81%	14.00%	3,000,000	35%	1,050,000	102.90%	118.71%	3,561,341			1,050,000

세 건
수령공제금
33,253,977

소득공제액
채투자
세후 원리금
11,060,698

퇴직소득세
866,449

세후
수령공제금
32,387,528

공제금과
소득공제
채투자 합산
43,448,226

IRR (소득공제 및 채투자 포함)
6.6364%
IRR (소득공제 및 채투자 제외)
1.3876%

주: 2011년 사업 시작, 10년 후인 2020년 폐업 가정, 소득공제율 35%, 2015년까지는 각 연도 실제 노란우산공제 이율 및 정기예금(1년) 클리, 이후로는 2015년 이율과 클리가 유지된다고 가정

3. 지원의 형평성

- 노란우산공제 관련 조세지출의 형평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소득공제의 실질적 수혜계층이 어디인가의 문제로 귀결됨

- 본 연구에서는 1) 노란우산공제 집계변수를 이용한 분석과 2)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관련 조세지출 혜택의 귀착을 분석하였음
 - 노란우산공제 집계변수의 경우 어떤 직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고 어떤 직종이 이탈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떤 직종이 좀 더 노란우산공제에 오래 남아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하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노란우산공제 집계자료가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지는 못함
 - 이를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조세지출의 혜택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혜택이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다른지, 더 나아가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음

- 노란우산공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업종별 전문직의 가입률은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과 비교하여 더 높은 반면, 전문직의 해지율은 전문직 외 사업자 해지율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 조세지출의 수혜가 전문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1분위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혜택은 연 9만원인 데 반해, 10분위 소득자의 가입 혜택은 105만원으로 11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이 소득공제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임
 - 지니계수로 측정한 가입자가 지원 혜택의 불평등도 역시 2008년 0.352에서 2014년 0.436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가. 노란우산공제 집계변수를 이용한 형평성 분석

- 노란우산공제 관련 조세지출의 형평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소득 공제의 실질적 수혜계층이 어디인가의 문제로 귀결됨
 - 과세부담이 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유지 비율이 높다면,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이 고소득 구간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함

- 소득분배의 형평성 검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및 해지율의 일반적 수준과 전문직 가입률 및 해지율 수준을 비교하였음
 - 분석 대상인 전문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9차를 기준으로 478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71101(변호사업), 71102(변리사업), 71103(법무사업), 71201(공인회계사업), 71202(세무사업), 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3100(수의업), 86101(종합 병원), 86102(일반병원), 86103(치과 병원), 86104(한방 병원), 86201(일반 의원), 86202(치과 의원), 86203(한의원)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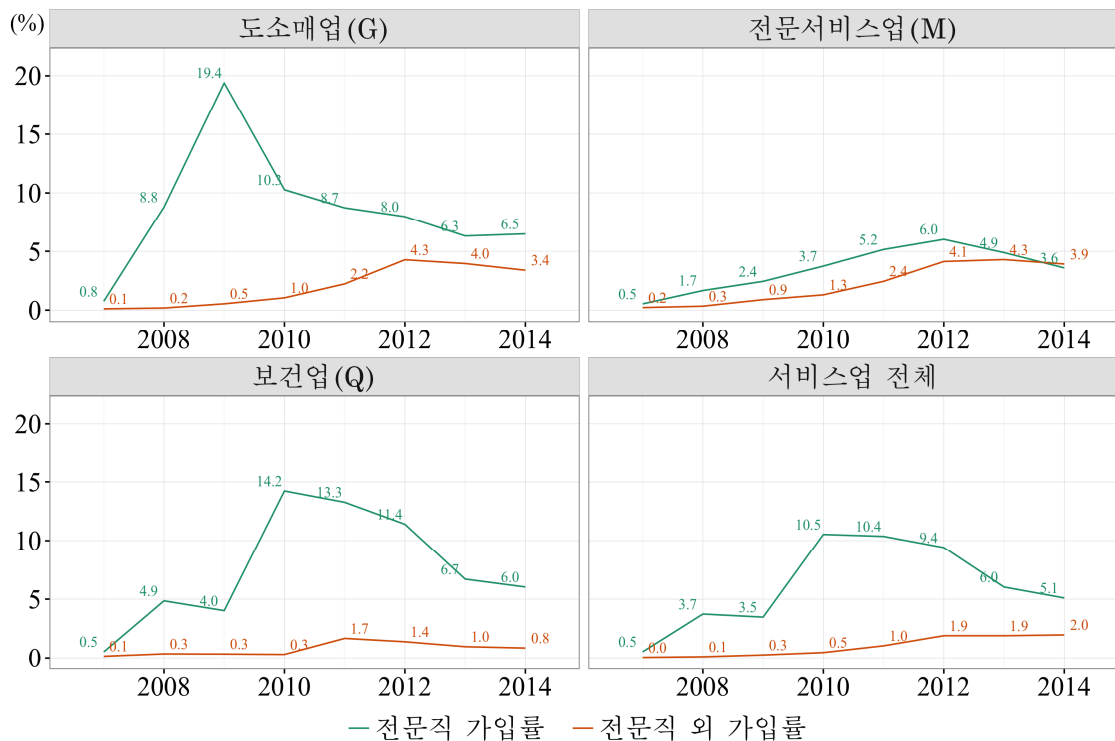
(1) 가입률

- 업종별로 연도별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률을 집계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전문직 가입률은 전문직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가입률보다 높은 수준임
 - 도소매업(G)의 경우 478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사업자의 가입률은 2009년 19.4%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보건업(Q)의 경우에도 86101(종합 병원), 86102(일반병원), 86103(치과 병원), 86104(한방 병원), 86201(일반 의원), 86202(치과 의원), 86203(한의원)의 가입률은 2010 ~ 2012년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보건업의 전문직 사업자 가입률은 하락 추세이나, 2014년 기준 6.0%로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 0.8%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서비스업 전체로는 2014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의 가입률이 5.1%로,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 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업종별 전문직 가입률과 전문직 외 가입률 간의 격차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임

- 전문서비스업(M)의 경우 71101(변호사업), 71102(변리사업), 71103(법무사업), 71201(공인회계사업), 71202(세무사업), 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3100(수의업) 등의 가입률은 2014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서비스업 사업자 가입률을 하회함

[그림 IV-4] 업종별 전문직 신규 가입률



주: 전문직 가입률과 전문직 외 가입률은 각각 해당 업종의 전문직에 대하여 “전문직 가입자 수/전문직 사업체 수” 및 “전문직을 제외한 해당 업종 가입자 수/전문직 사업체를 제외한 해당 업종 총 사업체 수”로 산출. 서비스업 전체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포함하며, 종사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10> 업종별 전문직 신규 가입률

Panel A: 도소매업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문직 가입률	0.8	8.8	19.4	10.3	8.7	8	6.3	6.5
전문직 외 가입률	0.1	0.2	0.5	1	2.2	4.3	4	3.4
Panel B: 전문서비스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문직 가입률	0.5	1.7	2.4	3.7	5.2	6	4.9	3.6
전문직 외 가입률	0.2	0.3	0.9	1.3	2.4	4.1	4.3	3.9
Panel C: 보건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문직 가입률	0.5	4.9	4	14.2	13.3	11.4	6.7	6
전문직 외 가입률	0.1	0.3	0.3	0.3	1.7	1.4	1	0.8
Panel D: 서비스업 전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문직 가입률	0.5	3.7	3.5	10.5	10.4	9.4	6	5.1
전문직 외 가입률	0	0.1	0.3	0.5	1	1.9	1.9	2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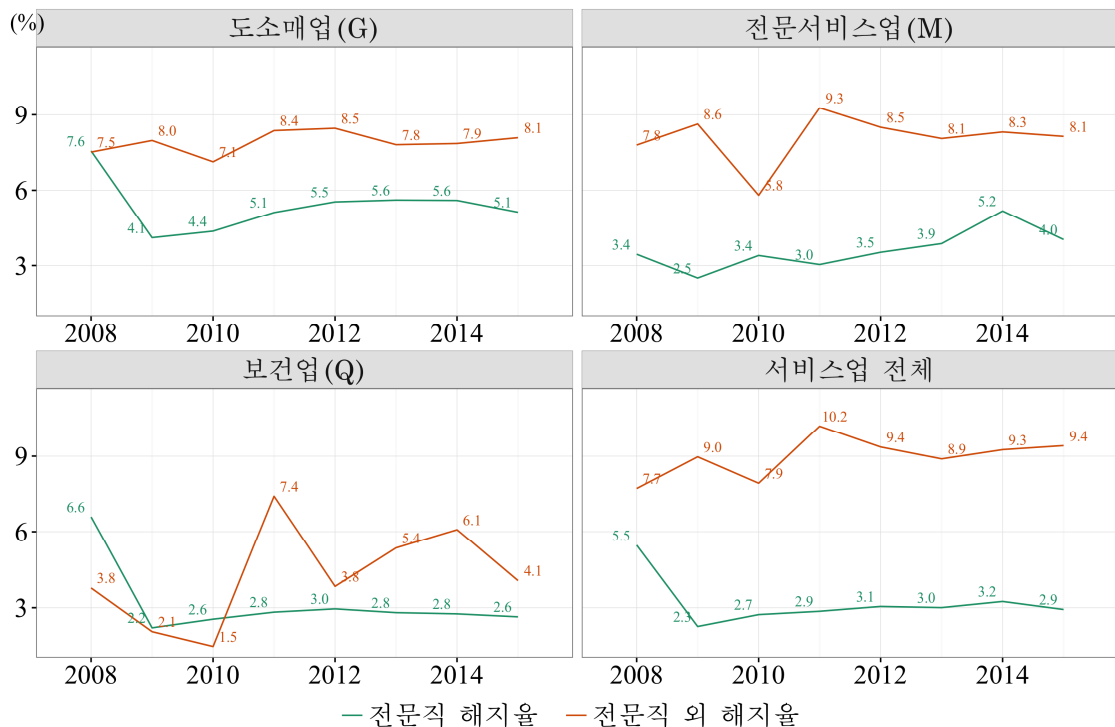
(2) 해지율

- 전기의 재적 가입자 수 대비 당기의 해지 사업자 수 비율인 해지율에서는 업종별로 전문직에 비하여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의 해지율이 높은 편임
 - 도소매업(G)의 경우 478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사업자의 해지율은 5% 수준이나, 여타 사업자의 해지율은 8% 수준임
 - 전문서비스업(M)의 경우 71101(변호사업), 71102(변리사업), 71103(법무사업), 71201(공인회계사업), 71202(세무사업), 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3100(수익업) 등의 해지율은 여타 사업자의 해지율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수준임
 - 2014년의 경우 전문직 해지율은 5.2%, 전문직 외 해지율은 8.3%임

- 보건업(Q)의 경우 초기에는 전문직 해지율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전문직 외 해지율이 전문직 해지율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임
 - 2014년의 경우 전문직 해지율은 2.8%, 전문직 외 해지율은 6.1%
- 서비스업 전체로는 2014년 기준 전문직 해지율이 3.2%에 불과하나, 전문직 외 사업자의 해지율은 9.3%

- 가입자가 폐업, 퇴임, 사망 등의 사유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임의해지율의 경우 두 집단 간 격차는 더욱 큰 편임. 즉, 전문직 외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의해지 빈도가 많음
 - 보건업(Q)의 경우는 두 집단 간 임의해지율의 격차가 크지 않음

[그림 IV-5] 업종별 전문직 해지율



주: 전문직 해지율과 전문직 외 해지율은 각각 해당 업종의 전문직에 대하여 “당기 전문직 해지 사업자 수/전기 전문직 재적 가입자 수” 및 “당기 전문직 제외 해당 업종의 해지 사업자 수/전기 전문직 제외 해당 업종의 총 재적 사업자 수”로 산출. 서비스업 전체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포함함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표 IV-11> 업종별 전문직 해지율

Panel A: 도소매업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문직 해지율	7.6	4.1	4.4	5.1	5.5	5.6	5.6	5.1
전문직 외 해지율	7.5	8	7.1	8.4	8.5	7.8	7.9	8.1
Panel B: 전문 서비스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문직 해지율	3.4	2.5	3.4	3	3.5	3.9	5.2	4
전문직 외 해지율	7.8	8.6	5.8	9.3	8.5	8.1	8.3	8.1
Panel C: 보건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문직 해지율	6.6	2.2	2.6	2.8	3	2.8	2.8	2.6
전문직 외 해지율	3.8	2.1	1.5	7.4	3.8	5.4	6.1	4.1
Panel D: 서비스업 전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문직 해지율	5.5	2.3	2.7	2.9	3.1	3	3.2	2.9
전문직 외 해지율	7.7	9	7.9	10.2	9.4	8.9	9.3	9.4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3) 소결

- 업종별 전문직의 가입률은 전문직 외 사업자 가입률과 비교하여 더 높은 반면, 전문직의 해지율은 전문직 외 사업자 해지율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 조세지출의 수혜가 전문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직의 신규 가입률이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해지율의 현격한 차이는 전문직 중심의 수혜 고착화를 의미함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상 위험 및 퇴직소득 보장이라는 노란우산공제의 본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한편,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하여 조세지출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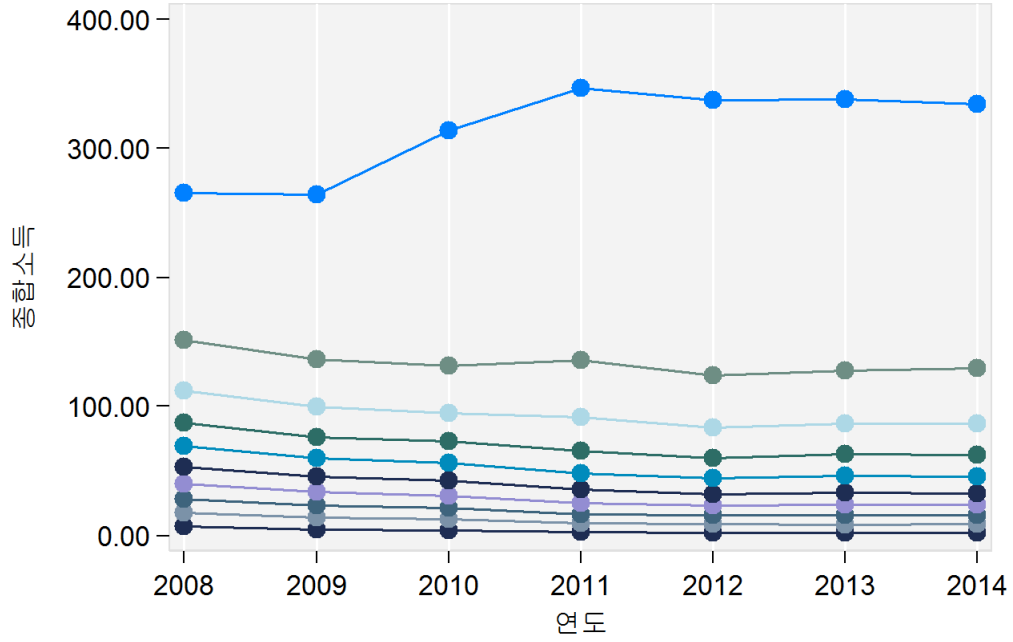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섯자리 체계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하였으나, 추후 가입 및 조세지출의 제한을 부과할 경우 업종별·직업별 평균 소득의 추정을 포함하여 객관적이며 실증적 근거에 따른 명확하고 엄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나.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한 형평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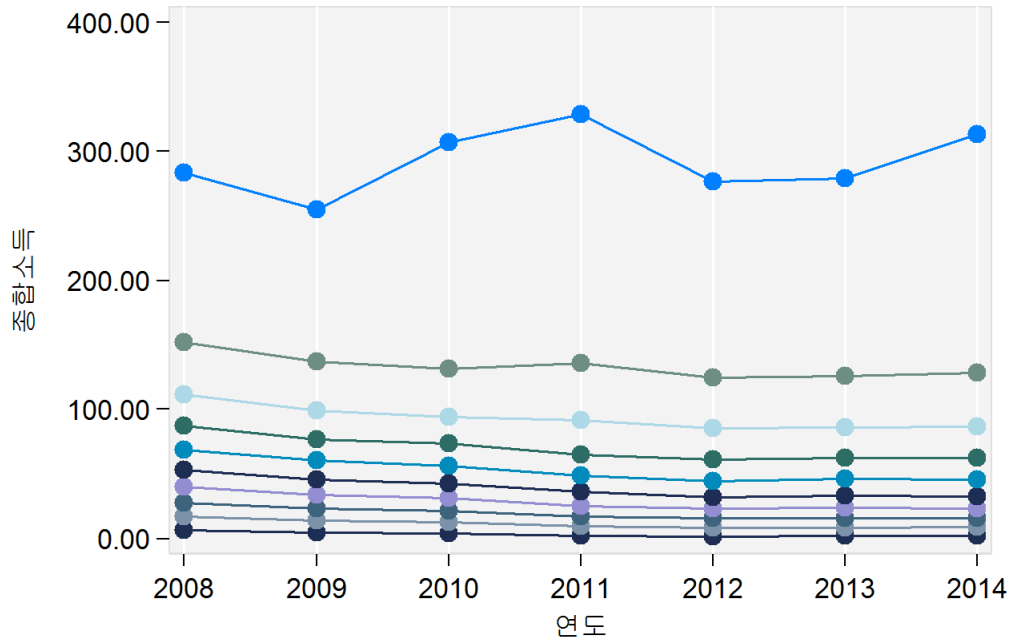
- 국세청 자료를 종합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연도별 10분위로 구분하여 중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음
 - 연도별 10분위로 구분하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10분위로 구분하였음
- 노란우산공제를 신청한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분위별, 연도별로 정리한 패턴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예컨대, 1분위의 경우 2008년에 672만원을 신고하였고 2014년에는 206만원을 신고하였음
 - 반면 10분위의 경우, 2008년에 2억 8,371만원을 신고하였고 2014년에는 3억 1,349만원을 신고하였음
 - 대부분의 소득 분위가 과거 2008년~2014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감소하였지만, 10분위만 유일하게 2008년 대비 증가하였음

[그림 IV-6] 소득분위별 종합소득의 변화

(단위: 백만원)



(a) 전체



(b)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년)

<표 IV-12> 분위별 종합소득의 변화

(단위: 백만원)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Panel A: 전체										
2008	7.25	17.6	28.35	40.11	52.88	68.95	87.2	111.7	151.16	265.74
2009	4.76	13.83	23.24	33.67	45.92	60.06	76.11	99.54	136.3	264.5
2010	4.17	12.98	21.56	31.12	42.4	56.43	73.13	94.34	130.99	314.13
2011	2.67	9.48	16.69	25.39	35.93	48.32	65.6	91.78	135.8	346.98
2012	2.16	8.92	16.07	23.19	32.34	44.56	60.22	83.44	123.73	337.32
2013	2.18	8.76	16.22	23.82	33.53	46.42	63.16	86.67	127.28	337.95
2014	2.52	8.88	15.89	23.7	32.83	45.86	62.57	86.43	129.29	334.52
Panel B: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008	6.72	17.17	27.85	40.19	53.39	68.76	87.02	111.3	151.83	283.71
2009	4.89	14.15	23.28	33.86	45.69	60.5	76.87	98.92	136.66	255.3
2010	4.43	13.03	21.57	31.18	42.44	56.21	73.52	94.02	131.21	307.2
2011	2.34	9.59	16.95	25.43	36.18	48.73	65.08	91.57	135.73	329.08
2012	1.9	8.77	15.94	23.2	32.07	44.2	61	85.07	124.19	276.56
2013	2.06	8.81	15.92	23.7	33.46	46.18	62.55	85.65	125.68	279.48
2014	2.06	8.84	16.07	23.45	32.96	45.78	62.53	86.36	128.32	31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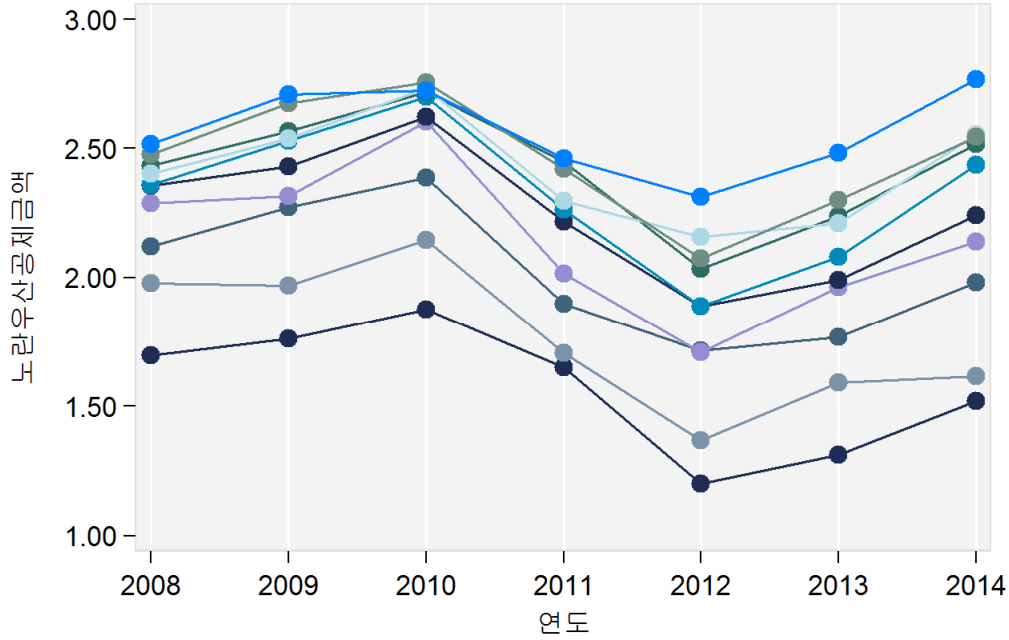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

- [그림 IV-7]은 소득분위별 노란우산공제 금액((a))과 공제혜택((b))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1분위의 2008년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약 170만원 정도였다가, 2014년 152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1분위와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감소하고 있었음
 - 6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었음
 - 특히, 10분위는 평균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2008년 252만원에서 2014년 277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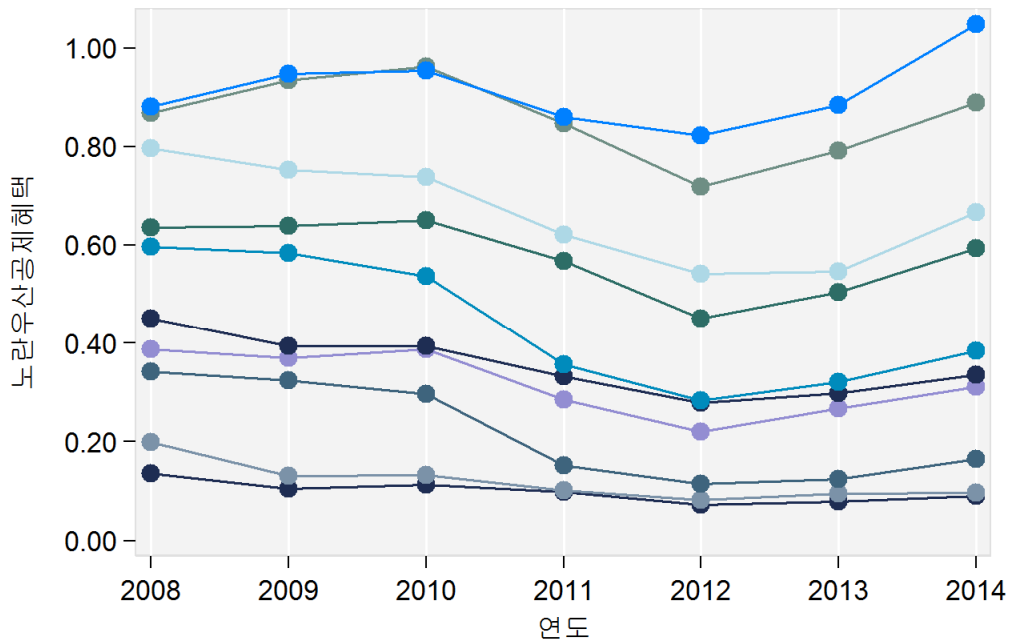
- 한계세율을 이용하여 구한 공제혜택 규모의 소득분위별 시계열적 변화는 [그림 IV-7]의 (b)에 제시되어 있음
 - 소득 1분위의 경우 2008년 약 14만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노란우산공제 금액의 감소로 2014년에는 9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소득 2분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2008년 20만원에서 2014년 10만원으로 50% 정도 감소하였음
 - 소득 3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다른 소득 분위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혜택은 감소하고 있음
 - 소득 9분위와 10분위만 개선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소득 10분위는 2008년 88만원 혜택에서 2014년 105만원으로 17만원 증가하였음

[그림 IV-7] 분위별 노란우산공제 금액/혜택의 변화

(단위: 백만원)



(a) 노란우산공제 금액



(b) 노란우산공제 혜택

주: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해당 연도와 소득구간의 한계세율과 노란우산소득공제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년)

<표 IV-13> 분위별 노란우산공제 금액/혜택의 변화

(단위: 백만원)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Panel A: 노란우산공제 금액										
2008	1.7	1.98	2.12	2.29	2.36	2.36	2.43	2.4	2.48	2.52
2009	1.76	1.97	2.27	2.32	2.43	2.53	2.57	2.54	2.67	2.71
2010	1.88	2.15	2.39	2.6	2.62	2.7	2.72	2.74	2.76	2.72
2011	1.65	1.7	1.9	2.01	2.22	2.26	2.45	2.3	2.42	2.46
2012	1.2	1.37	1.71	1.71	1.89	1.89	2.03	2.16	2.08	2.31
2013	1.31	1.59	1.77	1.96	1.99	2.08	2.24	2.21	2.3	2.48
2014	1.52	1.61	1.98	2.14	2.24	2.44	2.52	2.55	2.55	2.77
Panel B: 노란우산공제 혜택										
2008	0.14	0.2	0.34	0.39	0.45	0.6	0.64	0.8	0.87	0.88
2009	0.11	0.13	0.32	0.37	0.39	0.58	0.64	0.75	0.93	0.95
2010	0.11	0.13	0.3	0.39	0.39	0.54	0.65	0.74	0.96	0.95
2011	0.1	0.1	0.15	0.28	0.33	0.36	0.57	0.62	0.85	0.86
2012	0.07	0.08	0.12	0.22	0.28	0.28	0.45	0.54	0.72	0.82
2013	0.08	0.1	0.12	0.27	0.3	0.32	0.5	0.55	0.79	0.88
2014	0.09	0.1	0.17	0.31	0.34	0.38	0.59	0.67	0.89	1.05

주: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해당 연도와 소득구간의 한계세율과 노란우산소득공제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년)

- 앞의 분석에서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이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반면에 하위 분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도 기준, 1분위 대비 10분위 혜택의 배수는 6배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 2014년도에는, 1분위 대비 10분위 혜택의 배수가 10배를 상회하고 있어 노란우산소득공제의 혜택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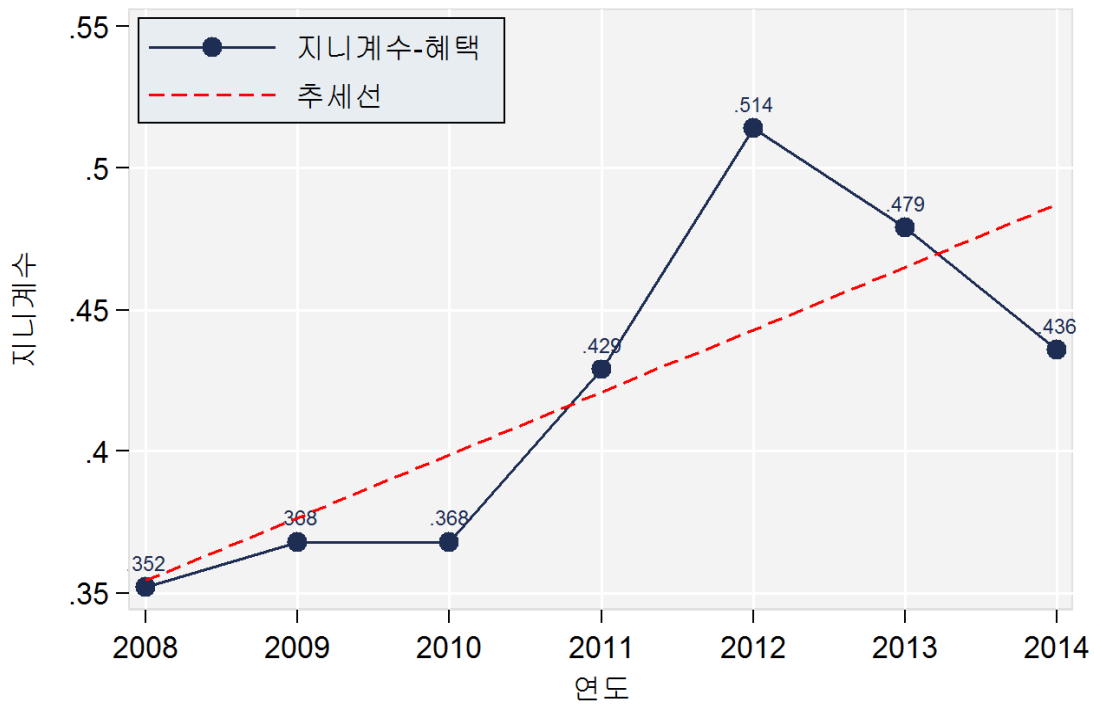
□ 이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s)가 [그림 IV-8]에 제시되어 있음

□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의 지니계수가 2008년에는 0.352이었는데, 점차 고소득 자영업자의 가입이 증가하면서 그 혜택의 불평등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2012년도는 예외적으로 높았음

○ 2014년도의 지니계수는 0.436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임(추세선)

[그림 IV-8]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지니계수



주: 추세선은 선형 추세선을 이용하였음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년)

〈표 IV-14〉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지니계수

연도	지니계수
2008	0.352
2009	0.368
2010	0.368
2011	0.429
2012	0.514
2013	0.479
2014	0.436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년)

V.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V.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1. 소득공제제도가 공제 가입에 미치는 효과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납세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음
 - 종합소득이 10%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능성은 3.4%p 높았음
 - 반면,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 혜택의 규모가 클수록 가입금액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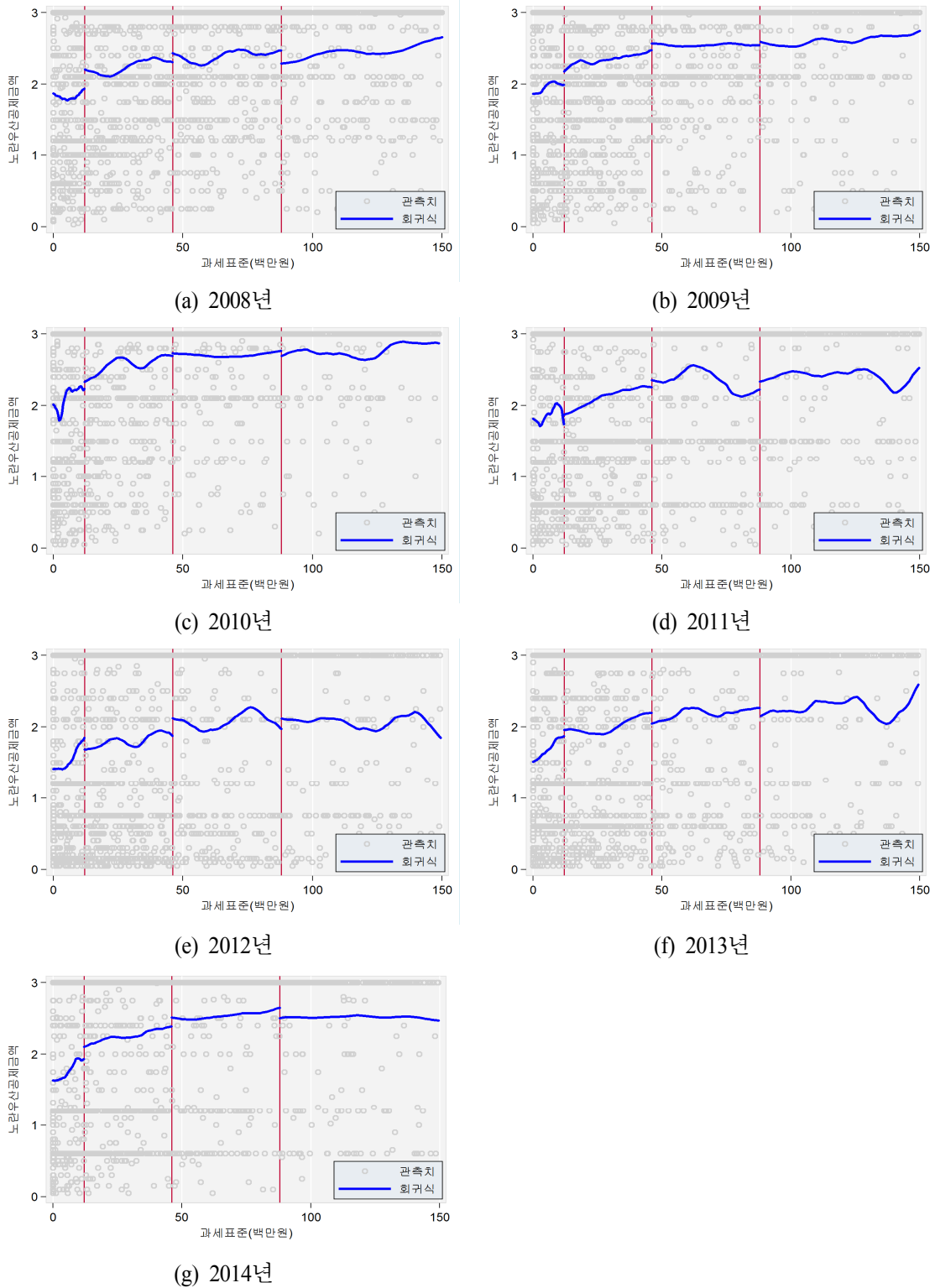
- 동시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금액이 증가할 때, 연금저축 등의 공제금액도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가. 국세청 자료로부터의 증거

- [그림 V-1]은 연도별 과세표준과 한계세율이 변하는 소득구간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나타낸 것임

-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을 넘어설 때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여, 1만원 공제로 인한 혜택 역시 불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 소득 구간 경계의 왼쪽과 오른쪽의 공제의 혜택은 불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 아래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경계구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이 불연속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있다면
 -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인 자영업자들이 조세 유인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간접적인 증거임

[그림 V-1] 연도별 과세표준과 노란우산공제금액



주: 붉은 실선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율 구간을 나타냄. 회귀선은 local polynomial을 이용하여 비모수적으로 추정하였음.

출처: 국세청 자료(2008~2014년)

- [그림 V-1]에 따르면,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과세표준 소득세 구간의 경계선에서 노란우산공제 금액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불연속적 증가 혹은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음

- 앞의 [그림 V-1]로부터 최소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종합소득 신고자들은 조세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남은 작업은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임

-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가설을 통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려고 함
 - 1단계: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 2단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에서 혜택이 클수록 노란우산공제 액수가 증가하는가?

- 위의 가설 중 1단계는 이른바 외적 한계(extensive margin)에 관한 것이고, 2단계는 내적 한계(intensive margin)에 관한 것임

- 1단계 검정을 위해서 종속변수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로 하고 결정요인으로 로그-종합소득(모형(1))과 로그-총공제액(모형(2))을 포함하여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추정하였음
 -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시켰음(모형(3))

$$y_{i,t} = 1\{\beta_0 + \beta^{TB}TB_{i,t} + \beta^{CI}CI_{i,t} + \nu_t + \epsilon_{i,t} \geq 0\}, \epsilon_{i,t} \sim N(0, \sigma^2)$$
 - 여기에서 y 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B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금액, CI는 종합소득, ν_t 는 연도별 고정효과, ϵ 는 IID 오차항임

- <표 V-1>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높을수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하지만, 공제금액이 늘어날수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공제금액이 많다는 것은 추가적인 공제로부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³¹⁾

〈표 V-1〉 노란우산공제 가입 결정요인(프로빗 모형)

	종속변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1)	(2)	(3)
ln(종합소득)	0.014** (0.006)	0.081*** (0.007)	0.088*** (0.007)
ln(공제금액)		-0.328*** (0.015)	-0.384*** (0.016)
상수	-0.053** (0.023)	0.390*** (0.031)	0.586*** (0.040)
연도 고정효과			Yes
관측치	34,123	34,121	34,121

주: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되었음. *** p<0.01, ** p<0.05, * p<0.1

- 2단계 검정을 위한 실증모형으로 종속변수는 로그 변환된 노란우산공제 신청 금액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로그 변환된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로그 변환된 종합소득을 사용하였음
 - 경기변동에 따른 노란우산공제금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고정효과를 포함시켰음

$$\ln(y_{i,t}) = \beta_0 + \beta^{TB} \ln(TB_{i,t}) + \beta^{CI} \ln(CI_{i,t}) + \nu_t + \epsilon_{i,t}$$

- 여기에서 y 는 노란우산공제 금액, TB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금액, CI는 종합소득, ν_t 는 연도별 고정효과, ϵ 는 IID 오차항임

31) 총공제금액에서 노란우산공제금액을 제하고 추정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됨

□ 위 회귀분석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V-2>에 제시되어 있음

□ 추정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많을수록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통제변수인 종합소득이 늘어날 때, 노란우산공제 부금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현황과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로부터의 세제 혜택을 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을 로그-종합소득에 회귀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표 V-2>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노란우산공제금액			
	(1)	(2)	(3)
ln(노란우산공제 혜택)	0.613*** (0.003)	0.913*** (0.002)	0.912*** (0.002)
ln(종합소득)		-0.431*** (0.002)	-0.429*** (0.002)
상수	1.324*** (0.005)	3.294*** (0.011)	3.226*** (0.012)
연도 고정효과			Yes
관측수	17,500	17,029	17,029
R ²	0.727	0.911	0.912

주: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되었음. *** p<0.01, ** p<0.05, * p<0.1

□ 하지만 이상의 결과는 1) 외적한계와 내적한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2) 노란우산공제 부금이 연간 300만원이 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제도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위의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토빗모형(tobit model)을 추정하였음

- 하한은 0, 상한은 300만원으로 토빗모형을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y_{i,t}^* = \beta_0 + \beta^{TB} TB_{i,t} + \beta^{CI} CI_{i,t} + \beta^{DE} DE_{i,t} + \nu_t + e_{i,t}$$

$$y_{i,t} = \begin{cases} 0 & , \text{if } i \text{ 가 비가입자} \\ y_{i,t}^* & , \text{if } y_{i,t}^* < 300 \\ 300 & , \text{if } y_{i,t}^* \geq 300 \end{cases}$$

- 여기에서 y 는 노란우산공제 금액, TB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금액, CI는 종합소득, DE는 총공제금액, ν_t 는 연도별 고정효과, ϵ 는 IID 오차항임

□ <표 V-3>에 제시된 추정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크기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크게 추정되었음

<표 V-3> 토빗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노란우산공제 금액		
	(1)	(2)	(3)
ln(노란우산공제 혜택)	1.033*** (0.008)	1.335*** (0.009)	1.276*** (0.009)
ln(종합소득)		-0.556*** (0.008)	-0.596*** (0.008)
ln(공제금액)			0.505*** (0.017)
상수	4.046*** (0.017)	6.366*** (0.042)	4.961*** (0.055)
σ	1.023*** (0.009)	0.815*** (0.007)	0.764*** (0.007)
연도 고정효과			Yes
관측치	17,500	17,029	17,028

주: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되었음. *** p<0.01, ** p<0.05, * p<0.1

- 남은 문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저축이 감소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임(김병권 외, 2013)
 - 즉, 다른 사적 저축이 노란우산공제부금이 증가하면서 구축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는 공제금액, 설명변수로는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설정하고 회귀분석하였음
 - 통제변수로는 로그-종합소득과 연도별 고정효과를 사용하였음

- 추정결과에 따르면(<표 V-4> 참조), 종합소득이 동일한 사람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이 10만원 늘 때, 총공제금액은 11만 3천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모형 (2))

- 이러한 추정결과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저축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금저축과 투자조합출자금 정도이었음
 - 투자조합출자금의 공제규모가 작고 변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관련한 공제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증가할 때 연금저축에 대한 저축도 상호 작용하며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V-4> 회귀분석 추정결과

	종속변수: ln(공제금액)	
	(1)	(2)
ln(노란우산공제 금액)	1.703*** (0.051)	1.129*** (0.053)
ln(종합소득)		1.656*** (0.046)
상수	7.880*** (0.178)	2.664*** (0.230)
연도 고정효과		(0.003)
관측치	17,500	17,029
R2	0.096	0.157

주: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되었음. *** p<0.01, ** p<0.05, * p<0.1

나. 설문자료로부터의 증거

(1) 가입에 미친 영향

- “계속 가입”, “해지 후 재가입”, “해지 후 미가입”, “계속 미가입” 등 4개 그룹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에 미친 영향을 설문한 결과, 가입자의 경우 상당수가 소득공제가 효과를 미쳤다고 응답한 반면, 미가입자의 경우 일부만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계속 가입자의 경우 74.7%가 소득공제가 가입이나 가입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계속 미가입자의 경우 49.2%는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7.3%는 효과가 없다고 답변함
- 이 같은 결과는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기대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상당수가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효과 수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은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 또는 가입했다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음 괄호 항목에서 소득공제의 인지와 소득공제의 가입 간의 관계를 좀더 직접적으로 조사함

<표 V-5>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가입유지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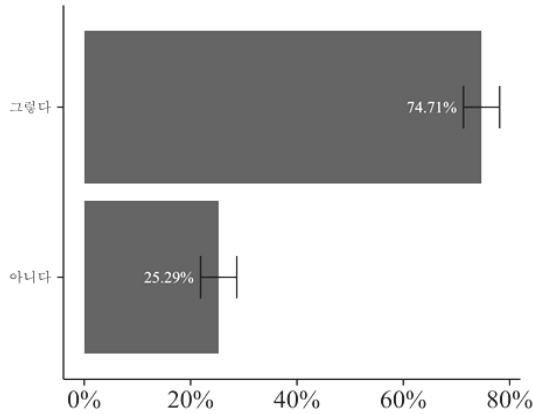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구분		응답률	표준오차	문항 응답수	응답자수	
A	1	그렇다	74.71	1.74	274	415
A	2	아니다	25.29	1.74	141	415
B	1	그렇다	59.48	0	6	6
D	1	그렇다	49.25	4.45	43	99
D	2	아니다	47.28	4.16	53	99
D	9	모름/무응답	3.48	2.13	3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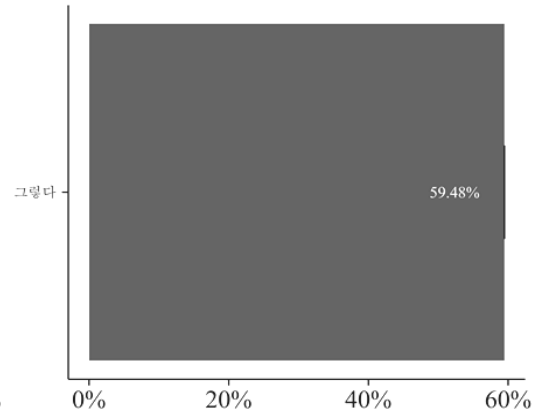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V-2]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가입유지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A. 과거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하였다
(N =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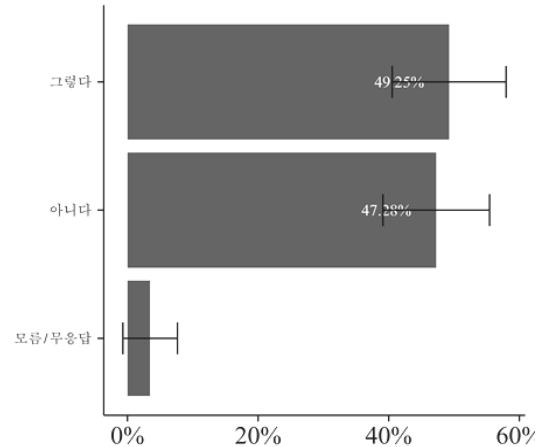
B.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적 있고, 다시
재가입하였다 (N = 6)



C.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 (N = 유효응답 없음)

그림 없음

D.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다 (N = 99)



주: 1. 그림에서 막대 끝의 좌우 구간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표현한 것임
2.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소득공제의 인지와 가입 간의 관계

1. 미가입자의 경우

-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아래 그림의 A), 소득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나 알게 될 경우(B),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C) 등 세 경우로 설문한 결과, 미가입자는 소득공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득공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제금 납부 부담”이 42.7%로 가장 크며, “소득공제 혜택의 부족”이나 “소득 과소로 공제 효과 미흡” 등의 응답은 작은 편임
 - 소득공제에 대해 알게 될 경우 가입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3.7%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가입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95.6%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 이 같은 결과는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부족보다는 당장 공제금을 납입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미가입의 가장 큰 요인임을 시사함(A)
-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가입하겠다는 의사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B)
 - 당장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공제에 가입할 만큼 재정적 여건이 호전될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함(C)

<표 V-6> 미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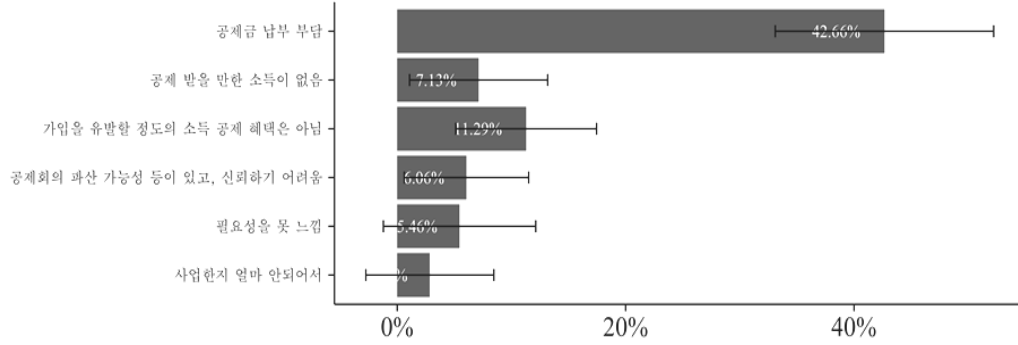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구분			응답률	표준오차	문항 응답수	응답자수
A	1	공제금 납부 부담	42.66	4.88	19	40
A	2	공제받을 만한 소득이 없음	7.13	3.08	5	40
A	3	가입을 유발할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아님	11.29	3.15	8	40
A	4	공제회 파산 가능성 등이 있고, 신뢰하기 어려움	6.06	2.78	4	40
A	6	필요성을 못 느낌	5.46	3.4	3	40
A	7	사업한지 얼마 안되어서	2.86	2.86	1	40
B	1	그렇다	26.28	7.87	8	59
B	2	아니다	73.72	7.87	51	59
C	1	그렇다	4.43	3.41	2	59
C	2	아니다	95.57	3.41	5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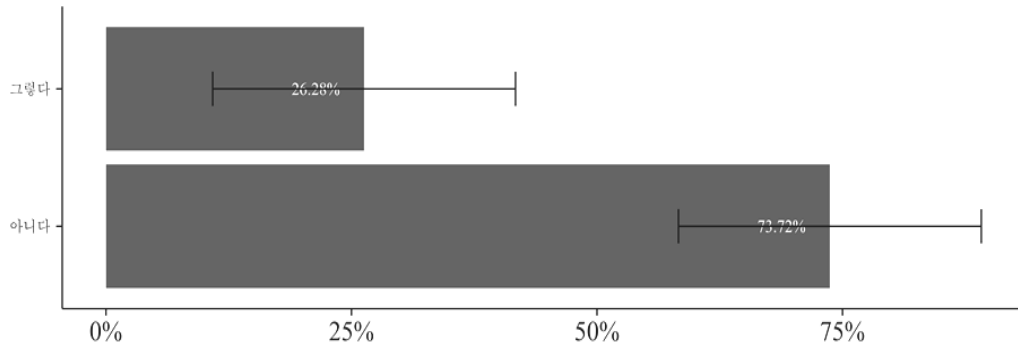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V-3] 미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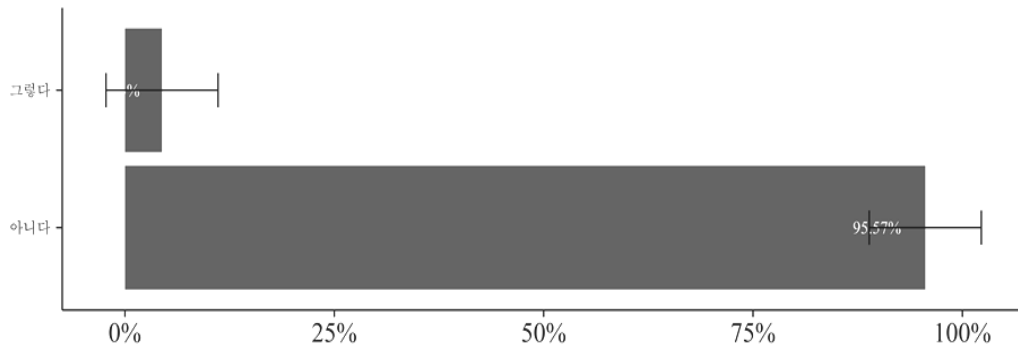
A.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 (N = 40)



B. 소득공제에 대해 알게 될 경우 가입 의사 (N = 59)



C.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가입 의사 (N = 59)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그림에서 막대 끝의 좌우 구간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표현한 것임

2. 가입자의 경우

-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아래 그림의 A),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가입자에게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했을지를 질문한 경우(B), 소득공제를 몰랐던 경우(C) 등 세 경우로 설문한 결과, 가입자는 소득공제 때문에 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를 알고 있었던 경우 소득공제에 때문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84%이며,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72.2%임
 - 소득공제 혜택을 몰랐는데도 가입한 경우는 가입자 중 응답자가 5명에 불과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함
- 이 같은 결과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효과에 대해 가입자는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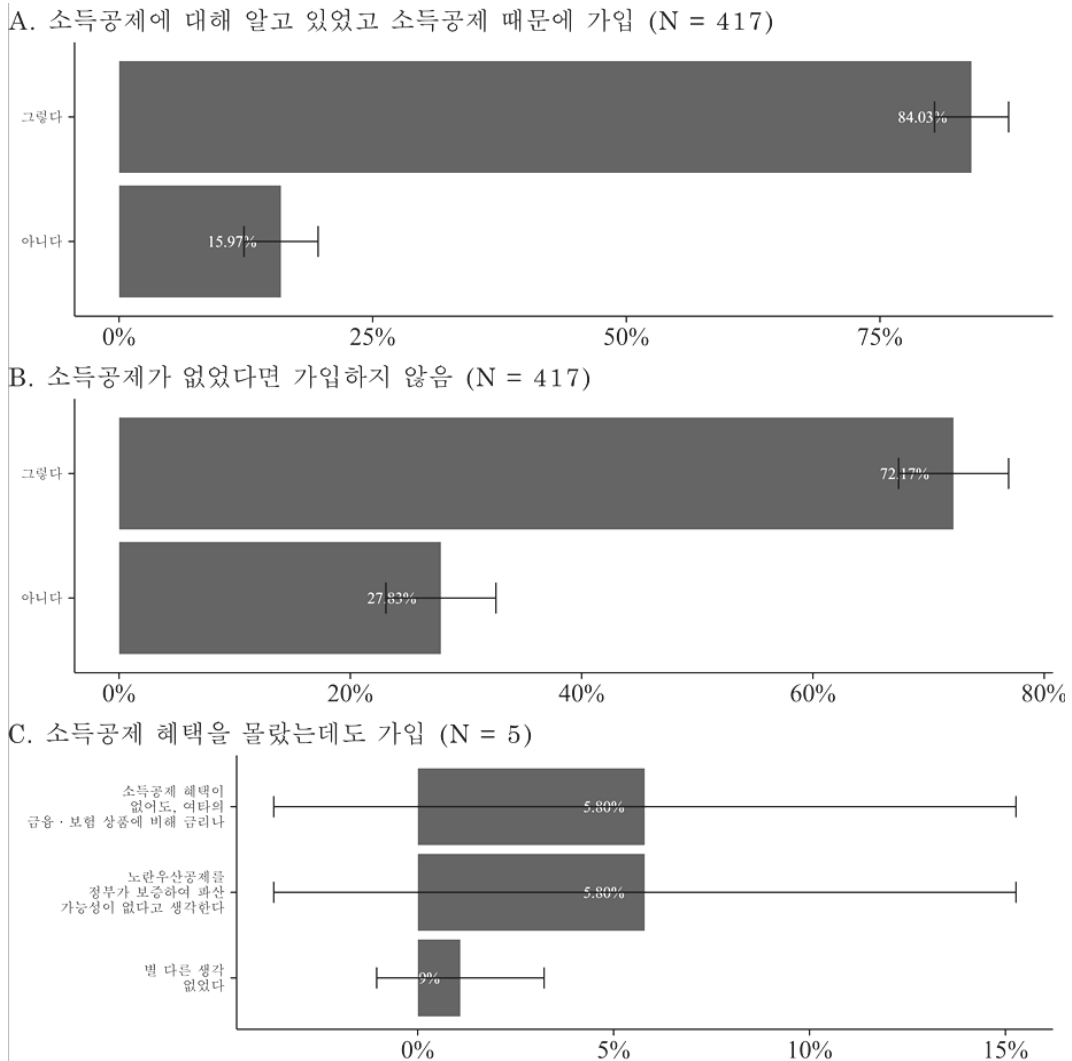
<표 V-7> 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단위: %, 건, 명)

구분		응답률	표준오차	문항 응답수	응답자수	
A	1	그렇다	84.03	1.86	337	417
	2	아니다	15.97	1.86	80	417
B	1	그렇다	72.17	2.43	296	417
	2	아니다	27.83	2.43	121	417
C	2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도, 여타의 금융·보험 상품에 비해 금리나 보험료가 저렴하다	5.80	4.83	2	5
	3	노란우산공제를 정부가 보증하여 파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5.80	4.83	2	5
	4	별 다른 생각 없었다	1.09	1.09	1	5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V-4] 가입자의 소득공제 인지와 기대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공제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2007년 최초로 시행되어 아직 10년이 되지 못해 공제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직접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임
- 평균 가입기간은 7.4년 정도(우측절단 고려)이고
- 30% 정도는 비교적 일찍 가입해지를 하고, 70%는 계약을 지속하고 있어
- 제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지 사유 중 노령의 조건을 만족시킬 가입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노란우산공제제도와 노후소득보장 간의 관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음
- “과거 가입하여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와 “과거 가입하여 해지 후 재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폐업” 및 “노령”, “퇴임”에 대한 대비라고 응답한 비중이 큼([그림 V-5] 참조)
 -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85.87%는 노란우산공제의 도입 취지인 폐업, 노령, 사망, 퇴임 대비 때문에 가입한다고 응답함
- 노령 대비가 25.1%, 퇴임(은퇴) 대비를 가입목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26.79%으로 두 문항의 합은 50%를 상회함
-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적어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있어서는 “폐업”을 포함하여 “노령”, “퇴임”과 같은 위험보장이 주된 가입 목적임을 시사함

<표 V-8>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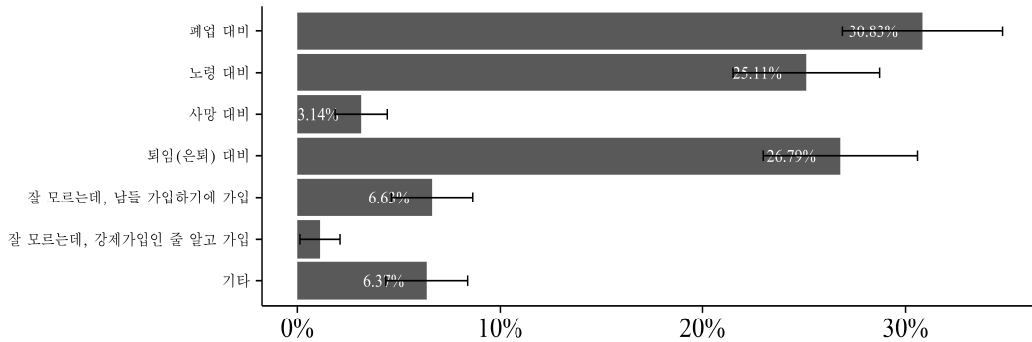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구분		응답률	표준오차	문항 응답수	응답자수	
A	1	폐업 대비	30.83	2.01	204	744
	2	노령 대비	25.11	1.84	192	744
	3	사망 대비	3.14	0.66	28	744
	4	퇴임(은퇴) 대비	26.79	1.94	187	744
	5	잘 모르는데, 남들 가입하기에 가입	6.63	1.02	51	744
	6	잘 모르는데, 강제가입인 줄 알고 가입	1.12	0.50	6	744
	7	기타	6.37	1.03	48	744
B	1	사업 중단이나 정리에 대한 대비	15.65	12.9	2	19
	2	사망 후 유가족 생계에 대한 대비	5.66	4.03	2	19
	3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37.55	12.52	3	19
	4	비교적 높은 금리	5.66	4.03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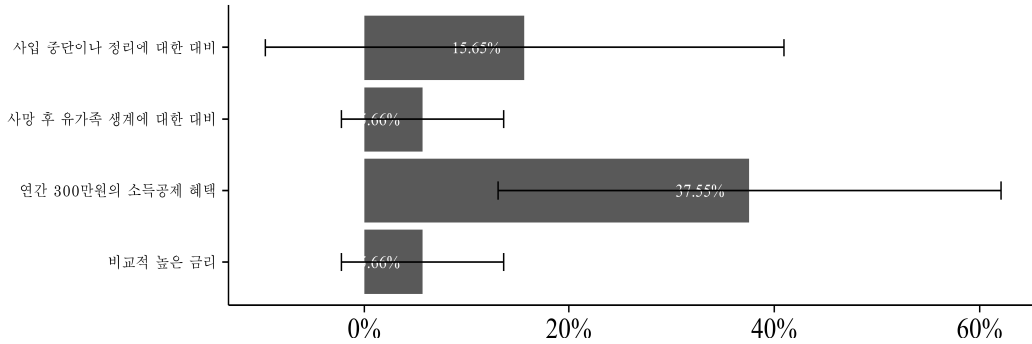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V-5]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목적

A. 과거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하였다 (N = 744)



B.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적 있고, 다시 재가입하였다 (N = 19)



주: 1. 그림에서 막대 끝의 좌우 구간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표현한 것임
 2.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효율성 평가

가. 논리적 평가

-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1) 조세지출이 기간별로 얼마나 소비 결정을 왜곡하는지에 대한 정도(시점)와 2)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좀 더 작은 비용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규모)에 근거하여 판단해볼 수 있음
- 해당 조세지출이 가계 의사 결정에 있어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얼마나 발생시키며
-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임

- 먼저,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EET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정규 이자(normal interest)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출세라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본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방식은 시점 중립적인 세제가 아니고
 - 개인이 언제 얼마나 소비 및 저축을 하고, 얼마나 노동공급을 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소지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퇴직)소득세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EET 방식은 생애주기 소득은 동일하나 소득의 변동성이 근로소득자보다 큰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생애주기의 효용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교육수준 혹은 금융 문해력이 높은 편이 아니거나, 차입계약에 처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생애주기 효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자각이 생겨 연금저축 등의 사적 연금에 대한 가입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설문을 이용한 평가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인식 여부와 제도 변화시 가입 지속(가입자)과 가입(미가입자) 등의 행태 변화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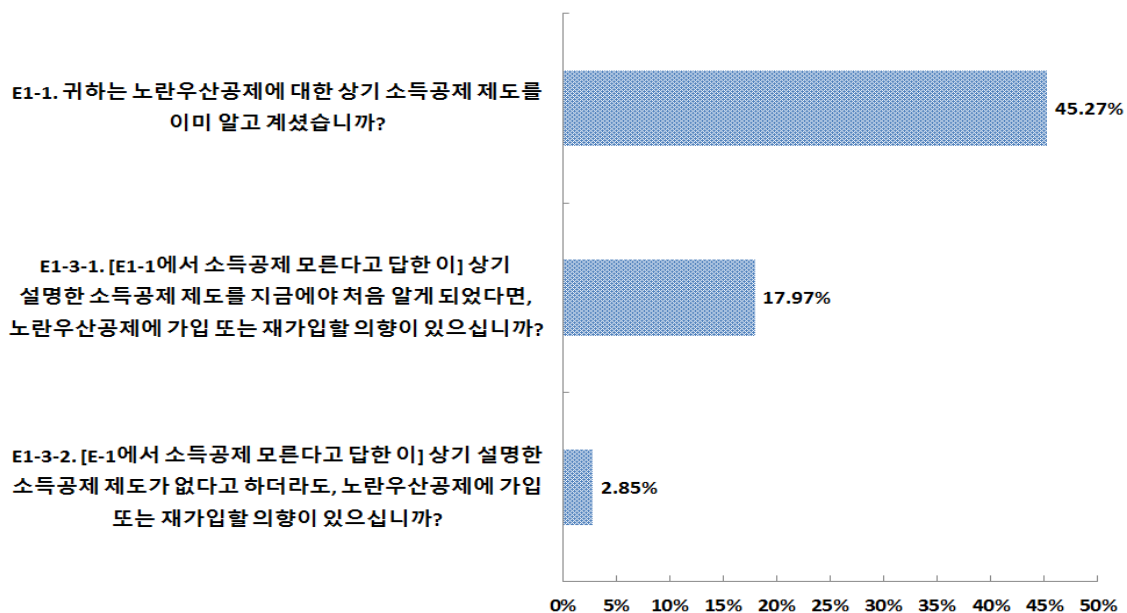
-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1) 아주 잘 알고 있었고(99%), 2) 소득공제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84%) 답변하였음
 - 반면 미가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45%에 그치고 있었음
 - 이중 18% 정도만이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
 - 노란우산공제 미가입자의 미가입 이유가 단순히 홍보부족 문제 때문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변화, 예컨대 소득공제가 없었을 때의 가입 여부와 공제 한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입자의 72%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하였음
 - 또한 67% 정도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를 늘리면 공제부금 납부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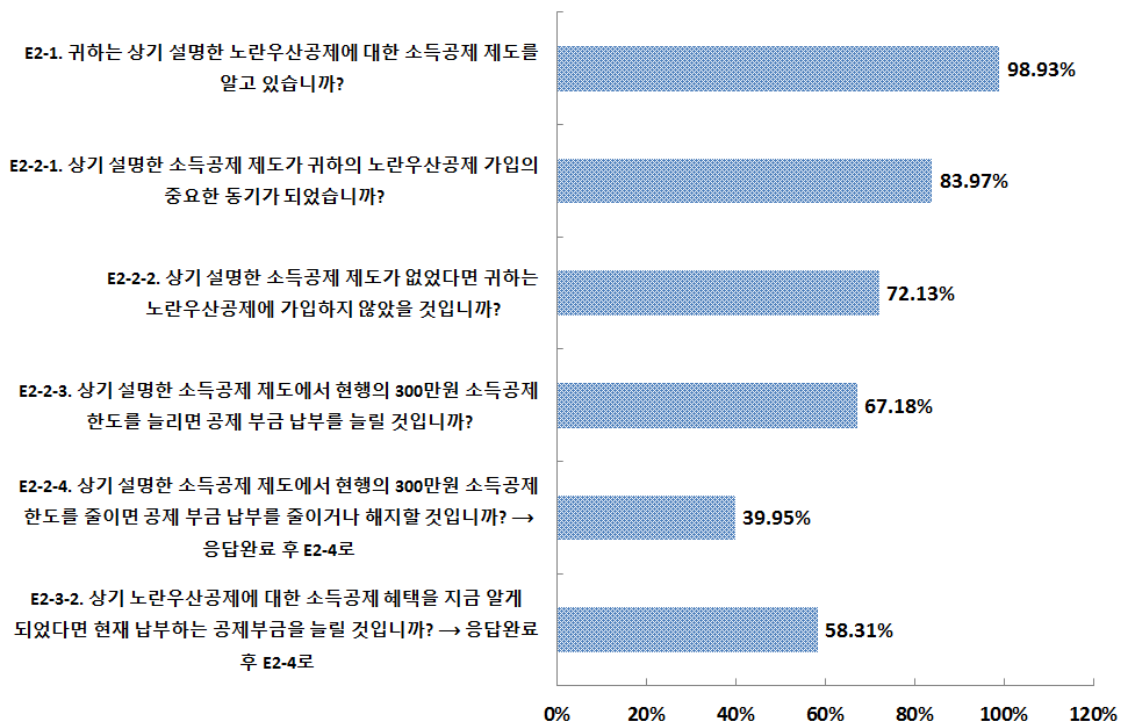
- 위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조세지출이 공제가입 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점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조세지출을 통해 세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 궁극적으로는 사중손실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또한, 가입자들 같은 경우 소득공제가 없어도 가입했을 사람들이 조세지출을 통해 횡재를 하는 이른바 횡재효과(windfall effect)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V-6]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가입 의향을 묻는 주요 문항에 대한 답변 (미가입자)



[그림 V-7]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가입 의향을 묻는 주요 문항에 대한 답변(가입자)



- 위의 분석을 공제부금의 규모별로 나누어 좀 더 살펴보았음
 -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 더 나아가서 공제부금을 현재 제도하에서 최고액인 월 25만원 이하 납부하는 가입자와 25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가입자로 구분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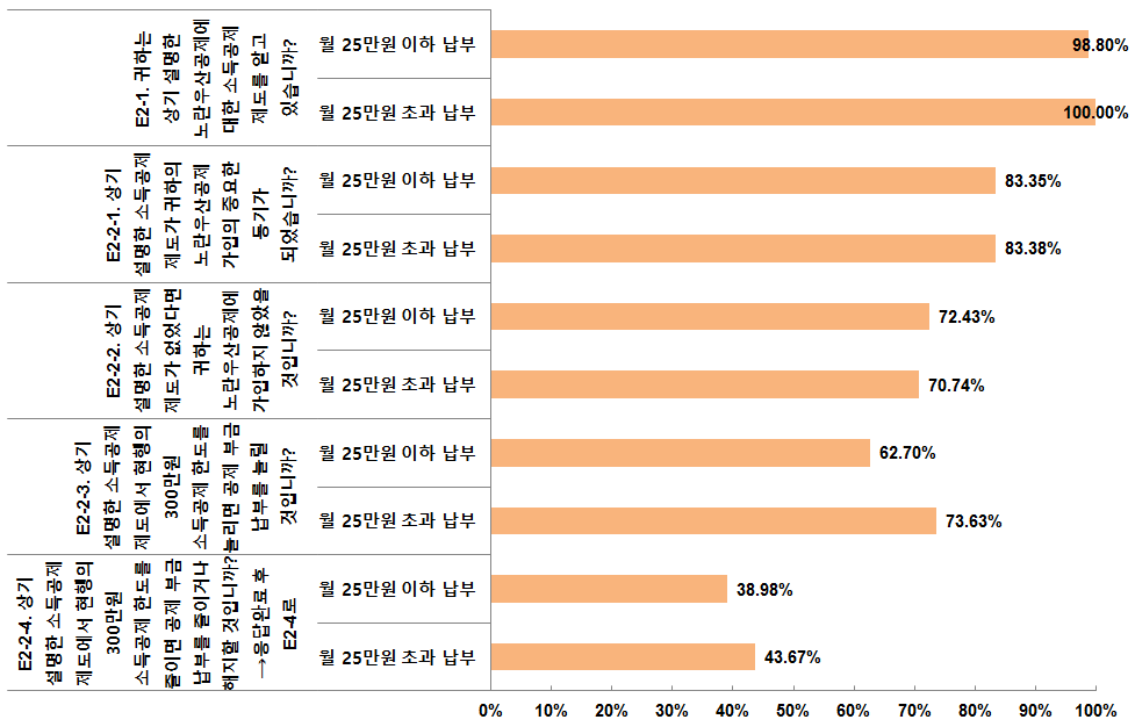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자 중 소득공제에 대한 인지도는 월 납부금 규모와 무관하게 100%에 가까움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자는 월 납부금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가입 동기가 되었음: (약 83%가 그렇다고 답변)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자는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문항에 대해서 약 70~7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월 납부금 규모에 따른 차이는 미미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자는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 공제 부금을 늘리겠냐는 문항에 대해서 월 25만원 초과 납부하는 집단은 약 7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월 25만원 이하 납부하는 집단은 약 63%가 그렇다고 답변
 - 어느 집단이나 그러한 의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됨
 - 뒤에서 살펴볼 소기업과 양상이 반대임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가입자는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 축소에 대해서 공제 부금을 줄이겠냐는 문항에 대해서 월 25만원 초과 납부하는 집단은 약 44%, 월 25만원 이하 납부하는 집단은 약 39%가 그렇다고 답변함
 - 역시 확대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그림 V-8] 가입자의 소득공제에 따른 가입 의사에 대한 분석 -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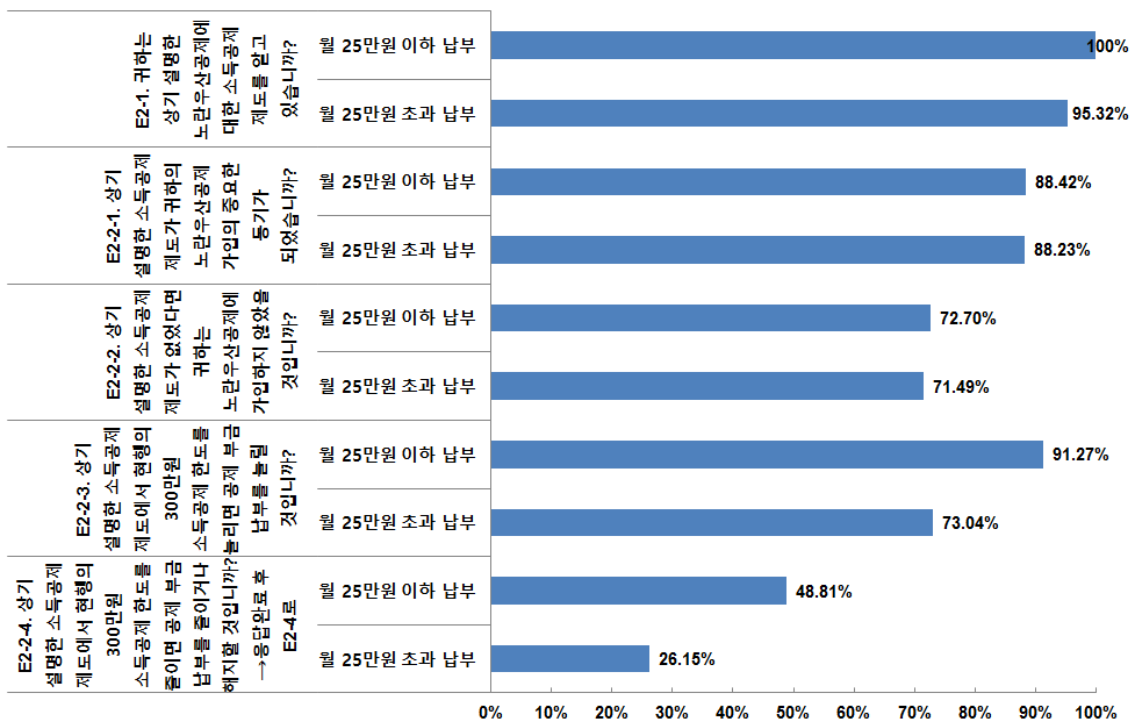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가입자 중 소득공제를 알고 있는 비율은 공제부금 대소 여부에 무관하게 거의 100%에 가까움
 - 월 25만원 초과 납부하는 집단은 약 95%가 소득공제를 알고 있다고 답변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가입자는 공제부금 대소와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가입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답변함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가입자는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공제부금 규모와 무관하게 약 71~72%가 그렇다고 답변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공제부금 확대 의사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월 25만원 이하로 납부하는 집단이 월 25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집단에 비해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확연히 높음: 91% vs. 73%
 -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서 공제부금을 줄이거나 해지하겠다는 답변은 역시 월 25만원 이하 집단이 월 25만원 초과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 확장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9] 가입자의 소득공제에 따른 가입 의사에 대한 분석 - 소기업



VI. 결론 및 정책 제안



VI. 결론 및 정책 제안

-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였음
- 노란우산공제의 집계 및 미시자료, 국세청 미시자료,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세지출이 가입자의 행태 및 의식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1) 자영업자의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조세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했으며, 2) 이러한 조세지출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은 인정됨
- 하지만 1) 조세지출의 혜택이 과도하게 크고, 2) 이러한 혜택이 전문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3) 가입자 간 혜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은 다소 낮은 상태라고 판단됨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먼저, 당 조세지출제도는 자영업자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서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보험을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보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조세지출이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제V장의 분석에 따르면, 본 조세지출을 통한 혜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란우산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노란우산공제부금이 많은 경우 연금저축 등을 포함한 다른 공제금 역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노후소득 보장정책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도, 우측절단을 고려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진 2.8년이 아니라 7.4년으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임
 - 설문조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84%),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변한 가입자도 대다수였음(72%)
-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가 과도할 수 있고 지원 혜택도 전문직,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표 IV-4>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을 정기예금에 5년간 납부했을 경우의 내부수익률은 1.16%이지만
 - 동일한 금액을 노란우산공제에 넣고 소득공제율을 15% 가정했을 경우 내부수익률은 5.9%에 달해 정기예금의 5배 이상이 됨
 -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내부수익률은 11.4%로 동일 조건의 정기예금에 비해 10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2014년 기준 소득분위 1분위의 해당 조세지출의 혜택이 평균 9만원인 데 반해, 10분위의 혜택은 105만원으로 10배를 상회함(<표 IV-13>)
 -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평등도에서도 2008년 0.352에서 2014년 0.436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조세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어하면서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가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안 1)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해주는 방안
 - 하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 중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금액 유지, 상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방식(예: 과표 4,800만원 이하 500만원, 4,800~8,800만원 300만원, 8,800만원 이상 200만원)
 - 본안의 장점은 최근 세법개정을 거쳐 확정된 세법(이자소득세 → 퇴직소득세로 개정)의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연 500만원³²⁾ 공제부금 납부를 유도하면서, 상위 계층에 돌아가는 조세지출 규모는 축소(세율 35%의 경우 105만원→70만원)
- 단점으로는 해당 조항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들 수 있음
- 제안 2)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세제 혜택이 있었을 경우 공제에 좀 더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하여 2017년 이후부터 자영업자 IRP와 합산하여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허용
 - 2014년도 기준 중위 공제혜택은 약 45만원 정도이고, 최대 소득공제 가능 금액인 300만원의 15% 수준임
 - 따라서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최소한 조세지출의 규모를 현 규모 혹은 작게 유지할 수 있음
 - 소득 상위 부분은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경우 12%로 경감률(reduced rate)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32)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부채 평균은 5,308만 원으로서, 공제부금 500만 원은 평균 8년 가입시 공제금, 이자, 소득공제 금액을 합산시 평균 부채금용을 변제할 수 있는 규모임

참 고 문 헌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기획재정부(2015), 『조세 개요』
- 김진수(2012),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박재성(2016), 『□□ □□ □□□□ □□□ □□ □□□□ □□ □□ □□』, 문화체육
관광부 수탁용역 보고서
-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 제로인(2012), 『조직 및 자산운용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중소기업중앙회(2016), 『노란우산공제 제도 소개』
- _____ (2013), 「2013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만족도 및 행복도 조사」
- 중소기업중앙회·보험연구원(2014),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2002),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 한국재정학회(2015), 『노란우산공제 지원효과 분석 및 영세사업자 가입·지원 확대방안』
- 홍범교(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Harvey S. Rosen(이영 전영준 외 편역), 『Rosen의 재정책』, 8th Edition, McGraw-Hill, 200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
- 한국은행 ECOS(<http://ecos.bok.or.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Atkinson & Stiglitz(1976), “The design of tax structure: direct versus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부 록



부 록 I. 각종 공제제도의 현황³³⁾

- (공제의 정의)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제조직이라고 하며, 공제는 이 같은 공제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을 지칭함
- (공제의 유형)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보험형 공제”와 특정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복지나 사망, 퇴직급여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조직된 “상호부조형 공제”로 구분됨
 - 보험형 공제는 다시 불특정 다수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제”와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공제”로 구분됨
 - 일반공제는 보험상품에 대한 유사성에 따라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로 구분됨³⁴⁾
 - 조합공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계약이행보증 중심의 책임이행형 공제임
 - 보험형 공제의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성 공제임
 - 상호부조형 공제는 상호부조 목적으로 가입자 상호 간 자금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복지 확충이나 사망·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됨
- 노란우산공제는 아래 표의 분류에서 “보험형공제” 중 “정책성공제”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퇴직금과 복지급여” 보장이라는 특성을 보유함
 - 기타 주요 공제제도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하 표에서 각 공제 가입자, 자산 규모 정도는 표시)

33) 이하 이 절의 내용은 박재성(2016),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수탁과제) 참조

34)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는 그 기능에 따라 각각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로 구분됨

- 생명공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생명공제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연금공제
- 손해공제: 화재 등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사고 발생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
- 제3공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상해공제,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에 관한 질병 공제 등이 있음

〈부표 I-1〉 정부가 지원하고 법에 근거한 주요 각종 공제사업 주요 현황

구분	기능	공제명	근거법	소관 부처	주요사업	
보험형 공제	일반 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	공제대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미래부	자금대여 및 보증	
	조합 공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산자부	자금융자 및 보증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건축사법 제38조의3	국토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보증 및 융자	
		대한건설설계기물공제조합	건설설계기물의 재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환경부	운영자금융자 및 각종 보증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골재채취법 제40조	국토부	자금융자, 보증 및 신용평가	
		콘텐즈공제조합	콘텐즈산업 진흥법 제20조의2	문체부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 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국토부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적재물 배상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국토부	보증과 자금 융자	
		손해공제 (보증, 배상 책임 포함)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안전처	자금 대여와 보증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	국토부	보증, 자금융자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레저안전공제회	관광진흥법 제9조	안전처	배상책임보상, 자금자축 및 대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	산자부	약정, 이행지급보증 및 융자

구분	기능	공제명	근거법	소관 부처	주요사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	중기청	자금대출,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국토부	보증, 융자 및 신용평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자부	보증, 자금융자 및 구매알선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국토부	보증과 자금 융자
		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법 제45조	미래부	각종 보증과 융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저축, 대여, 보험 및 각종 복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기청	공제계약대출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육부	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복지부	생활안정자금대출, 장기저축급여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공제회 직접대여, 복지시설 제공
상호부조형 공제	사망·퇴직급여, 복지급여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생활자금대여, 복지시설 제공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	안전처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담배인삼공제회 세우회	민법 제32조	농림부	신용대부제도
		교정공제회	민법 제32조	기재부	긴급자금융자
		나라사랑공제회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대여금
			민법 제32조	보훈처	생활안정자금대여

출처: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부록 II.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가. 개요 및 설계

- 소기업·소상공인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된 노란우산공제와 그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대한 인지 수준, 가입 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부표 II -1> 설문 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배경 및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된 노란우산공제와 그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대한 인지 수준, 가입 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에 활용하는 데 목적
주관기관/ 조사기관	주관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기관: (주)리서치랩
조사 기간	2016년 4월 18일(월) ~ 5월 20일(금), 총 5주간
조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등 9개 시·도
조사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기타 등 7개 업종 (업종까지 고려하여 층화추출하지 않음)
조사 방법	가입업체 리스트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이 조사)
표본설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비율을 고려한 제곱근 비례할당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을 고려한 제곱근 비례할당
표본수	가입자: 400명 (80%) + 미가입자: 100명(20%)
조사 준비물	면접원 신분증(패찰), 면접원 가이드, 설문지 등

- 미가입자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임의추출한 가입 사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조사하고, 인근에서 비가입 사업체를 병행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비가입 사업체 선정 기준
 - 가입 사업체에 대응하는 비가입사업체는 최소한 “가입사업체와 산업대분류상 동일 업종으로서 가입사업체 소재지 1km 이내 사업체”로 한정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사 대상 가입사업체를 재선정

〈부표 II -2〉 업종별·사업장소재지별 계약 현황(2015년 12월)

	(단위: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424	70	54	95	34	73	41	4	593	89	89	156	126	182	120	130	81	2,361
광업	91	33	18	36	11	9	19	1	186	19	28	24	26	14	39	47	4	605
제조업	18,150	6,023	8,395	6,994	1,911	2,412	2,245	130	35,729	1,051	3,350	3,158	2,346	1,327	5,480	6,971	307	105,97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8	11	15	23	22	20	8	4	99	15	28	24	188	78	49	28	2	67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1	46	38	47	29	41	24	4	256	36	57	46	53	30	75	77	12	972
건설업	5,496	1,010	1,338	1,131	641	782	590	38	5,370	819	936	784	833	589	1,129	836	200	22,522
도매 및 소매업	58,883	11,639	12,915	10,315	5,400	7,916	5,008	252	48,661	5,385	7,046	7,288	7,040	4,637	8,043	8,750	1,681	210,859
음수업	3,070	1,269	962	1,453	433	714	609	38	4,314	434	852	848	752	715	987	815	99	18,364
숙박 및 음식점업	30,638	4,468	5,554	5,236	2,255	3,717	4,591	305	25,374	3,199	3,449	3,626	2,631	1,926	4,462	3,872	979	106,2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228	321	345	314	161	325	103	12	2,093	93	147	140	116	72	167	250	38	9,925
금융 및 보험업	966	112	106	79	70	80	42	6	340	32	52	38	74	44	40	62	19	2,1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449	3,485	2,836	3,451	1,184	1,910	1,245	264	20,786	870	1,437	1,626	1,093	645	1,412	1,621	350	72,6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470	1,271	1,140	973	571	788	874	32	4,572	546	575	644	633	372	640	1,402	150	23,6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96	303	326	277	127	177	218	12	1,316	149	197	192	199	98	261	285	55	6,288
항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9	42	45	48	29	15	15		143	20	12	38	11	39	22	43	2	653
교육 서비스업	4,699	674	979	767	644	597	769	32	4,654	328	628	450	513	296	507	657	128	17,3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53	2,941	2,692	1,978	1,448	1,782	802	57	9,020	957	1,149	1,585	1,540	1,186	1,812	2,044	392	42,0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44	361	445	649	190	353	699	19	2,499	207	338	220	199	132	337	257	55	10,004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802	1,571	1,396	1,708	735	1,113	1,221	60	8,259	829	963	1,000	916	620	1,016	1,218	207	31,634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154	11	32	11	9	18	4	1	139	6	6	9	5	2	7	13	2	429
계	189,601	35,661	39,631	35,585	15,904	22,842	19,127	1,271	174,403	15,084	21,339	21,896	19,294	13,004	26,605	29,378	4,763	685,388

〈부표 II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외의 계약 현황(2015년 12월)

	(단위: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계
서울	189,601	35,661	39,631	35,585	15,904	22,842	19,127	12,386	7,982	378,719

나. 주요 문항

노란우산공제 인지도에 대한 파악

Part D. 노란우산공제

D-1. 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알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_____를 통해 알게 되었다.
- ② 아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이력에 대한 파악(4가지 유형) 및 각 유형에 따른 문항을 달리함(아래 첫 번째, 네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 지속 가입
- 가입하고 해지하였으나 다시 재가입
- 가입하고 해지한 후 다시 재가입하지 않음
- 지속 미가입

Part D. 노란우산공제

D-2. 귀하는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입니까? ()

- ① 과거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하였다 →D.3.1로
- ②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적 있고, 다시 재가입하였다 →D.4.1로
- ③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 →D.5.1로
- ④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다 →D.6.1로

지속적인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 부금의 변화, 노란우산공제 가입 동기,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에 대한 판단,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혜택 경험 여부, 법적 근거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신뢰 등을 질문함

Part D.

노란우산공제

D-3-1. 귀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여왔습니까? 줄여왔습니까?

- ① 늘려 왔다 ()
- ② 줄여 왔다 ()
- ③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했다 ()

D-3-2. 귀하는 어떤 취지나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습니까? **(해당사항 최대 2가지 체크)**

- ① 폐업 대비
- ② 노령 대비
- ③ 사망 대비
- ④ 퇴임(은퇴) 대비
- ⑤ 잘 모르는데, 남들 가입하기에 가입
- ⑥ 잘 모르는데, 강제가입인 줄 알고 가입
- ⑦ 기타 ()

D-3-3. 귀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최대 2가지 체크)**

- ① 다른 금융, 보험 상품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
- ②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 ③ 폐업, 노령, 사망, 퇴임(은퇴)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큰 공제금 지급
- ④ 다른 금융, 보험 상품에 비해 공적 보험으로서 더욱 신뢰
- ⑤ 압류 금지 조건
- ⑥ 기타 ()

D-3-4. 귀하는 폐업이나 폐업, 노령, 퇴임(은퇴) 등의 이유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_____ 인해 받았다
- ② 아니다 ()

D-3-5. 노란우산공제가 법적 근거 하에 설립·운영되고 있고, 소득공제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귀하의 향후 가입 및 가입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응답완료 후 E-1로**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지속적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은 사유, 향후 가입 의향,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회에 대한 신뢰 등을 질문함

Part D.

노란우산공제

D-6-1. 귀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해당사항 최대 2가지 체크)

- ① 몰라서
- ② 납부여력이 없어서
- ③ 다른 저축이나 보험 수단이 있어서
- ④ 폐업, 퇴임(은퇴) 할 가능성이 작고 사업이 잘 되서
- ⑤ 사망이나 노령까지는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아서
- ⑦ 공제제도에 대한 불신
- ⑧ 유사시 자녀가 봉양할 것이므로
- ⑨ 기타 ()

D-6-2. 귀하는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 이유는? _____
- ② 아니다 : () 이유는? _____

D-6-3. 노란우산공제가 법적 근거 하에 설립·운영되고 있고, 소득공제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귀하의 향후 가입 및 가입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응답완료 후 E1-1로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조사가 가장 핵심이며, 미가입자와 가입자를 분리하여 질문함

- 노란우산공제 미가입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제도 인지 여부, 소득공제 인지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유, 소득공제 제도 여부에 따른 가입 또는 재가입 의향, 재가입시 월 납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변화에 대한 CVM 분석을 위한 여러 의향 등을 질문함
- CVM을 위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금액 중 응답자마다 다른 금액이 제시

- E2-3-2. 상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 알게 되었다면 현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늘릴 것입니까? **→응답완료 후 E2-4로**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E2-4. **[240~280 질문]** 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한도를 () 만원으로 변경하면, 납부하는 공제부금 액수를 유지하겠습니까? (귀하의 의향을 잘 판단하여 답변해주시시오)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E2-4-1. 그렇다면, 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한도를 () 만원으로 변경하면, 납부하는 공제부금 액수를 유지하겠습니까? (귀하의 의향을 잘 판단하여 답변해주시시오)
- ① 그렇다 () **→Part F로**
- ② 아니다 ()
- E2-5. **[320~460 질문]** 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한도를 () 만원으로 변경하면, 납부하는 공제부금 액수를 늘릴 것입니까? (귀하의 의향을 잘 판단하여 답변해주시시오)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 E2-5-1. 그렇다면, 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한도를 () 만원으로 변경하면, 납부하는 공제부금 액수를 늘릴 것입니까? (귀하의 의향을 잘 판단하여 답변해주시시오)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2. 설문조사 분석

가. 설문조사 응답자

- 설문 응답자는 523명이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422명, 노란우산공제 미가입자는 1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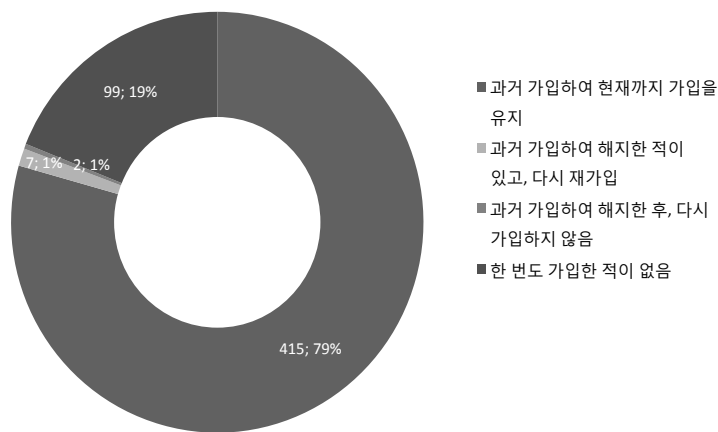
<부표 II -4> 가입자 구분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가입	422
미가입	101
전체	523

- 설문 응답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이력은 각각 (i) 과거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 (ii)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적이 있고, 다시 재가입, (iii) 과거 가입하여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지 않음, (iv)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므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의 빈도는 415명, 7명, 2명, 99명(총 523명)
-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였거나, 아예 가입 안 한 경우의 빈도가 높은 편

[부도 II -1] 표본 내 가입 이력별 빈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등 지역에 따라 층화 추출되었으며, 설문분석에서는 이에 따른 가중치 적용

〈부표 II-5〉 모집단에서 지역별 빈도, 표본에서 지역별 빈도 및 표본에 대한 지역별 가중치

(단위: 건)

Panel A. 모집단에서 빈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계
가입자	189,601	35,661	39,631	35,585	15,904	22,842	19,127	12,386	7,982	378,719
미가입자	565,346	224,077	147,708	134,583	88,389	79,704	53,647	50,144	68,714	1,412,312
계	754,947	259,738	187,339	170,168	104,293	102,546	72,774	62,530	76,696	1,791,031

Panel B. 표본에서 빈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계
가입	119	46	49	53	32	38	34	28	23	422
미가입	23	14	12	11	9	9	7	8	8	101
계	142	60	61	64	41	47	41	36	31	523

Panel C. 가중치 산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계
가입	1,593	775	809	671	497	601	563	442	347	897
미가입	24,580	16,006	12,309	12,235	9,821	8,856	7,664	6,268	8,589	13,983
계	5,317	4,329	3,071	2,659	2,544	2,182	1,775	1,737	2,474	3,425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 대표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4명의 소기업 대표, 479명의 개인사업자가 설문 조사에 응함

- 소기업 대표 44명 중 41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 개인사업자 479명 중 381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표 II -6>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의 요약

Panel A. 응답자의 특성 - 법인 대표

(단위: 건, %)

		빈도	상대빈도
전체		44	100.0
업종	도소매업	21	47.7
	서비스업	7	15.9
	제조업	10	22.7
	건설·토목업	6	13.6
종업원수	5인 미만	16	36.4
	5~9인	16	36.4
	10~29인	7	15.9
	30인 이상	5	11.4
지역	서울	16	36.4
	부산	2	4.5
	대구	3	6.8
	인천	10	22.7
	광주	3	6.8
	대전	4	9.1
	수원	2	4.5
	창원	4	9.1
사업체유형	독립점	37	84.1
	프랜차이즈 지점	7	15.9
정부 금융지원 여부	받고 있다	12	27.3
	받은 적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6	13.6
	받은 적 없다	24	54.5
	모름/무응답	2	4.5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가입	41	93.2
	미가입	3	6.8
장애인기업 여부	예	2	4.5
	아니오	42	95.5
사업체유형	독립점	37	84.1
	프랜차이즈 지점	7	15.9
대표 성별	남자	39	88.6
	여자	5	11.4
	없음	4	9.1
부채	1억원 미만	7	15.9
	1억원~5억원 미만	15	34.1
	5억원~10억원 미만	7	15.9
	10억원 이상	9	20.5
	모름/무응답	2	4.5

Panel B. 응답자의 특성 - 개인사업자

		빈도	상대빈도
전체		479	100.0
업종	도소매업	184	38.4
	서비스업	112	23.4
	제조업	66	13.8
	건설·토목업	9	1.9
	숙박및음식점업	89	18.6
	기타	19	4.0
종업원수	5인 미만	409	85.4
	5~9인	59	12.3
	10~29인	8	1.7
	30인 이상	1	0.2
	모름/무응답	2	0.4
지역	서울	126	26.3
	부산	58	12.1
	대구	58	12.1
	인천	54	11.3
	광주	38	7.9
	대전	43	9.0
	울산	41	8.6
	수원	34	7.1
창원	27	5.6	
정부 금융지원 여부	받고 있다	35	7.3
	받은 적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72	15.0
	받은 적 없다	371	77.5
	모름/무응답	1	0.2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가입	381	79.5
	미가입	98	20.5
장애인 여부	그렇다	11	2.3
	아니다	453	94.6
	모름/무응답	15	3.1
현사업체 이전 직업	농/임/어업	1	0.2
	판매,서비스,숙련공	153	31.9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	9	1.9
	민간 대기업 임직원	46	9.6
	민간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67	14.0
	현재와 동일한 업종 자영업	86	18.0
	현재와 다른 업종 자영업	26	5.4
	고등학교 재학	6	1.3
	대학교, 대학원 재학	9	1.9
	무직	66	13.8
기타	10	2.1	
부채	없음	316	66.0
	1억원 미만	67	14.0
	1억원~5억원 미만	65	13.6
	5억원~10억원 미만	6	1.3
	10억원 이상	6	1.3
	모름/무응답	19	4.0